

Secta9ine

자율준수편람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2025. 12.



< 목 차 >

PART 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개관	9
I.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개요	9
1.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의의 및 도입 필요성	9
2.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8대 핵심 요소	9
II. (주)섹타나인의 자율준수 프로그램 추진 내용 및 실적	11
1. (주)섹타나인 CP 조직 소개	11
2. 섹타나인 주요 CP 제도	12
3. 임직원 자율준수실천 서약	13
III.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	14
1. 공정거래위원회 설립 목적	14
2.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수행 역할	14
3. 공정거래위원회 조직 구성	15
4.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 절차	16
5.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	17
PART 2 공정거래법 해설	19
I. 공정거래법 개관	19
1. 공정거래법의 목적	19
2. 공정거래법의 구조	19
3. 공정거래법의 규제 유형	20
II. 부당지원행위	20
1. 주요 개념	20
2. 판단기준 및 예시	23
3. 제재 사례	25
4. 위반 시 제재	29
5. 자주 묻는 질의응답(FAQ)	30
III. 부당한 공동행위	31
1. 주요 개념 및 판단기준	31
2.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 및 예시	33
3. 제재 사례	35
4. 위반 시 제재	38
5.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38
6. 자주 묻는 질의응답(FAQ)	39
IV. 불공정거래행위	40
1. 주요 개념 및 판단기준	40
2. 유형별 행위	42
3. 위반 시 제재	79
4. 자주 묻는 질의응답(FAQ)	79
V. 재판매가격유지행위	81
1. 주요 개념 및 판단기준	81
2. 위반 행위 예시	82
3. 제재 사례	82
4. 위반 시 제재	84

VI. 업무상 유의사항(Do & Don'ts).....	84
1. 부당지원 행위	84
2. 부당한 공동행위	85
3. 불공정거래행위	87
4. 재판매가격유지 행위	91
PART 3 하도급법 해설	92
I. 하도급법 개관	92
1. 적용 대상 거래	92
2. 주요 개념	92
II. 행위 유형별 유의사항	94
1. 계약 체결 관련 유의사항.....	94
2. 하도급대금 관련 유의사항.....	105
3. 계약이행 관련 유의사항	118
4. 기타 유의사항	129
III. 위반 시 제재	129
1. 시정조치 및 시정권고	129
2. 공공입찰 참가 제한	130
3. 상습법 위반사업자 명단공표.....	130
4. 과징금	130
5. 형사처벌	130
6. 손해배상	130
IV. 업무상 유의사항(Do & Don'ts).....	131
1. 계약서 작성 및 교부	131
2. 서면의 보존	131
3. 거래조건 협의 및 결정	132
4. 단가 협의 및 결정	132
5. 하도급대금 감액	133
6. 하도급대금 지급	134
7. 발주 취소/반품/수령 거부	134
8. 납품, 품질검사 및 불합격통지.....	135
9. 경영간섭	136
PART 4 대리점법 해설	137
I. 대리점법 개관	137
1. 대리점법의 목적	137
2. 주요 개념	137
3. 대리점법의 적용 제외 사유.....	137
4. 공정거래법과의 적용 관계.....	138
II. 행위 유형별 유의사항	138
1. 계약서 작성 및 보관의무(대리점법 제5조).....	138
2. 구입강제 행위의 금지(대리점법 제6조).....	139
3.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행위의 금지(대리점법 제7조).....	140
4. 판매목표 강제행위의 금지(대리점법 제8조).....	141
5. 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대리점법 제9조).....	143
6. 경영활동 간섭 금지(대리점법 제10조).....	146
7. 주문내역의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 금지(대리점법 제11조).....	148
III. 위반 시 제재	148

1. 시정조치 및 시정권고	148
2. 과징금	149
3. 형사처벌 / 양벌규정	149
4. 과태료	149
5. 손해배상	149
IV. 자주 묻는 질의응답(FAQ).....	150
V. 업무상 유의사항(Do & Don'ts).....	151
PART 5 표시광고법 해설	156
I. 표시광고법 개관	156
1. 표시광고법의 목적	156
2. 주요 개념	156
3. 공정거래법과의 적용 관계.....	157
II. 행위 유형별 유의사항	157
1.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표시광고법 제3조).....	157
2. 표시·광고에 관한 일반지침(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공정위 고시 제2019-11호).....	160
3. 제재 사례	170
4. 자주 묻는 질의응답(FAQ)	183
III. 위반 시 제재	184
1. 시정조치	184
2. 과징금	184
3. 형사처벌 / 양벌규정	184
4. 손해배상	185
IV. 업무상 유의사항(Do & Don'ts).....	185
PART 6 전자상거래법 해설	186
I. 전자상거래법 개관	186
1. 전자상거래법의 목적	186
2. 주요 개념	186
II. 행위 유형별 유의사항	187
1. 통신판매업자의 주요 의무 및 책임.....	187
2. 통신판매중개자의 주요 의무 및 책임(전자상거래법 제20조 내지 제20조의3).....	194
3. 금지되는 행위 유형(전자상거래법 제21조).....	195
4.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있어서 금지되는 행위 ('다크패턴' 규제).....	201
III. 위반 시 제재	203
1. 시정조치	203
2. 영업정지	204
3. 임시중지명령	204
4.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	205
5. 형사처벌	205
6. 과태료	205
IV. 업무상 유의사항(Do & Don'ts).....	205
PART 7 약관법 해설	207
I. 약관법 개관	207
1. 약관법의 목적	207
2. 약관의 정의	207
II.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제3조).....	207

1.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207
2. 명시·설명 대상: ‘중요한 내용’.....	208
3. 명시·설명 상대방.....	208
4. 명시·설명 의무 위반의 효과.....	208
III. 약관해석의 원칙(제4조, 제5조).....	209
1.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	209
2. 객관적·확일적 해석의 원칙.....	209
3.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209
IV. 불공정 약관.....	209
1. 일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제6조).....	209
2. 면책조항의 금지(제7조).....	211
3. 부당한 손해배상액 예정의 금지(제8조).....	212
4. 계약의 해제·해지권 제한의 금지(약관법 제9조).....	213
5. 채무내용의 일방적 변경 금지(제10조).....	214
6. 고객 권리의 부당한 박탈 금지(약관법 제11조).....	215
7. 의사표시의 의제 금지(제12조).....	216
8. 대리인의 책임 가중 금지(제13조).....	217
9. 소송상 권리의 부당한 제한 금지(제14조).....	217
V. 표준약관(제19조의3).....	217
VI. 위반 시 제재.....	218
1. 불공정약관의 무효.....	218
2. 사용금지.....	218
3. 시정조치.....	218
4. 시정명령 위반시 벌칙.....	220
5. 과태료.....	220
VII. 제재 사례.....	220
VIII. 업무상 유의사항(Do & Don'ts).....	222
PART 8 개인정보보호법 해설.....	223
I. 개인정보보호법 개관.....	223
1.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	223
2. 개인정보의 정의.....	223
II. 개인정보 보호원칙.....	224
III. 자주 묻는 질의 응답(Q&A).....	225
IV. 제재사례.....	228
PART 9 CHECK LIST.....	234
PART 8 [부록] 자율준수편람 제·개정 연혁.....	242

[대표이사 메시지]

섹타나인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표이사 김대일입니다.

저희 섹타나인은 플랫폼, 결제, 딜리버리, 광고사업, 스마트팩토리, 스마트ERP 등 다양한 사업 영역에서 성과를 창출하며 성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사전에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과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활동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그 첫걸음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CP, Compliance Program)을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CP’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한 명확한 행동 기준을 제시하여, 모든 임직원이 일상 업무에서 자연스럽게 준법 의식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입니다.

섹타나인은 ‘CP’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정기적인 교육과 내부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자율준수편람을 제작하여 실무에서 불공정거래행위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할 것입니다.

저 또한 대표로서 ‘CP’가 우리 조직에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우수한 실행 부서에는 아낌없는 지원과 포상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이번 ‘CP’ 도입을 통해 임직원 모두가 ‘CP’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공정거래 문화가 우리 조직에 깊이 뿌리내리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PART 0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활용 방법

각 팀(부서)별 주요 업무와 특히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법률/규제	페이지	관련 부서
공정거래(부당지원)		마켓커머steam, 모바일쿠폰팀, 해피오더팀, 해피크루팀, 광고사업팀, 제휴사업팀, 마케팅기획팀, CRM마케팅팀, IP콘텐츠팀, PO팀, 플랫폼개발팀, 서비스개발팀, 모바일개발팀, BX디자인팀, Deep Sync, 리테일테크팀, 데이터서비스팀, 포인트결제팀, 브랜드전략팀, 결제사업팀, PG사업팀, 수주영업부문, CIM팀, Infra Architect팀, 정보보안팀, ERP운영팀, ERP사업전략팀, eHR서비스팀, IT Planning팀, Dev1팀, Dev2팀, Smart Factory팀
공정거래(담합)		마켓커머steam, 모바일쿠폰팀, 해피오더팀, 해피크루팀, 광고사업팀, 제휴사업팀, 마케팅기획팀, CRM마케팅팀, IP콘텐츠팀, PO팀, 플랫폼개발팀, 서비스개발팀, 모바일개발팀, BX디자인팀, Deep Sync, 리테일테크팀, 데이터서비스팀, 포인트결제팀, 브랜드전략팀, 결제사업팀, PG사업팀, 수주영업부문, CIM팀, Infra Architect팀, 정보보안팀, ERP운영팀, ERP사업전략팀, eHR서비스팀, IT Planning팀, Dev1팀, Dev2팀, Smart Factory팀
공정거래(불공정거래, 재판매가격 유지)		마켓커머steam, 모바일쿠폰팀, 해피오더팀, 해피크루팀, 광고사업팀, 제휴사업팀, 마케팅기획팀, CRM마케팅팀, IP콘텐츠팀, PO팀, 플랫폼개발팀, 서비스개발팀, 모바일개발팀, BX디자인팀, Deep Sync, 리테일테크팀, 데이터서비스팀, 포인트결제팀, 브랜드전략팀, 결제사업팀, PG사업팀, 수주영업부문, CIM팀, Infra Architect팀, 정보보안팀, ERP운영팀, ERP사업전략팀, eHR서비스팀, IT Planning팀, Dev1팀, Dev2팀, Smart Factory팀
대리점법		결제사업팀, PG사업팀
표시광고법		마켓커머steam, 모바일쿠폰팀, 해피오더팀, 해피크루팀, 광고사업팀, 제휴사업팀, 마케팅기획팀, CRM마케팅팀, IP콘텐츠팀, Deep

		Sync, 포인트결제팀, 브랜드전략팀
전자상거래법		마켓커머steam, 모바일쿠폰팀, 해피오더팀, 해피크루팀, 광고사업팀, 제휴사업팀, 마케팅기획팀, CRM마케팅팀, 포인트결제팀, 포인트결제팀, 브랜드전략팀, 결제사업팀, PG사업팀
하도급법		마켓커머steam, 모바일쿠폰팀, 해피오더팀, 해피크루팀, 광고사업팀, 제휴사업팀, 마케팅기획팀, CRM마케팅팀, IP콘텐츠팀, PO팀, 서비스개발팀, 모바일개발팀, BX디자인팀, Deep Sync, 리테일테크팀, 데이터서비스팀, 포인트결제팀, 브랜드전략팀, 결제사업팀, PG사업팀, 수주영업부, CIM팀, Infra Architect팀, 정보보안팀, ERP운영팀, ERP사업전략팀, eHR서비스팀, IT Planning팀, Dev1팀, Dev2팀, Smart Factory팀
개인정보보호법		플랫폼개발팀, Deep Sync, 결제사업팀, PG사업팀, 정보보안팀, eHR서비스팀, 데이터서비스팀

각 분야별 체크리스트를 통해 업무 내용이 공정거래관련 법령을 잘 준수하는지 스스로 확인합니다.

(*법위반이 아닐 것 같다고 생각되더라도, 최종 업무 진행 전에는 반드시 사전업무협의제도 등을 통하여 법 또는 컴플라이언스와 상의합니다)

<예시> 마케팅팀이 신상품 홍보를 위해 홍보물 시안 제작, 온라인 마케팅 기획하는 경우

편람<표시광고법>, <식품표시광고법> 파트 확인 *허위·과장 광고, 뒷광고 규제 파트 등	→	분야별 체크리스트로 법준수 여부 진단 (편람 각 파트 제일 뒷부분 수록)	→	사전업무협의제도로 법무/컴플라이언스와 최종 협의 후 진행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th> <th style="width: 60%;">점검사항¹⁾</th> <th style="width: 35%;">점검결과 (O/△/X)</th> </tr> </thead> <tbody> <tr> <td>1²⁾</td> <td>제조일자, 포장일자, 소비기한, 제조방식(e.g. 수제, handmade) 등을 사실과 다르게 또는 모호하게 표시하지 않도록 합니다.³⁾</td> <td style="text-align: center;">O/△/X</td> </tr> <tr> <td>2²⁾</td> <td>제품의 원산지, 영양성분, 원재료 함량, 배합비율 등의 표시가 객관적 사실에 기반했는지 확인합니다.³⁾</td> <td style="text-align: center;">O/△/X</td> </tr> <tr> <td>3²⁾</td> <td>상품의 특성에 대한 제한사항이 눈에 띄기 쉽도록 문구의 색상, 크기, 위치 등을 정합니다.³⁾</td> <td style="text-align: center;">O/△/X</td> </tr> <tr> <td>4²⁾</td> <td>할인판매를 하면서 할인율을 사실과 다르게 하거나, 비교대상인 기준가격을 거짓·과장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³⁾</td> <td style="text-align: center;">O/△/X</td> </tr> <tr> <td>5²⁾</td> <td>상품의 품질, 성능, 효능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표시·광고에 기재합니다. 특히 통계, 조사결과, 기관인증, 전문가 의견 등을 인용한 경우, 실존하고 검증된 자료/의견인지 확인합니다.³⁾</td> <td style="text-align: center;">O/△/X</td> </tr> </tbody> </table>						점검사항 ¹⁾	점검결과 (O/△/X)	1 ²⁾	제조일자, 포장일자, 소비기한, 제조방식(e.g. 수제, handmade) 등을 사실과 다르게 또는 모호하게 표시하지 않도록 합니다. ³⁾	O/△/X	2 ²⁾	제품의 원산지, 영양성분, 원재료 함량, 배합비율 등의 표시가 객관적 사실에 기반했는지 확인합니다. ³⁾	O/△/X	3 ²⁾	상품의 특성에 대한 제한사항이 눈에 띄기 쉽도록 문구의 색상, 크기, 위치 등을 정합니다. ³⁾	O/△/X	4 ²⁾	할인판매를 하면서 할인율을 사실과 다르게 하거나, 비교대상인 기준가격을 거짓·과장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³⁾	O/△/X	5 ²⁾	상품의 품질, 성능, 효능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표시·광고에 기재합니다. 특히 통계, 조사결과, 기관인증, 전문가 의견 등을 인용한 경우, 실존하고 검증된 자료/의견인지 확인합니다. ³⁾	O/△/X
	점검사항 ¹⁾	점검결과 (O/△/X)																				
1 ²⁾	제조일자, 포장일자, 소비기한, 제조방식(e.g. 수제, handmade) 등을 사실과 다르게 또는 모호하게 표시하지 않도록 합니다. ³⁾	O/△/X																				
2 ²⁾	제품의 원산지, 영양성분, 원재료 함량, 배합비율 등의 표시가 객관적 사실에 기반했는지 확인합니다. ³⁾	O/△/X																				
3 ²⁾	상품의 특성에 대한 제한사항이 눈에 띄기 쉽도록 문구의 색상, 크기, 위치 등을 정합니다. ³⁾	O/△/X																				
4 ²⁾	할인판매를 하면서 할인율을 사실과 다르게 하거나, 비교대상인 기준가격을 거짓·과장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³⁾	O/△/X																				
5 ²⁾	상품의 품질, 성능, 효능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표시·광고에 기재합니다. 특히 통계, 조사결과, 기관인증, 전문가 의견 등을 인용한 경우, 실존하고 검증된 자료/의견인지 확인합니다. ³⁾	O/△/X																				

2024 자율준수편람(개요)

PART 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개관

I.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개요

1.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의의 및 도입 필요성

-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이란, 기업이 경제활동을 수행하며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스스로 준수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제정, 구축 및 운영하는 내부 준법시스템이자 행동규범에 해당함
- 기업은, (i) 공정거래 능력을 강화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한 행동 기준을 제시하고, (ii) 법위반에 따른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며, (iii) 대내외 신인도를 제고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기 위하여 CP 도입이 필요함
- CP의 핵심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시 수반되는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행동규범을 마련하는 것이며, 2023년 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따라 CP를 도입 및 운영하는 기업들에 대해 CP 등급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음
- 구체적인 평가 방식, 등급 기준, 혜택은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음.
 - CP 우수기업 지정제에 따라 3등급(AAA, AA, A)으로 구분
 - *AAA : 90~100미만, AA: 80~90미만, A: 70~80미만
 -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시 평가점수 감점 (5점)

2.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8대 핵심 요소

- CP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 소속 임직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공정거래 법규 준수사항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것이 행동강령이나 준수정책을 통해 공식적인 문서로써 조직 내·외부에 효과적으로 전달되어야 함
-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 최고경영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자율준수의지와 방침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CP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조직 규모에 적합한 인적·물적 자원 등을 적극 지원하여야 함
- 자율준수관리자 지정(임명)
 - 이사회 등 최고의사결정기구는 조직 내에 최고경영자가 아닌 임원을 자율준수관리자로 임명하고, 자율준수관리자에게 효과적인 CP운영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여야 함
- 자율준수편람 제작 및 활용
 - 자율준수편람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 하에 작성된 것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CP기준과 절차 등을 포함하며, 임직원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는 문서 혹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제작되어야 함
- 지속적·체계적 자율준수 교육 훈련프로그램 실시
 - CP 기준 절차, 공정거래 법규 준수 사항 등에 대하여 최고경영자, 구매·영업 부서 등 공정거래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체계적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 내부감시를 위한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CP의 핵심은 법 위반 행위의 예방과 감시에 있으므로, 예방 또는 조기 발견을 위해 일상적인 업무에서 법 위반 가능성을 상시적으로 감시·감독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하여야 함. 감시 결과는 주기적으로(최소 연 2회 이상) 이사회 등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보고되어야 함
-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및 인센티브 시스템
 -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하여 그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임직원의 법 위반 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추후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함. 또한, 임직원의 자발적인 경쟁법 준수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인센티브 마련이 필요함
-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와 개선
 - CP가 효과적으로 지속 운영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CP 기준, 절차, 운용 등에 대한 점검, 평가 등을 실시하여 그에 따른 개선 조치를 취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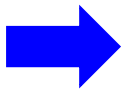
II. ㈜섹타나인의 자율준수 프로그램 추진 내용 및 실적

1. ㈜섹타나인 CP 조직 소개

- ㈜섹타나인(이하 ‘섹타나인’)은 2024년부터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을 도입하였습니다. CP운영을 총괄하는 임원인 ‘자율준수관리자’를 이사회 의결을 통해 임명하고, 회사 전체의 CP 업무를 총괄 운영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팀은 자율준수관리자를 보좌하여 CP운영을 전담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제반 법령의 준수를 위한 일체의 업무를 기획하고 실행합니다.

2. 섹타나인 주요 CP 제도

- 자율준수협약체: 자율준수관리자 주관으로 CP 관련 주요 사항 협의, 부서 간 업무 조율 등 CP제도 총괄 관리
- CP 전파/홍보: 자율준수편람, 규정, 각종 업무지침 등 제작 및 전파
- 사전업무협의: 공정거래 법령 관련 업무 컴플라이언스실 사전 검토 의무화
- 교육과 평가: 공정거래 관련 법령 교육 및 정기 리스크 평가·관리
- 내부신고제도: 법령 위반 (가능성) 발견시 익명제보할 수 있는 신고채널 운영
- **제재 및 포상**: 업무과정에서 법위반시 엄중히 조치하고, CP문화 정착에 기여한 개인과 부서는 포상



임직원의 자발적, 자율적인 CP참여 유도, 법위반 사전 예방

3. 임직원 자율준수실천 서약

- 섹타나인의 모든 임직원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통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거래 법규를 준수하고,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예방함으로써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기업과 임직원을 법 위반으로부터 보호합니다.
- 임직원 CP 실천 서약

나는 공정한 경쟁과 투명경영 실천을 위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운영에 적극 동참하고, 주식회사 섹타나인(이하 ‘회사’)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하나, 나는 공정거래 준법경영이 회사의 경쟁력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인식하고, 회사가 임직원, 협력업체, 나아가 전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이를 적극 실천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결코 가담하지 아니하고, 이를 인지하게 된 경우 회사에 반드시 알리겠습니다.

하나, 나는 거래상지위가 바탕이 되는 제 3 자와의 관계에 있어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등 제반 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동의 이익과 발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본인은 상기 사항을 숙지하였으며,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주식회사 섹타나인 대표이사 귀하

III.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

1. 공정거래위원회 설립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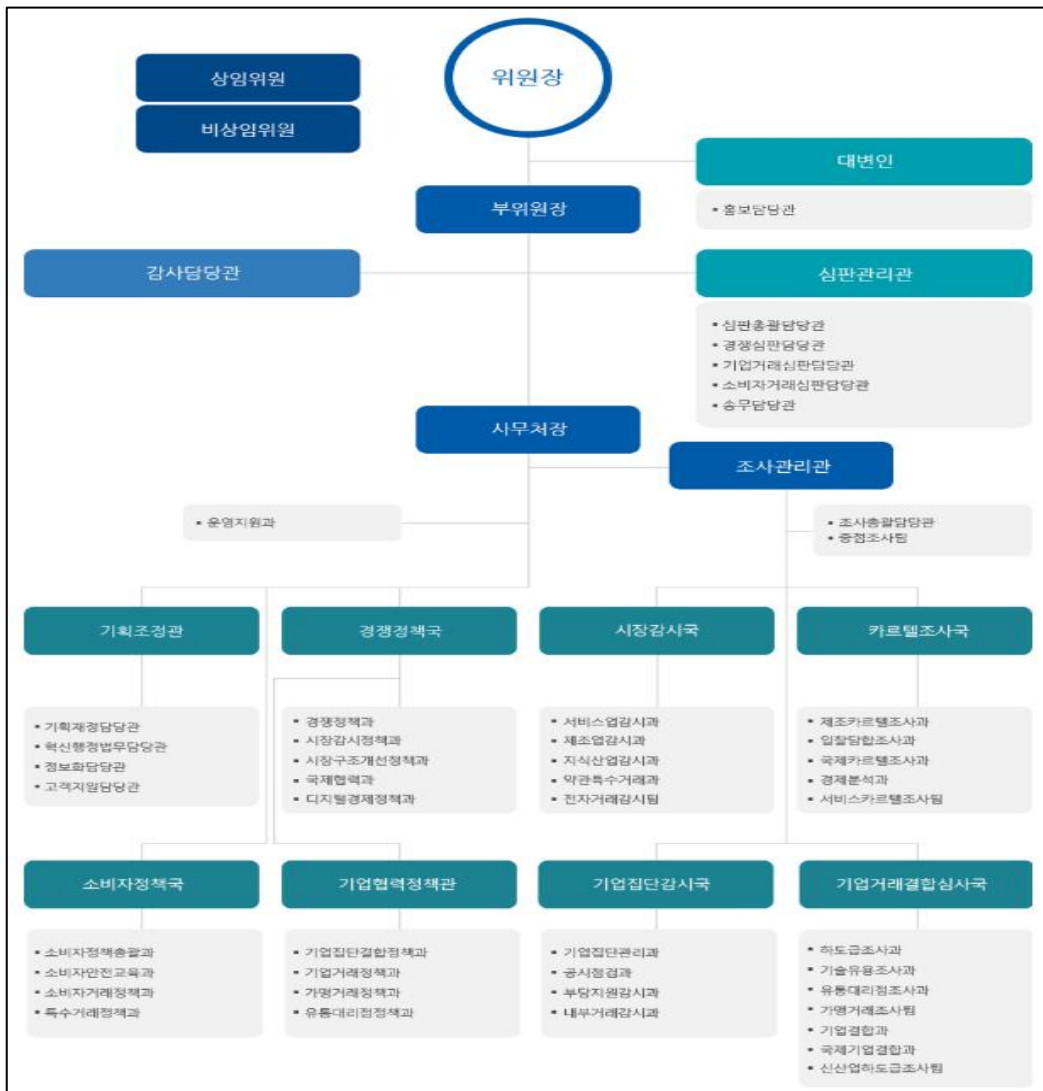
- 1981년 경제기획원 장관 소속으로 최초 설치된 이후, 1990년 경제기획원에서 분리된 후 별도 조직으로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2.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수행 역할

- 공정한 경쟁 촉진
 - 각종 진입장벽 및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반경쟁적 규제를 개혁하고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규율함으로써 경쟁적 시장환경을 조성
 -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기타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여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
- 소비자 주권 확립
 -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만들어진 약관조항을 시정하고 표준약관을 보급함으로써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
 - 허위·과장의 표시·광고를 시정하고 소비자 선택에 꼭 필요한 중요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함
 - 할부거래, 방문판매, 전자상거래 등 특수한 거래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수한 유형의 소비자피해를 방지
-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 하도급대금지급, 물품수령 등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 가능한 대기업들의 각종 불공정행위를 시정함으로써 중소 하도급업체의 발전기반을 확보
- 대형 유통업체, 가맹사업본부 등이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중소 입점, 납품업체, 가맹점에게 행하는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를 시정
- 부당한 경제력 집중 억제
 - 대기업집단 계열사간 상호출자, 채무보증 금지, 부당내부거래 억제 제도 등을 운영함으로써 선단식 경영체제의 문제점을 시정

3. 공정거래위원회 조직 구성



4.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 절차



5.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

법률명	기본 개념
공정거래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 방지 및 부당공동행위·불공정거래행위 규제
하도급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통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
약관규제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하여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
표시광고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 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 제공을 촉진
할부거래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할부계약 및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를 공정하게 함

방문판매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
전자상거래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
대규모유통업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
가맹사업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함
대리점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리점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
소비자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자유시장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고, 소비자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생활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부상조 정신을 바탕으로 소비자들의 자주·자립·자치적인 생활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 복지·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
제조물책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조물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 관련 제조업자 등의 손해 배상 책임을 규정하여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 안전 향상·국민경제 건전 발전에 이바지

PART 2 공정거래법 해설

I. 공정거래법 개관

1. 공정거래법의 목적

-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도모를 목적으로 함

2. 공정거래법의 구조

- 공정거래법은 시장에서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자 하는 법으로서 (i) 시장구조와 (ii) 거래행태를 중심으로 경쟁의 정도를 측정 및 평가함
- 먼저, ‘시장구조’는 일정한 시장에 현재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와 각 참여사업자가 그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시장점유율(market share)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주는데, 예를 들어 독점(monopoly)이란 시장 내의 사업자가 하나이고 그 점유율이 100%란 뜻이고, 과점(oligopoly)이란 시장 내의 사업자가 소수(예: 3 또는 5)이고, 그 사업자들이 시장을 분할하고 있다는 의미임. 일반적으로 독점이나 과점의 시장구조 하에서는 경쟁이 없거나 치열하지 못하게 되고 따라서 소비자 후생이나 경제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음
- 다음으로, ‘거래행태’는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방식이나 행태가 어떠한가를 나타내는데, 예를 들어, 사업자들이 담합(collusion)을 할 경우에는 시장 내의 사업자가 여럿이 있더라도 상호간에 경쟁을 하지 않고 가격이나 생산량을 사업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도록 정하게 되며, 그 결과 독점적인 시장구조와 같은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함

3. 공정거래법의 규제 유형

- 시장구조의 개선: 경제규제 완화 및 경쟁제한 제도 개선 / 독과점적 시장 구조의 개선 / 지주회사의 행위 제한 /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금지 / 경제력집중억제
- 거래행태의 개선: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금지 /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II. 부당지원행위

1. 주요 개념

가. 성립 요건 및 행위 유형

- ①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자금 등을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거래상 실질적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여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고 (“지원행위”), ② 지원행위로 인해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을 것(“부당성”)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성립함[공정거래법(이하 “법”) 제45조 제1항 제9호 각 목]

나. 지원행위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거나,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다. 지원객체

- 지원행위를 통하여 경제상 이익이 귀속되는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
- 개인도 지원객체가 될 수 있음

- 지원주체의 계열회사로 한정되지 않으며, 지원주체가 주식 100%를 소유한 경우에도 지원객체에 해당될 수 있음

라. 정상가격

-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사이에 거래한 상품·용역 등과 동일한 상품·용역 등이, 특수한 관계가 없는 독립된 시장참여자 사이에서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거래되었다면 형성되었을 거래가격
- 정상가격 산정방법
 - 해당 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등이 동일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실제 거래한 사례가 있는 경우, 그 거래가격
 - 해당 거래와 동일한 실제사례를 찾을 수 없는 경우, ① 먼저 해당 거래와 비교하기에 적합한 유사한 사례를 선정하고, ② 그 사례와 해당 지원행위 사이에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조건 등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 ③ 그 차이가 있다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정상가격을 산정

마. 금지되는 행위 유형

- 지원 방법에 따른 분류

지원행위의 종류	내용
거래조건 차이로 인한 지원행위	지원객체와 정상가격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거래하여 지원객체에게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거래규모로 인한 지원행위	지원객체와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여 지원객체에게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거래단계 추가를 통한 지원행위	지원주체가 다른 사업자와 상품이나 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역할이 없거나 미미한 지원객체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

• 거래 대상에 따른 분류

행위 유형	내용
부당한 자금 지원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가지급금이나 대여금 등의 자금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부당한 자산거래를 통한 지원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타 회사에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자산 또는 용역·상품을 상당히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거나 •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통해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부당한 상품·용역 거래를 통한 지원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와 상품·용역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와 상품·용역을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부당한 인력 지원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타 회사에 인력을 상당히 높거나 낮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하여 통해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부당한 거래단계의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역할이 없거나 미미한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는 행위 • 타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특수관계인이나 타 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 또는 거쳐서 거래하면서 그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에 거래상 역할 대비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여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타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	---

2. 판단기준 및 예시

가. 행위유형별 예시

행위 유형	내용
부당한 자금 지원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의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 금리보다 저금리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 상품·용역거래와 무관하게 「선급금 명목으로」 지원객체에게 무이자 또는 저금리로 자금을 제공하는 경우 • 지원주체가 제3자인 은행에 정기예금을 예치한 다음 이를 다시 지원객체에 대한 대출금의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지원객체로 하여금 은행으로부터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도록 하는 경우
부당한 자산거래를 통한 지원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객체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비계열사가 매입한 할인율보다 낮은 할인율로 매입하는 경우 •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지원객체에 매각하는 경우 • 부동산을 시가에 비하여 저가로 지원객체에 매도하거나, 고가로 지원객체로부터 매수하는 경우
부당한 상품·용역 거래를 통한 지원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객체가 운영하는 광고매체에 정상광고단가보다 높은 단가로 광고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광고비를 과다 지급하는 경우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각종 물류업무를 비경쟁적인 사업양수도 또는 수의계약의 방식을 통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대부분 몰아주는 경우
부당한 인력 지원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지원을 위해 인력을 제공한 후 인건비는

	지원주체가 부담하는 경우 • 지원주체가 자신의 인력을 지원객체에 전적·파견시키고 급여의 일부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
부당한 거래단계의 추가	• 지원주체가 직접 공급사로부터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지원객체를 중간 유통단계로 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 지원주체가 자신에게 제품을 납품하는 회사로 하여금 제품생산에 필요한 중간재를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지원객체를 거쳐 구매하도록 하는 경우

나. 부당성 판단의 원칙

- 지원 행위에 대한 부당성은 원칙적으로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의 관계, 지원 행위의 목적과 의도,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 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 행위 당시 지원객체의 경제적 상황, 중소기업 및 여타 경쟁사업자의 경쟁 능력과 경쟁여건의 변화정도, 지원 행위 전후의 지원객체의 시장점유율 추이 및 신용등급의 변화정도, 시장개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아래와 같은 경우 지원행위의 부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
 - 지원객체가 해당 지원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형성·유지 또는 강화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지원객체가 속하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해당 지원행위로 인하여 경쟁사업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지원객체가 해당 지원행위로 인하여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경쟁조건이 상당히 유리하게 되는 경우
 - 지원객체가 속하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해당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의 퇴출이나 타사업자의 신규진입이 저해되는 경우

- 관련 법령을 면탈 또는 회피하는 등 불공정한 방법, 경쟁수단 또는 절차를 통해 지원행위가 이루어지고, 해당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속하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재 사례

가. 거래조건 차이로 인한 지원행위

자금 거래 - 기업집단 「CJ」 소속 계열회사들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공정위 2025. 8. 20. 의결 제2025-164호)	
행위 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J, CJ CGV는 지원객체의 영구전환사채 발행을 위해 신용보강·지급보증 목적으로 일괄거래(Package Deal) 방식의 TRS* 계약을 체결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착되어 있고(전환사채), 만기를 영구히 연장할 수 있는(영구채) 회사채 • 지원객체는 투자자(금융회사)와 500억 원(CJ건설) 및 150억 원(시플라인)규모의 영구전환사채를 발행·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지원주체와 투자자는 지원객체 발행 영구전환사채를 대상으로 TRS 계약을 체결 • 지원객체는 자체적으로 자본을 조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원주체의 TRS 계약으로 인해 영구전환사채를 발행하여 대규모 자본성 자금(CJ건설 자본총액의 52%, 시플라인 자본총액의 417%)을 저금리로 조달
정상가격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객체가 TRS 계약 없이 자금을 조달할 때 적용되는 금리(▲ 이 사건 영구전환사채의 금리 결정 기준일에 지원객체의 신용등급과 같은

	등급을 보유한 회사가 ▲후 순위가 아닌 ▲만기 3년의 공모 회사채를 발행하였을 경우 적용될 수 있는 금리)
--	---

자금 거래 - 아모레퍼시픽그룹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공정위 2020. 5. 25. 의결 제2020-130호)	
행위 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모레퍼시픽이 자기가 소유한 우리은행 정기에금을 계열사인 코스비전에게 무상 담보로 제공하여, 코스비전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저금리로 차입할 수 있게 한 행위
정상가격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은행이 코스비전에게 무담보 신용조건으로 대여해줄 경우 제공 가능한 금리인 2.04% ~ 2.33%를 정상금리로 산정

인력 거래 - 하이트진로 및 삼광글라스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공정위 2018. 3. 26. 의결 제2018-110호)	
행위 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이트진로가 자신의 소속 인력을 전적 또는 파견하여 계열사인 서영이앤티의 업무를 전적으로 수행하게 하면서 인건비 일부를 부담한 행위
정상가격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건비 전부를 정상가격으로 봄

인력 거래 - CJ프레시웨이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공정위 2024. 8. 14. 의결 제2024-293호)	
행위 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CJ프레시웨이가 CJ프레시원에 약 13년에 걸쳐 총 221명의 인원을 파견하여 CJ프레시원 사업장에서 CJ프레시원의 핵심 관리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음에도, CJ프레시원이 CJ프레시웨이에 위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CJ프레시웨이는 과징금 약 167억원, CJ프레시원은 과징금 약 78억원 부과
정상가격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건비 전액(약 334억 원)을 정상가격으로 봄

나. 거래규모로 인한 지원행위

씨제이씨지브이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공정위 2016. 10. 21. 의결 제2016-293호)	
행위 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CJ CGV가 스크린광고 영업대행 업무를 계열사에게 20%의 수수료로 위탁하였음
공정위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CJ CGV는 스크린광고 물량 중 90% 이상을 계열사에게 몰아주었는데, 이는 지원객체 매출의 70% 이상에 해당하여 지원행위 없이는 지원객체가 독립적으로 사업활동을 영위하기 어려웠음 지원객체에 지급한 대가 또한 다른 스크린광고 거래업체에 지급하는 대가보다 높게 형성되었음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 과징금 71.7억원 부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공정위 2015. 5. 6. 의결 제2015-146호)	
행위 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주택 임대업무 중 일부 업무를 주택관리공단에게 위탁하면서 높은 수준의 임대위탁수수료를 지급함
공정위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순 업무를 위탁하면서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임대위탁수수료를 지급하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거래액이 지원객체 매출액의 99% 수준을 차지하였음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징금 145.9억원 부과
--	--

다. 거래단계 추가를 통한 지원행위

엘에스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공정위 2018. 9. 11. 의결 제2018-064호)	
행위 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엘에스니꼬동제련이 수입 전기동 거래에 관하여 직접 원공급자와 수입 전기동을 정상적인 가격으로 거래하였을 경우 톤당 22달러 더 낮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열사인 엘에스글로벌을 중간 유통단계로 하여 전기동을 판매한 행위
공정위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상으로는 엘에스동제련 → 엘에스글로벌 → 엘에스 4개 사의 거래 구조이나, 실질적으로는 엘에스동제련과 엘에스 4개 사가 직접 거래 조건을 협상했고 엘에스글로벌은 중계 업체임에도 운송·재고 관리 등 실질적 역할이 전혀 없었음 그룹 지주사 엘에스는 이 사건 거래 구조의 기획·설계·교사 주체로서 지원행위의 실행과 유지에도 계속하여 관여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 통행세 거래에 대하여 엘에스니꼬동제련에 과징금 103.6억원, 엘에스에 134.7억원, 엘에스글로벌에 7.3억원 부과

하이트진로 및 삼광글라스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공정위 2018. 3. 26. 의결 제2018-110호)	
행위 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삼광글라스가 서영이앤티를 중간 유통단계로 하여 공급사로부터 글라스락 캡을 구매한 행위

공정위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영이앤티는 해당 기간 동안 323억 원에 달하는 매출을 확보하고, 해당 기간 당기순이익의 1,309.9%에 달하는 이익(18.6억 원)을 제공받음 • 하이트진로는 총수가 단독지배하던 구조에서 서영이앤티를 통해 2세와 함께 지배하는 구조로 전환 • 통행세 거래에 대하여 삼광글라스에 과징금 9.3억원, 서영글라스에 14.9억원 부과 • 법인 및 임원 3명 검찰 고발
---------------	---

기업집단 하림 소속 계열회사들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공정위 2022. 1. 27. 의결 제2022-012호)	
행위 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림그룹 총수는 2세에게 계열사 ‘올품’의 지분 100%를 2세에 증여함 • 하림 계열회사들은 동물약품 및 기능성 사료첨가제의 구매방식을 올품을 통해 통합 구매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거래상 역할이 없는 올품에게 구매대금의 3%를 마진으로 지급함
공정위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품 주식 매각은 거래당사자인 제일홀딩스와 한국썸벤판매가 배제되고 동일인의 경영권 지원조직인 그룹본부 경영지원팀에서 전담하여 진행하였으며, 주식가치의 평가도 매수자인 한국썸벤판매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결정 • 사료첨가제 구매 및 가격 협의는 계열 사료회사와 사료첨가제 제조사 간에 직접 이루어졌으므로 원가절감과 관련한 올품의 역할은 사실상 없었음 •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 • 올품 및 8개 하림 계열회사에 과징금 총 48.88억원 부과

4. 위반 시 제재

- 시정조치: 공정위는 해당 부당지원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해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음(법 제49조 제1항)
- 과징금: 공정위는 지원주체 및 지원객체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의 10% 이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법 제50조 제2항)
- 형사고발: 공정위는 부당지원행위를 한 사업자를 형사고발할 수 있고,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법 제124조 제1항 제10호, 제129조)

5. 자주 묻는 질의응답(FAQ)

Q1. 부당지원행위는 계열사 간의 거래에만 성립하는지?

공정거래법의 부당지원행위 금지 규정은 ‘사업자는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거래법의 부당지원 행위 금지 규정은 계열사간 거래뿐만 아니라 계열사 외 제3자와 거래 시 해당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에서도 적용됩니다. 예컨대, 회사의 계열사가 아닌 역할 없는 제3자를 거래 단계에 추가하여 거래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Q2. 모회사와 완전자회사간에도 부당지원 행위가 성립하는지?

모회사와 완전 자회사간 거래라 하더라도 양자는 법률적으로 별개인 독립한 거래주체이므로 모회사가 현저히 유리한 조건 등 거래를 통해 자회사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고 그로 인해 자회사가 속한 관련 시장에서 공정거래 저해 우려가 있는 경우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2004. 11. 12. 선고 2001두2034 판결에서 모회사와 완전 자회사 사이의 지원 행위도 부당지원 행위 규율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Q3. 용역 대가를 변제기 이후에 회수하지 않는 등,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으로도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부당지원행위란 반드시 어떠한 지원이 직접적,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작위)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여야 하나, 이를 하지 않거나 방임(부작위)함으로써 계열사 등의 상대방 사업자에 부당한 이익이 제공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면, 그러한 부작위 행위도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자금지원 의도로 자산/용역 등 거래로 인한 대가인 자금을 변제기 이후에도 회수하지 않아 지원 객체가 그 자금을 운용토록 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이자 상당액의 금융상 이익을 얻게 하는 것과 같은 부작위 행위도 충분히 부당한 자금지원 행위로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Q4. 계열회사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거래하면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나요?

계열회사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거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거래조건은 비계열회사와 거래한다는 가정 하에 결정하여야 하고, 거래조건 결정시 객관적인 시장가격을 직접 확인하는 등 거래조건 결정 과정에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III. 부당한 공동행위

1. 주요 개념 및 판단기준

가. 부당한 공동행위 및 ‘합의’

-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계약·협정·결의 기타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물량,

거래조건, 거래상대방, 거래지역 등을 제한하는 것을 ‘합의’하는 것을 의미함

- 합의에는 구두합의, 서면합의가 모두 포함되며, 계약이나 협정 등 명시적인 합의는 물론 사업자간 암묵적 양해와 같은 묵시적인 합의도 포함됨
- 합의에 따를 의사 없이 합의한 경우에도, 다른 쪽 당사자는 당해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로 합의에 따를 것이라고 신뢰하고 이를 이용한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로 제재될 수 있음

나. 합의의 추정 및 번복

- 해당 거래분야 또는 상품·용역의 특성, 해당행위의 경제적 이유 및 파급효과, 사업자간 접촉 횟수, 양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를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거나, 담합행위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았음이 입증된 경우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함

외형상 일치 판단기준
① 가격 등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변동률, 변동폭, 변동시점 등이 동일·유사한 경우
②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변동률, 변동폭 등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구매를 대체하려는 정도가 미미한 경우
③ 입증하려는 합의의 내용이 가격 등을 특정 수준으로 인상하자는 합의가 아니라, 가격을 인상하자는 등 대략적인 방향만 공동으로 정하는 다소 느슨한 형태의 합의인 경우
합의 추정 요건

- ① 직·간접적인 의사연락, 만남 또는 정보교환이 있는 경우
 - 가격인상 결정 시점에 가까이 인상일자, 인상계획 내역 등의 교환이 이루어진 경우
- ② 공동으로 수행되어야만 해당 사업자들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
 - 수요가 감소되거나 재고가 쌓여 있음에도 가격이 동시에 인상되는 경우
- ③ 행위의 일치를 시장상황의 결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
 - 임금인상률 등이 달라 원가가 다름에도 가격 변동폭이 동일한 경우
- ④ 산업구조상 합의가 없이는 행위의 일치가 어려운 경우
 - 사업자들의 제품에 각자 다른 특징이 있어 차별화가 상당히 이루어진 경우에도 개별 사업자들의 가격이 일치하는 경우

- 합의 추정의 반복

- 외형상 일치가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면 합의 추정이 반복될 수 있음
 -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요인(금리, 원자재 가격 등)의 변경에 사업자들이 각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생한 경우
 - 행정지도에 각자 따른 결과 외형상 일치가 일어난 경우
 - 다른 업체의 가격 인상 등을 단순 추종하는 과정에서 외형상 일치가 일어난 경우

2.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 및 예시

행위 유형	내용
가격 결정	경쟁사업자간 상품·용역의 가격을 결정·유지, 변경하기로 합의

	<p>[예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협회 모임에서 만나 가격 또는 수수료율 등을 인상한다는 큰 틀의 합의를 하고, 이후 실무자들이 지속적으로 모임을 가지면서 가격/수수료율의 인상 수준, 시기 등을 세부적으로 협의하는 경우</p>
거래조건 결정	<p>경쟁사업자간 상품·용역의 거래조건을 결정·유지, 변경하기로 합의</p> <p>[예시] 경쟁 관계에 있는 가맹사업자들이 일정 기간 가맹점사업자 유치를 위한 프로모션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경우</p>
생산·출고 등 제한	<p>경쟁사업자간 상품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를 제한하기로 합의</p> <p>[예시] 밀가루 생산 사업자들이 밀가루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실 방지를 위해 사업자별 밀가루 판매량의 상한을 정하기로 합의하는 경우</p>
거래제한	<p>경쟁사업자간 거래지역을 분할·제한하거나, 거래상대방을 분할·제한하기로 합의</p> <p>[예시] 경쟁 관계에 있는 가맹사업자들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영업 비용을 줄이기 위해 상대방의 기존 가맹점사업자에 대해서는 영업활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경우</p>
시설투자 제한	<p>경쟁사업자간 상호 설비의 신설, 증설, 장비의 도입을 하지 않기로 합의</p>
상품제한	<p>경쟁사업자간 생산, 거래하는 상품의 종류·규격을 제한하기로 합의</p> <p>[예시] 제빵 사업자들이 가격 경쟁을 자제하기 위하여 제과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휴 할인을 제공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p>
입찰담합	<p>경쟁사업자간 입찰 또는 경매의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경락가격,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요소가 되는 사항을 합의</p>
정보교환	<p>경쟁사업자간 가격, 생산량, 상품 또는 용역의 원가, 출고량, 재고량, 판매량, 상품·용역의 거래조건 또는 대금·대가의 지급조건 등의 정보를 교환</p>

	<p>[예시] 경쟁사들이 10년 간 가격 인상안 등을 교환해왔는데, 특히 가격인상을 위한 내부 품의 직전에 정보교환이 있었으며, 그 품의에 경쟁사들의 가격인상안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p>
--	--

3. 제재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전력공사 등 발주 고객센터 시스템 구축 구매 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위 2023. 11. 23. 의결 제2023-199호) 	
행위 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전 및 KDN의 고객센터 시스템 구축 및 기술지원을 하였던 회사에서 퇴사한 A가 2018년 (주)텍스퍼트를 설립 • (주)다음정보기술 또는 (주)에스지엠아이는 한전 등의 관련 입찰을 수주하고자 (주)텍스퍼트에게 들러리 섭외 및 기술 지원 등을 요청 • (주)텍스퍼트는 (주)다음정보기술, (주)에스지엠아이 및 (주)티앤아이씨티를 섭외하여 낙찰예정자 또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하도록 함. 직접 낙찰받거나 낙찰자에게 기술을 지원
공정위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사업자만이 참가할 수 있는 당해 입찰의 특성상 경쟁이 어느 정도 제한될 소지가 있었다는 점, 관련매출액이 총 159억원 정도로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됨 •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 • 시정명령, 과징금 총 2억 5,300만원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풍 일대 4개 (주)골프존 가맹점사업자 및 (주)골프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위 2023. 9. 14. 의결 제2023-072호) 	
행위 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간 가격담합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로 개업한 (주)골프존 가맹점사업자(현풍 일대 4개사)는 인근 (주)골프존 가맹점사업자의 쿠폰발행 등 관측활동으로 인해 이용객들이 요금이 비싸다고 민원을 제기하자 가맹본부에게 인근 가맹점들의 쿠폰발행 등 과열경쟁에 대해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 • 이에 가맹본부는 지역 가맹점사업자들이 자체 지류쿠폰을 발행하거나 요금을 할인하여 영업해온 사실을 확인하였고,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요금정상화를 위한 모임에 참석해줄 것을 공지
<p>공정위 판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금정상화 목적의 모임에서 쿠폰발행과 요금할인을 금지하기로 합의한 행위, 가맹점사업자들이 위 합의에 따라 기존 쿠폰을 회수하고 신규 쿠폰 발행을 중지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가격담합)에 해당 • 시정명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미납가산금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 (공정위 2022. 3. 2. 의결 제2022-058호) 	
<p>행위 사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G모빌리언스, 다날, SK플래닛, 갤럭시시아 등 4개 소액결제사는 수익성을 좋게 만들기 위해 2010년 3월 ~ 2019년 6월 사이에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료를 공동 도입하고, 연체료 금액 수준을 과도한 수준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한 후 이를 실행
<p>공정위 판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개 소액결제사의 담합은 소액결제사 간 소비자·가맹점 유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으며, 9년의 장기간 동안 소비자들에게 약 3,753억원의 연체료를 부과하는 등 휴대폰 소액결제를 주로 이용하는 사회초년생 등 금융취약계층에게 현저한 피해 유발 •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 • 시정명령, 과징금 총 169.4억원 부과, 2개 법인(KG모빌리언스, SK플래닛) 검찰 고발

6개 빙과류 제조·판매사업자 및 3개 유통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공정위 2022. 2. 11. 의결 제2022-026호)	
행위 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등 4개 제조사들은 2016.2.15. 영업 전반에 대해 서로 협력하자는 기본 합의를 함 • 이후 ①경쟁사 소매점 침탈 금지 합의를 시작으로, ②이후 소매점·대리점대상 지원을 상한 제한 합의, ③편의점·기업형 슈퍼마켓(SSM)·대형마트 등 유통업체 대상 납품 가격·판매가격 인상 합의 등 영업 전반으로 담합을 확대
공정위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 및 아이스크림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을 한 것으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 •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 명령, 재발방지 교육 명령), 과징금 총 1,350억 4,500만 원 부과

24개 원심력콘크리트(PHC)파일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공정위 2021. 8. 19. 의결 제2021-215호)	
행위 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개 콘크리트 제조사업자는 2008년 4월 ~ 2017년 1월 기간 동안 아파트 등 건설 기초공사에서 활용되는 콘크리트 파일(PHC파일)의 기준가격, 단가율, 생산량 감축 등을 합의한 후 이를 실행
공정위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사건 담합은 2008년 1월부터 2014년 9월까지는 전체 대·중소기업 간 ‘직접적인 모임·회합’ 방식, 2014년 10월부터 2017년 1월까지는 대중견기업 - 중소기업 간 ‘의사연락’ 방식의 상호 공조체제를 통해 이루어짐 • 담합기간 동안 주력 생산제품인 A종 500mm 구경 콘크리트 파일 평균 판매가격이 상승하거나 대체로 합의한 수준을 상회 또는 육박하였음 •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 • 시정명령, 과징금 총 1018.4억원 부과

4. 위반 시 제재

- 시정조치: 공정위는 해당 부당공동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음(법 제42조)
 - 시정조치의 예시 - 중지 명령, 공표 명령, 합의 파기 명령,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 등
- 과징금: 공정위는 공동행위 참여사업자의 평균매출액의 20% 이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법 제43조)
- 형사고발: 공정위는 부당공동행위를 한 사업자를 형사고발할 수 있고,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법 제124조 제1항 제9호, 제128조)
- 징벌적 손해배상책임(법 제109조 제2항):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는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손해의 3배 범위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 공공입찰 참가제한
 -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 2년
 - 담합을 주도한 자: 1년
 - 담합에 참여한 자: 6개월

5.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가. 의의

- 공정위는 공동행위 참여사업자 중 공동행위 사실을 자진신고하거나 조사 협조를 하는 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나. 감경 또는 면제 대상

구분	자진신고 순위	과징금	시정조치	검찰고발
조사개시 이전 (자진신고자)	최초 신고자	100% 면제	면제	면제
	2번째 신고자	50% 감경	임의 감경	임의 면제
조사개시 이후 (조사협조자)	최초 협조자	100% 면제	감경/면제	면제
	2번째 협조자	50% 감경	임의 감경	임의 면제
엠네스티 플러스 (추가 감면제도)	특정한 담합 사건 조사 과정에서 조사를 받던 사업자가 또 다른 담합에 대한 증거를 첫 번째로 제공하면, 현재 조사 중인 담합사건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 및 시정조치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			

6. 자주 묻는 질의응답(FAQ)

Q1. 업체 관계자들끼리 가격에 대한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끔 가격 수준에 대한 의사교환을 하는 경우에도 가격에 관한 합의를 한 것인지?

부당한 공동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합의는 계약·협정·동의서 등의 명시적인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 간의 암묵적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됩니다.

예로, 렌터카 업체들이 공식 위원회에 참석하여 논의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차례의 회의를 통해 수 개의 회사가 모두 본인 의견을 개진하였고, 이를 통해 조합의 대여요금 참고안이 결정되었으며, 렌터카 업체들이 이에 따라 대여 요금을 신고한 사안에서, 업체들이 순차적 의사 연락에 따라 일정 지역의 차종별 자동차 대여요금의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다는 암묵적인 양해가 있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서울고법 2016.10.7. 선고2014누70442 판결).

위 사례와 같이 법원은 암묵적으로 양해가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가 존재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해당 가격 의사 교환 행위 자체가 암묵적 가격 합의 등으로 비취질 소지가 있습니다(공식 회의 여부는 불문).

Q2. 합리적 제품구매를 위하여 다른 회사들과 구매가격을 합의하려는 경우와 같이, 수요자들이 구매조건을 합의한 경우에도 담합이 성립하는 것인지?

공급자들이 아닌 수요자들이 물품 구매 가격을 합의하였다고 하여도 그로 인해 당해 제품 분야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된다면 공정거래법상 부당 공동행위(담합)에 해당됩니다.

IV. 불공정거래행위

1. 주요 개념 및 판단기준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p>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4.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6.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7.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8.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9.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 나.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10. 그 밖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가. 공정거래저해성

-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인 공정거래저해성은 경쟁제한성과 불공정성을 포함하는 개념임
- ‘경쟁제한성’은 당해 행위로 인해 시장 경쟁의 정도 또는 경쟁사업자(잠재적 경쟁사업자 포함)의 수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줄어들거나 줄어들 우려가 있음을 의미함
- ‘불공정성’은 경쟁수단 또는 거래내용이 정당하지 않음을 의미하며, 경쟁수단의 불공정성은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과 품질 이외에 바람직하지 않은 경쟁수단을 사용함으로써 정당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음을 의미하고,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이라 함은 거래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하거나 불이익을 강요함으로써 공정거래의 기반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음을 의미함

나. ‘부당하게’와 ‘정당한 이유없이’의 구분

- 공정거래저해성은 ‘부당하게’와 ‘정당한 이유없이’로 구체화되며, ‘부당하게’와 ‘정당한 이유없이’는 아래와 같이 구체화될 수 있음
- ‘부당하게’를 요건으로 하는 행위 유형은 당해 행위의 외형이 있다고 하여도 그 사실만으로 공정거래저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경쟁제한성·불공정성(unfairness)과 효율성 증대효과·소비자후생 증대효과 등을 비교 형량하여 경쟁제한성·불공정성의 효과가 보다 큰 경우에 위법한 것으로 보게 된다. 따라서 ‘부당하게’를 요건으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위법성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함

- ‘정당한 이유없이’를 요건으로 하는 행위(공동의 거래거절,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계속적 엄매)에 대해서는 당해 행위의 외형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정거래저해성이 있는 것으로 보되, 피조사인(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기업)에게 당해 행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없다는 점에 대해 입증책임이 있음(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두833 판결)

2. 유형별 행위

가. 거래거절

(1) 유형

- 공동의 거래거절과 단독 거래거절
 - 공동의 거래거절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 사업자에게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함
 - 단독의 거래거절은, 사업자가 단독으로 부당하게 특정 사업자에게 거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자와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 상품·용역 수량, 내용을 현저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함
- 공급거절과 구입거절, 거래개시의 거절과 거래계속의 거절이 포함되며, 거래상대방에게 현저히 불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거나 거래하는 상품·용역의 수량 또는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여 사실상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도 포함됨

(2) 위법성 판단기준

가) 공동의 거래거절

-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하며, 공동의 거래거절을 당한 사업자는 여러 사업자와의 거래개시 또는 계속이 제한되므로

사업활동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 결과 정상적인 경쟁이 저해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공동의 거래거절은 원칙적으로 경쟁제한성이 있는 것으로 봄

- (i) 재고부족이나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부도 등 채무불이행 가능성 등으로 인해 공동의 거래거절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ii) 특정사업자가 공동의 거래거절을 당하더라도 대체거래선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는 경우, (iii) 사업자들이 사전에 당해 사업영위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거래자격 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미달되는 사업자와의 거래개시를 거절하는 경우 등에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 공정거래저해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나) 기타의 거래거절(단독 거래거절)

- 거래거절 대상이 거래상대방의 사업영위에 필수적인지 여부, 거래거절을 당한 특정사업자가 대체거래선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는지 여부, 거래거절로 인해 특정사업자의 사업활동이 곤란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시장의 경쟁정도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게 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쟁제한성’을 판단함
- (i) 생산 또는 재고물량 부족으로 인해 거래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물량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 (ii) 거래상대방의 부도 등 신용결함, 명백한 귀책사유, 자신의 도산위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거래거절 이외에 다른 대응방법으로 대처함이 곤란한 경우 등에는 거래거절의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법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음

(3) 위반 행위 예시(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참조)

- 합리적 이유없이 거래거절이 행해지고 그 결과 당해 시장에서 사업자의 사업활동이 곤란하게 되고 경쟁의 정도가 실질적으로 감소되는 경우
- 자기 또는 자기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업자와 독점적으로 거래하는 사업자와는 거래하면서 경쟁사업자와도 거래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합리적

이유없이 거래를 중단하거나 제한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

- 합리적 이유없이 자기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는 판매업자나 대리점에게 후방시장에서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해 원재료공급을 거절하게 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
- 자신이 활동하는 시장에 새로이 진입하고자 하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원재료 공급을 중단하거나 중단하도록 강요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
- 합리적 이유없이 원재료 제조업자가 자신의 시장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하여 원재료를 직접 생산·조달하려는 완성품 제조업자에 대해 원재료 공급을 거절하는 행위

(4) 제재 사례

(주)이오시스템의 거래거절을 하도록 한 행위에 대한 건 (공정위 2025. 10. 16. 의결 제2025-197호)	
행위 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케이(K)-9 자주포 방향포경 입찰 과정에서, 이오시스템은 방향포경의 핵심 부품인 계수기 조립체를 국내 독점생산하는 신보로 하여금 경쟁업체인 우경광학에게 계수기 조립체를 공급하지 못하게 함 • 구체적으로, 이오시스템은 신보와 “신보가 계수기 조립체 공급, 양도, 외주생산 등의 경우 이오시스템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계약을 체결 • 그 결과 이오시스템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방향포경 공급자로 선정
공정위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거절의 경위가 계약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방향포경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방위산업은 제도적으로 특정 방산업체가 특정 방산물자 생산을 전담하는 구조였으나, 2008년을 마지막으로 해당 제도는 폐지되고 방산업체를 추가로 지정하여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게됨. 이러한 제도개선의 취지에 반하는 경쟁제한 행위 • 시정명령
--	---

대구동부·경산지역 8개 레미콘제조사의 공동의 거래거절행위에 대한 건 (공정위 2013. 9. 5. 의결 제2013-152호)	
<p>행위 사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 동구·수성구 및 경북 경산시 지역의 민수 레미콘 시장에서 피심인들은 특정사업자에게 레미콘의 공급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함으로써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공동으로 거래를 거절하였음
<p>공정위 판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양의 협조요청을 받은 7개 레미콘 제조사들은, 공사차질을 우려한 B농업법인이 레미콘 공급을 받기 위해 통상적인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현금 선결제 방식으로 레미콘을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동양의 레미콘 대금 미수채권을 해결하여야 레미콘 공급이 가능하다는 등의 사유로 레미콘 공급을 거절 • B영농법인은 레미콘을 다시 공급받을 때까지 공사가 중단되어 공기연장에 따른 공사비용 증가, 양돈 출하시기 지연 등으로 사업활동에 상당한 곤란을 겪게 되었음 •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교육실시명령

부산·경남지역 2개 주류도매업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및 하이트맥주와 대선주조의 거래거절행위에 대한 건 (공정위 2004. 7. 31. 의결 제2004-238호)

행위 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이트맥주와 대선주조가 특정 주류도매업자가 자신들의 주류제품을 기존 도매업자들보다 저가로 판매한다는 이유로 이 특정 도매업자에 대하여 주류제품의 공급을 중단 또는 공급물량을 제한하거나, 자신들과 거래를 개시하고자 하는 신규 주류도매업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거래개시를 거절하였음
공정위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심인들이 경남협회와 부산협회의 거래거절 강요행위가 법 위반 행위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이에 동조하여 전단광고지 회수와 가격인하 판매를 중지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등 가격경쟁을 봉쇄하기 위한 수단으로 거래거절을 하였음 • 청해가 부산 및 경남지역에서 주류 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피심인들의 제품을 구비하지 못해 사업활동이 심히 곤란하게 되었음 • 과징금 6,310만원 (부산청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경남울산지회), 6,460만원 (부산주류도매업협의회), 9억 8,000만원 (하이트맥주), 2억 9,000만원 (대선주조) 각 부과

호리바코리아 주식회사의 거래거절행위에 대한 건 (공정위 2022. 1. 19. 의결 제2022-006호)	
행위 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리바코리아는 수질 원격감시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입찰에 있어 낙찰자가 그 계약의 이행을 위해 피심인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등 관련서류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 이를 피심인과 발주처가 체결한 협약서 내용에 반하여 거절하였음

<p>공정위 판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행위로 인해 결과적으로 본 건 입찰시장에서 이엔아이와 다른 입찰 참가자간 가격경쟁이 배제되었음 • 위 행위는 경쟁제한적 의도와 목적에서 이루어졌음. 즉, 피심인은 2019년 이엔아이의 대표가 협약서 발급을 요구하자 자신의 대리점에게만 협약서를 발급해준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한 바 있는데, 이엔아이는 피심인과 직접적인 거래관계는 없었으나 피심인의 제품을 취급한 경력이 다수 확인되고, 피심인 역시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 •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	--

나. 차별적 취급

(1) 유형

- 가격차별, 거래조건차별,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집단적 차별
 - 가격차별은, 부당하게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의미함
 - 거래조건차별은,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취급을 하는 행위를 의미함
 -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가격·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함

- 집단적 차별은, 집단으로 특정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취급하여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함

(2) 위법성 판단기준

- 거래지역이나 거래상대방에 따른 가격차별이 대상이 되며, 이때 가격이란 상품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상대방이 실제 지불하는 모든 대가를 말함. 여기에는 할인을 등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거래조건이 포함되며,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어야 합리적인 비교가 가능함
- 가격차별 행위로 인해 경쟁제한성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해야 하는데, (i) 행위자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은, 행위자가 가격차별로 인해 시장에서의 지위를 유지·강화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가격차별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려는 의도 하에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ii) 거래상대방이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은, 가격차별로 인해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상대방의 경쟁사업자들이 배제되거나 배제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가격차별에 의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취급을 받게 되는 거래상대방이 거래처를 쉽게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중심으로 판단함
- 이하 거래조건차별,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집단적 차별의 위법성 판단기준 역시 가격차별에 준하여 경쟁제한성을 판단할 수 있음

(3) 위반 행위 예시

가) 가격차별

- 사업자가 경쟁이 심한 지역에서 자신의 시장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합리적 이유없이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을 설정함으로써 당해 지역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자신의 시장지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기가 공급하는 2가지 이상의 상품·용역 중 시장점유율이 높은 상품·용역과 그렇지 않은 상품·용역을 동시에 구매하는 거래상대방(사업자 및 소비자)에 대해 가격면에서 현저히 유리한 취급을 함으로써 그렇지 않은 상품·용역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유력한 사업자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특정사업자를 가격면에서 현저히 우대한 결과 특정사업자가 그의 경쟁사업자 보다 경쟁상 우위에 서게 되어 정상적인 경쟁이 저해되는 경우
- 과점적 시장구조하에서 용역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수수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매출액 규모, 원가요소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특정업체에 종사한다는 이유만으로 현저하게 유리 또는 불리한 취급을 하여 경쟁업체에 종사하는 사업자에 비해 경쟁상 우위 또는 열위에 서게 하는 행위
- 시장점유율이 상당한 사업자가 대부분의 거래상대방에 대해서는 구입량에 따라 누진적으로 할인율을 적용하는 반면, 소수의 거래상대방에 대해서는 합리적 이유 없이 구입량과 관계없이 통상 적용하는 최대할인율보다 더 높은 할인율을 획일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사업자들간의 경쟁력 차이를 초래하는 행위
- (i) 가격차별이 거래수량의 다과, 운송비, 거래상대방의 역할, 상품의 부패성 등 요소에 근거하여 한계비용 차이나 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경우, (ii) 가격차별로 인해 발생하는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에는 가격차별 행위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아 위법하지 않을 수 있음

나) 거래조건차별

- 사업자가 경쟁이 심한 지역에서는 합리적 이유없이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유리한 대금결제 조건을 설정함으로써 당해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의 상품·용역 또는 수입품을 병행 취급하는 대리점 (판매업자)에 한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자기의 상품·용역의 제공시기, 배송 회수, 결제방법 등을 현저하게 불리하게 취급함으로써 당해 대리점의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하거나 대리점 간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다)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 계열회사와 비계열회사의 제품 간에 품질이나 거래조건에 있어서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계열회사의 제품을 비계열회사의 견적단가 보다 현저히 비싸게 구입한 행위
- 사업자가 자기의 계열회사와 비계열회사를 동시에 거래하면서 정당한 이유없이 계열회사에 비해 비계열회사에 대한 결제조건(현금비율, 어음만기 일 등)을 현저히 불리하게 하는 행위
- 사업자가 자기의 계열회사와 비계열회사에 동시에 임가공을 의뢰하면서 정당한 이유없이 계열회사에 지급하는 임가공단가를 비계열회사의 경우에 비해 현저히 유리하게 지급하는 행위
- 계열회사가 경쟁입찰에서 유리한 지위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에게는 보다 불리한 가격이나 거래조건으로 원재료를 공급하는 행위

라) 집단적 차별

- 복수의 사업자가 특정사업자에 대해 동시에 합리적인 이유없이 가격차별 또는 거래조건 차별 등을 행하는 경우
- 합리적 이유없이 복수의 판매업자와 제조업자가 공동으로 판매단계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높은 가격을 책정함으로써 그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고 그 결과 당해 시장에서의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복수의 제조업자가 공동으로 덤핑판매를 하거나 온라인판매를 한다는 이 유만으로 특정 판매업자에 대하여 공급가격을 다른 판매업자에 비하여 비 싸게 책정함으로써 사업활동을 현저히 불리하게 하고 다른 판매업자를 경 쟁상 우위에 서게 하는 행위

(4) 제재 사례

(주)미디어플렉스의 차별적 취급행위에 대한 건 (공정위 2008. 8. 29. 의결 제2008-381호)	
행위 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미디어플렉스는 자신이 판권을 소유한 영화를 대상으로 케이블티브이 방영권을 공급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계열회사인 (주)오리온 시네마네트워크에게만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비 계열 회사인 케이블티브이 영화방송채널사업자 에게는 공급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자 기의 계열회사를 현저히 유리하게 취급하는 행 위를 하였음
공정위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심인이 공급하는 케이블티브이 방영권 부여대 상 영화들은 영화관 상영당시 전국평균관객수가 130만명을 상회하는 양질의 영화에 해당하므로 계열회사인 오리온시네마는 비계열 영화방송채 널사업자에 비하여 현저히 유리한 위치에서 경 쟁하게 됨 • 오리온시네마의 경쟁사업자들은 양질의 영화를 확보하기가 곤란하여 경쟁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실제로 유력한 사업자인 엠비씨드라마넷은 관련시장의 영업을 중단하였 고 관련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티브로드도 쉽 게 진입하지 못하고 있음 •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금호터미널(주)의 차별적 취급행위에 대한 건

(공정위 2009. 11. 12. 의결 제2009-218호)	
행위 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호터미널은 임시차 운행 및 결행 관련 배차입력 업무를 수행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계열회사에게 일임하고 비계열회사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는 자기의 계열회사와 협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를 하였음
공정위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차입력 업무는 터미널사업자인 피심인이 수행하는 것이 관행임에도 자신의 업무를 계열회사에 일임함에 따라 계열회사는 비계열회사인 다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비해 현저히 유리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음 결행을 하거나 임시차를 운행하려는 때에 금호산업 주식회사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다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고객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곤란하여, 고객 확보 곤란에 따른 손실로 인해 관련 시장에서 배제될 우려 있음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다. 경쟁사업자 배제

(1) 유형

-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시키기 위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 등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거나, 경쟁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원자재 등의 상당량을 고가로 매입하는 것을 의미하며, 부당염매와 부당고가매입 행위가 있음
 - 부당염매란,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계속 공급하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낮은 대가로 공급하여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함

- 부당고가매입이란,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해 높은 대가로 구입하여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함

(2) 위법성 판단기준

-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는 추상적 위험성이 인정되는 정도로 족하며, 당해 염매행위의 의도, 목적, 염가의 정도, 행위자의 사업 규모 및 시장에서의 지위, 염매의 영향을 받는 사업자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함(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두4686 판결)
- ‘부당염매’ 행위와 관련하여, 단순히 상품 또는 용역을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그것이 ‘부당하게’ 행하여진 경우에 비로소 공정거래 저해 우려가 있다고 보아야 함

(3) 위반 행위 예시

가) 부당염매

- 규모의 경제 등 이유로 당해 시장에서의 신규진입이 단기간내 용이하지 않은 상황 하에서 경쟁사업자를 퇴출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조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계속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행위
- 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자가 신규진입을 시도하는 사업자를 저지하기 위해 제조원가를 하회하는 가격으로 상품 또는 용역을 일정기간 계속적으로 판매하는 행위
- 합리적 이유없이 공공기관 물품구매입찰에서 사업자가 자신이 타 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응찰하여 낙찰됨으로써 다년간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동 물품을 공급하는 행위

나) 부당고가매입

- 합리적 이유없이 제품의 생산·판매에 필수적인 요소를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높은 대가로 매점하여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가 시장에서 배제될 수 있을 정도로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
- 신규로 시장에 진입하려는 사업자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 거래가격 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점함으로써 사실상 진입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

(4) 제재 사례

삼성테스코(주)(홈플러스)의 부당염매행위에 대한 건 (공정위 2001. 2. 14. 의결 제2001-31호)	
행위 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플러스 안산점은 2000. 8. 30.부터 같은 해 11. 2.까지 약 2개월간 코카콜라를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부당하게 구입원가 984.5원/1.5ℓ 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인 390원/1.5ℓ 에서 890원/1.5ℓ 에 판매하는 부당염매 행위를 하였음
공정위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카콜라가 소비자에게 인지도가 높은 상품이라는 점과 소비자들은 피심인의 매장에서 여러 가지 상품을 한 번에 구입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인지도가 높은 코카콜라를 미끼 상품으로 내세워 장기간 동안 고객을 유인함으로써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유통업자들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여 시장에서 배제하게 할 우려가 있음 •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주)카드랜드의 경쟁사업자 배제행위에 대한 건 (공정위 1996. 2. 23. 의결 제1996-18호)	
행위 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카드랜드는 1995. 10. 10. 한국전력공사의 배전설비자동화시스템 개발을 위한 지리정보시스템(GIS) 소프트웨어 구매입찰(물량: 10식, 예정가격: 1,560백만원)에 쌍용정보통신(주)와 함께

	<p>참여하고, 1원에 입찰하여 1995. 11. 10. 낙찰 예정자로 결정된 사실이 있는바, (주)카드랜드는 이와 같은 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한 행위로 판단됨</p>
<p style="text-align: center;">공정위 판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심인의 응찰가격은 피심인이 1995년도에 국내 수요처에 공급한 것 중 한국전력공사에 납품된 것과 동일한 제품의 가격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임 • 피심인은 국내 지리정보시스템(GIS) 소프트웨어 시장에 있어서 시장점유율이 10.4%로써 시장점유율 3위에 해당되는 유력한 사업자일뿐만 아니라, 본건 입찰액과 향후 발주될 소프트웨어 관련 한국전력공사 구매예상액(총 200억원)과 국내시장 규모(1995년기준 약 100억원) 등을 고려할 때,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 판단됨 •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공표명령

라. 부당한 고객 유인

(1) 유형

-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도한 이익 제공이나 위계, 거래 방해 등의 방법으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말하며,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등이 있음
 -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이란, 자기와 거래하도록 하기 위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제의를 하는 행위를 의미함
 -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이란, 자기와 거래하도록 하기 위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기만 또는 위계의 방법으로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함

(2) 위법성 판단기준

-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도한 이익제공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해당업계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구체적 사안에 따라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되는 관행을 의미하며 현실의 거래관행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님
- 경쟁사업자(잠재적 경쟁사업자 포함)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이익제공(제외)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의 고객과 실제로 거래하고 있을 필요는 없으며, 객관적으로 고객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유인가능성이 인정됨

(3) 위반 행위 예시

가)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 자기와 거래하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음성적인 리베이트를 지급하거나 지급할 제의를 하는 행위
-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소개·의뢰·추천하는 자에게 리베이트 등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함으로써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 사업자가 타 사업자 또는 소비자와 거래함에 있어 표시광고 이외의 방법으로 사실과 달리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이나 품질, 성능, AS 조건 등이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수한 것으로 거래상대방을 오인시켜 자기와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
- 할인판매를 한다고 선전하면서 예상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현저히 부족한 수량만을 할인판매 대상으로 하여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미끼 상품)

- 사업자가 자신과 경쟁사업자의 영업현황, 제품기능, 기술력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른 허위의 비교분석 자료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함으로써 당해 사업을 수주하는 행위

(4) 제재 사례

(주)과마킹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공정위 2017. 3. 23. 의결 제2017-092호)	
행위 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과마킹은 자기가 제조 또는 공급하는 의약품의 처방·판매 증진을 목적으로 의료법 제2조 소정의 의사, 의료법 제3조 소정의 의료기관에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하게 현금, 상품권, 물품 등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또는 제공할 것을 제의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하였음
공정위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월 처방 금액의 10~25%를 지급하는 처방 보상비(98억 원), 3~6개월의 처방 규모를 예상하여 미리 지급하는 계약 판매비(41억 원), 신약 출시 및 첫 거래에 지급하는 랜딩비(1억 원) 제공 •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과징금 21.69억원 부과

씨제이프레시웨이(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공정위 2017. 9. 13. 의결 제2017-096호)	
행위 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씨제이프레시웨이(주)는 자기가 제조 및 판매하는 학교급식용 가공식품을 자신의 거래상대방인 학교들이 더 많이 구매하도록 할 목적으로,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담당자인 학교영양사들에게 자신이 제조한 제품 구매를 조건으로 상품권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제의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하였음

공정위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씨제이프래시웨이는 2014년 5월부터 2016 5월까지(2년간) 전국 727개교의 영양사들에게 2,974만원 상당의 씨지브이(CGV) 영화 상품권 제공 •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	--

일동후디스(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공정위 2021. 7. 9. 의결 제2021-193호)	
행위 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동후디스(주)는 거래상대방인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에게 저리의 대여금, 분유, 현금 및 물품을 무상 제공하거나 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유 판매와 관련하여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하거나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음
공정위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동후디스가 이러한 목적으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은 가격, 품질 등의 정상적인 경쟁수단이 아니며, 자신의 제품 설명 및 홍보 등 판촉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산모는 퇴원 후에도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에서 무상으로 제공받은 분유를 지속적으로 사용(고착효과)할 가능성이 높아 그 영향이 산모(신생아)의 분유 선택에도 영향을 미침 •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과징금 4.08억원 부과

쿠팡 및 씨피엘비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공정위 2024. 8. 5. 의결 제2024-284호)	
행위 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쿠팡과 씨피엘비는 직매입상품과 자체 기획 상품(PB상품)을 쿠팡의 온라인 쇼핑몰 검색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하거나 상위에 노출되도록 검색순위를 조정함으로써 상위에 노출된 직매입상품과 PB상품이 실제보다 또는 경쟁사업자

	<p>의 상품보다 우수한 상품이라고 소비자들이 오인하게 하여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한, 위 두 회사는 자기 또는 자기 계열회사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PB상품에 대한 구매후기를 작성하게 하여 인위적으로 구매후기 수를 늘리거나 평균 별점을 높여 검색순위 상위에 노출되기 유리하게 하거나, 자기 또는 자기 계열회사의 임직원이 작성한 구매후기를 소비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PB상품이 실제보다 또는 경쟁사업자의 상품보다 우수한 상품이라고 소비자들이 오인하게 함으로써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음
<p>공정위 판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위에 고정 노출된 쿠팡의 상품은 검색결과에서 다른 상품들과 구분되지 않아 소비자들은 이러한 상품이 인위적으로 상위에 고정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판매량 등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하여 상위에 배치된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음 • 임직원 바인을 실시한 PB상품은 판매량이 증가한 반면, 다른 상품의 판매량은 감소하였음. 또한 쿠팡은 조직적으로 임직원을 이용하여 PB상품 출시와 동시에 구매후기 작성 및 별점 부여를 관리한 반면, 입점업체는 임직원을 이용하여 구매후기를 작성할 수 없고 오로지 실제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한 후에만 구매후기를 작성할 수 있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였음 •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과징금 약 1,628억원 부과 및 2개 법인 검찰 고발

마. 거래강제

(1) 유형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 또는 자사 직원 등으로 하여금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자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끼워팔기, 사원판매, 기타의 거래강제 행위로 유형을 나눌 수 있음
 - 끼워팔기란, 거래상대방에게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함
 - 사원판매란, 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말함
 - 기타의 거래강제란, 끼워팔기 및 사원판매 행위 이외에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조건 등 불이익을 거래상대방에게 제시해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말함

(2) 위법성 판단기준

가) 끼워팔기

- 끼워팔기의 대상이 ‘서로 다른 별개의 상품 또는 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이들이 시장에서 통상 별도로 거래되는지 여부와 더불어 그 상업적 용도나 기능적 특성, 소비자 인식·태도, 경우에 따라서는 제품통합과 기술혁신의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끼워팔기 성립을 위해서는, (i) 서로 다른 상품을(별개 상품성), (ii) 함께 구입하도록 강제하고(강제성), (iii) 이러한 판매행위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해야 함

-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묶음 판매’ 또는 ‘결합 판매’와 구분되는데, 이들과 ‘끼워팔기’를 구분하는 핵심기준은 구매자의 선택권이 보장되는지 여부에 있음. 즉, 결합상품과 함께 분리상품도 판매가 되고 있고, 구매자가 분리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면 위법성이 없는 ‘묶음 판매’ 또는 ‘결합 판매’에 해당함

나) 사원판매

- 임직원에 대한 구입 또는 판매 강제행위가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 또는 계열회사와 거래하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 임직원에 대해 상품이나 용역의 구입 또는 판매를 강제하는지 여부 등을 위주로 판단함

다) 기타의 거래강제

- 거래강제 행위가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불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거래상대방에 대해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효과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3) 위반 행위 예시

가) 끼워팔기

- 인기 있는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면서 인기 없는 것을 함께 구입하도록 하거나, 신제품을 판매하면서 구제품이나 재고품을 함께 구입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
- 고가의 기계나 장비를 판매하면서 합리적 이유없이 인과관계가 떨어지는 유지·보수 서비스(유료)를 자기로부터 제공받도록 강제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

나) 사원판매

-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 또는 용역을 임직원에게 일정 수량씩 할당하면서 판매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대금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 비영업직 임직원에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미달성시 인사상의 불이익을 가하는 행위
- 비영업직 임직원에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최고경영자 또는 영업담당 이사에게 주기적으로 그 실적을 보고하는 등 판매를 독려하는 경우
- 자신의 계열회사에게 자신이 생산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일정량을 판매하도록 할당하고 당해 계열회사는 임직원에게 협력업체에 대해 판매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다) 기타의 거래강제

- 사업자가 자신의 계열회사의 협력업체에 대해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목표량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지 않을 경우 계열회사와의 거래물량 축소 등 불이익을 가하겠다고 하여 판매목표량 달성을 강제하는 행위
- 사업자가 자신의 협력업체에 대해 자신의 상품판매 실적이 부진할 경우 협력업체에서 탈락시킬 것임을 고지하여 사실상 상품판매를 강요하는 행위

(4) 제재 사례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의 거래강제행위에 대한 건 (공정위 2013. 1. 31. 의결 제2013-029호)	
행위 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객실이용요금에 조식요금을 합산하여 판매하면서도 고객에게는 조식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안내하였으며, 조식권을 사

	<p>용하지 않은 고객이 환불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식권을 제공하기 이전에 비해 객실이용요금을 높게 지급받는 부당한 거래강제 행위를 하였음</p>
공정위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들에게 제공된 조식쿠폰 비용은 객실요금에 반영되었고, 객실요금이 조식쿠폰이 제공되기 이전에 비해 최소 14.1% ~ 최대 29.6% 인상됨 •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과징금 4,800만원 부과

신일전자(주)의 거래강제행위에 대한 건 (공정위 2023. 5. 31. 의결 제2023-048호)	
행위 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일전자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자기가 판매하는 제품의 매출증대, 부진재고 해소 등 경영실적을 개선할 목적 하에 주기적으로 자기의 임직원들에게 카페트매트, 제습기, 연수기, 전동칫솔 등 자기가 지정한 제품들에 대한 사원판매를 실시하고, 판매 목표할당, 중간현황 비교·점검, 실적의 인사평가 반영 예고 및 실행, 상품의 강제할당 등 강제적인 방식을 활용하는 부당한 거래강제 행위를 하였음
공정위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매실적은 전 직원에게 매주 공지되었으며 사원판매 기간 도중에는 직원들에게 판매목표 미달 시 강제 판매와 불이익(패널티) 부과 예고 •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 공표명령, 과징금 1,000만원 부과

(주)케이티의 거래강제행위에 대한 건 (공정위 2004. 8. 31. 의결 제2004-136호)	
행위 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케이티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반하여 시설공사 협력업체 탈락여부를 결정하는 협력업체 사후운

	<p>영평가에 상품판매실적을 평가내용으로 반영한다는 조건을 협력 업체에게 제시하여 자사의 상품을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거래강제 행위를 하였음</p>
<p style="text-align: center;">공정위 판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업체가 상품판매실적이 부진하다면 위탁계약만 종료해야 하지, 시설공사 협력업체로부터 탈락시키는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없음 • 케이티가 그의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협력업체에 대하여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반하여 협력업체 평가에 시설공사와 관련 없는 상품판매실적을 반영하는 수단을 매개로 협력업체로 하여금 자신의 상품을 판매하도록 하는 행위는 거래수단의 공정성 측면에서 부당함 •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공표명령

바. 거래상지위 남용

(1) 유형

-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i) 구입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요구하는 구입강제 행위, (ii) 거래 상대방에게 금전·물품 등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이익 제공 강요 행위, (iii) 거래상대방에게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판매목표강제 행위, (iv) 거래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 조건을 당초 설정하였거나 기존 거래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불이익한 거래 조건 설정·변경 행위, (v) 임직원 선임·해임 시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 상대방의 생산품목·시설규모·생산량·거래 내용 등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함

(2) 위법성 판단기준

-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지 여부, 합리성이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거래상지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i)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존재하여야 하고, (ii) 일방의 타방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상당해야 함. 다만, 계속적 거래관계 및 거래의존도를 판단함에 있어 그 구체적인 수준이나 정도는 시장상황,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거래상지위는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당사자가 처한 시장상황,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대상 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함(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3두1646 판결)
-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를 한 목적, 거래상대방의 예측가능성, 당해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3) 위반 행위 예시

가) 구입강제

- 합리적 이유없이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대리점에게 재고품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
- 합리적 이유없이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판매업자에게 주문하지도 않은 상품을 임의로 공급하고 반품을 허용하지 않는 행위

나) 이익제공강요

- 합리적 이유없이 수요측면에서 지배력을 갖는 사업자가 자신이 구입하는 물량의 일정 비율만큼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합리적 이유없이 사업자가 상품(원재료 포함) 또는 용역 공급업체에 대해 거래와 무관한 기부금 또는 협찬금이나 기타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는 행위

다) 판매목표강제

-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 및 대리점에 대하여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미달성시 공급을 중단하는 등의 제재를 가하는 행위
- 자기가 공급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및 대리점에 대하여 회원이나 가입자의 수를 할당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대리점계약의 해지나 수수료지급의 중단 등의 제재를 가하는 행위
- 대리점이 판매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반품조건부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반품하지 못하게 하고 대리점이 제품을 인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여 추후 대금지급시 공제하는 행위

라) 불이익제공

- 계약서 내용에 관한 해석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갑’의 일방적인 해석에 따라야 한다는 조건을 설정하고 거래하는 경우
- 원가계산상의 착오로 인한 경우 ‘갑’이 해당 계약금액을 무조건 환수 또는 감액할 수 있다는 조건을 설정하고 거래하는 경우
- 계약 유효기간 중에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거래조건을 추가한 새로운 대리점계약을 일방적으로 체결한 행위
-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의 2%로 약정하였으나, 준공검사 시 일방적으로 20%로 상향조정하여 징구한 행위
- 반품조건부로 공급한 상품의 반품을 받아주지 아니하여 거래상대방이 사실상 반품을 포기한 경우

마) 경영간섭

- 합리적 이유없이 대리점의 거래처 또는 판매내역 등을 조사하거나 제품광고시 자기와 사전합의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금융기관이 채권회수에 아무런 곤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을 대출해 준 회사의 임원선임 및 기타 경영활동에 대하여 간섭하거나 특정 임원의 선임이나 해임을 대출조건으로 요구하는 행위
- 상가를 임대하거나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초 계약내용과 달리 취급 품목이나 가격, 요금 등에 관하여 지도를 하거나 자신의 허가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행위
-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 또는 협력업체의 업무용 차량 증가를 요구하는 행위

(4) 제재 사례

(주)놀유니버스 및 (주)야놀자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공정위 22025. 8. 8.자 의결 제2025-161호)	
행위 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박업체 플랫폼인 야놀자, 여기어때가 입점업체가 비용을 부담한 할인쿠폰이 광고기간 내에 소비자에 의해 사용되지 않을 경우 입점업체에게 남은 쿠폰가액을 환급하거나 이월하는 등의 보전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소멸시킴 • 야놀자는 내주변쿠폰 광고를 판매하면서, 광고의 계약기간(통상 1개월)이 종료되면 미사용 쿠폰을 소멸시킴 • 여기어때는 발급된 쿠폰의 유효기간을 사실상 단 하루로 설정하여, 당일 사용되지 않는 쿠폰은 다른 요일에 재발급하거나 환급하는 등의 조치 없이 즉시 소멸시킴

공정위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점업체는 판촉활동을 위해 쿠폰비용을 이미 지불했음에도, 미사용 쿠폰이 소멸됨에 따라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당하는 직접적인 금전적 손해를 입었음 • 이는 판촉활동의 위험을 입점업체에게 부담시키는 불공정한 행위이며, 정상적인 거래관행에도 부합하지 않음 • 시정명령, 과징금 총 15억 4천만 원 부과
--------	---

서울도시가스(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공정위 2014. 5. 8. 의결 제2014-105호)	
행위 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도시가스(주)는 자기의 거래상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자신의 강요로 고객센터가 대납한 가스요금 체납금을 고객센터에게 반환하여 주지 않고, 고객센터의 관할구역을 일방적으로 조정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고, 고객센터에게 특정 물품을 직원 선물로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것과 같이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물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하였음
공정위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수되지 않은 체납금을 고객센터가 책임진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에도 체납기간이 1년 이상인 회수되지 않은 체납금을 고객센터에게 부담토록 하고 이를 반환하여 주지 않았고, 북부5 고객센터와 별도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역을 자신의 계열회사인 서울도시개발(주)의 관할 구역으로 조정 •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200만원 부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공정위 2016. 3. 23. 의결 제2016-082호)

<p style="text-align: center;">행위 사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으로 공사를 발주하면서 (i) 입찰에 참여한 거래상대방이 제시한 감액제안 사항 중 채택하지 않은 일부 사항에 대하여 최초 입찰공고시 제시된 원안설계대로 시공하도록 하면서도, 공사금액은 거래상대방이 제시한 감액제안 금액을 적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공사대금을 감액하는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ii) 입찰에 참여한 거래상대방이 입찰공고시 제시된 설계서의 누락, 오류 및 설계서 간 상호 모순 등에 대해 기술제안을 할 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설계서의 누락, 오류 및 설계서 간 상호 모순에 따른 설계변경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것과 같이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음
<p style="text-align: center;">공정위 판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공사는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 제안을 했을 뿐인데 이대로 시공하지도 못하고 공사비만 깎인 셈이 되었고, 자기가 기술 제안하지 않은 부분(인천공항이 설계한 부분)에서의 오류나 누락까지 모두 책임져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됨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과징금 32억원 부과

(주)재능교육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공정위 2013. 6. 5. 의결 제2013-087호)	
<p style="text-align: center;">행위 사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재능교육은 학습지교사와 위탁사업자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학습지교사의 급여에 해당하는 수수료의 세부조건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거래 조건을 설정하는 행위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정

	<p>하면 본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는 거래 조건을 설정하는 것과 같이 학습지교사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음</p>
<p>공정위 판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사업자 계약서에서 수수료 규정은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함에도 피심인은 계약서에 수수료를 지급한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수수료 지급단가, 지급률 등 세부적인 사항은 피심인이 자신의 정책집을 통해 임의로 운영하고 있어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인 학습지교사의 동의 없이 이를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바, 이는 불리한 거래조건 설정행위에 해당함 • 계약의 중요 내용 등은 당사자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통상적인 거래관행에도 배치된다는 점, 계약의 핵심 부분에 해당하는 수수료 지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성 인정됨 •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p align="center">교촌에프앤비(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공정위 2024. 10. 10. 의결 제2024-321호)</p>	
<p>행위 사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촌에프앤비는 코로나 영향 등으로 전용유 가격이 급등하자,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기간 중에 계약상 설정된 거래상대방(치킨가맹사업의 필수품목인 전용유를 가맹점에 공급하는 협력사들)의 유통마진을 1,350원에서 0원으로 일방적으로 인하하는 것과 같이 거래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음 • 이에 따라 협력사들은 기존 거래조건으로 가맹점에 전용유를 공급하였다면 얻을 수 있었던 총

	7억 원이 넘는 유통마진의 손실로 인한 불이익을 입게 되었음
공정위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맹점의 전용유 구매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으나, 해당기간 동안 협력사들의 유통마진은 급감한 반면 교촌에프앤비의 유통마진은 오히려 소폭 증가하였다는 점에서 협력사들에게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거래조건이 변경에 해당함 •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과징금 2.83억원 부과

사. 구속조건부 거래

(1) 유형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 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배타조건부거래와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 행위가 이에 해당함
 - 배타조건부거래란,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 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말함
 -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 행위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하는 경우에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말함

(2) 위법성 판단기준

-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여부 판단 시, 배타조건부거래의 경우 물품구입처 또는 유통경로 차단, 경쟁수단의 제한을 통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잠재적 경쟁사업자 포함)를 시장에서 배제하거나 배제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하고,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의 경우 브랜드 내 경쟁제한효과와 브랜드간 경쟁촉진효과를 비교형량하여 판단함

(3) 위반 행위 예시

가) 배타조건부거래

- 경쟁사업자가 유통망을 확보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시장점유율이 상당한 사업자가 자신의 대리점에 대해 경쟁사업자의 제품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관련에서의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경쟁사업자가 대체거래선을 찾기 곤란한 상태에서, 대량구매 등 수요측면에서 영향력을 가진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에게는 공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함으로써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
- 시장점유율이 상당한 사업자가 다수의 거래상대방과 업무제휴를 하면서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중복제휴를 하지 않는 조건을 부과함으로써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경쟁사업자가 타 업무제휴 상대방을 찾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

- 독과점적 시장구조 하에서 시장점유율이 상당한 제조업자가 대리점마다 영업구역을 지정 또는 할당하고, 그 구역 밖에서의 판촉 내지 판매활동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 독과점적 시장구조하에서 시장점유율이 상당한 제조업자가 대리점을 가정용과 업소용으로 엄격히 구분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 대리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4) 제재 사례

**바이크뱅크(주)의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및 (주)로지올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게한 행위에 대한 건**
 (공정위 2025. 4. 23. 의결 제20250075, 076호)

<p>행위 사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크뱅크(지역 배달대행업체에 이륜차량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852개 계열회사 로지올 소속 지점에 이륜차량을 공급하면서 ①로지올의 경쟁사와 거래(프로그램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②이를 위반할시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 계약기간 렌탈대금의 20%에 해당하는 이탈위약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계약조건으로 설정 • 로지올은 바이크뱅크에게 바이크뱅크의 의무 사항으로 ‘로지올로부터 이탈한 지점의 렌트차량에 기한이익상실 및 위약금 부과’ 내용이 포함된 업무제휴(거래기본계약)를 체결하도록 요청고, 실제로 바이크뱅크에게 공문, 내부메일 등을 발송해 이탈 지점에 대한 계약해지 및 위약금 부과를 요청
<p>공정위 판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크뱅크가 지점과 이륜차량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열회사 로지올의 경쟁사 프로그램 사용을 금지하는 조건을 설정하고, 이를 위반한 지점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이탈위약금을 부과한 행위는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는 ‘구속조건부거래 행위’에 해당 • 로지올이 계열회사 바이크뱅크로 하여금 자신의 경쟁사로 이탈한 지점에 대한 이륜차량 공급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부과하게 한 행위는 ‘구속조건부거래를 하게 한 행위’에 해당 • 시정명령

(주)한국존슨앤드존슨의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대한 건
(공정위 2005. 9. 26. 의결 제2005-180호)

<p>행위 사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한국존슨앤드존슨은 대리점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영업할 수 있는 지역으로 특정 지역을 지정해주는 등 그 대리점의 거래지역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였음
--------------	--

공정위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리점 사업자인 김영옥의 거래지역을 마산지역으로 지정하여 주고, 김영옥이 이를 준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리점 계약을 해지한 행위는 결국 거래지역 준수를 강요한 것에 해당함 •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	--

(주)석수와푸리스의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대한 건 (공정위 2008. 7. 28. 의결 제2008-223호)	
행위 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수와푸리스는 자신의 먹는샘물 제품을 취급하는 대리점들에게 경쟁관계에 있는 타사 제품 취급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위약금 부과 및 계약해지 등 제재조치를 취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였음
공정위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수와푸리스는 국내 먹는샘물 시장에서 PC(polycarbonate, 말통) 제품만으로는 시장점유율 1위, PET병 제품까지 포함하면 3위를 차지하는 사업자로, 대리점의 자유로운 거래처 선택의 자유를 구속하고 대리점 유통이 불가피한 PC 제품 시장에 경쟁사업자가 진입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제한함 •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대림오토바이(주)의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대한 건 (공정위 2020. 9. 14. 의결 제2020-054호)	
행위 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림오토바이(주)는 자신과 거래를 하는 대리점들에 대하여 경쟁사업자 대리점을 직·간접적으로 개설·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자신이 공급하는 품목에 대한 경쟁품목의 취급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하

	<p>는 것과 같이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피심인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하였음</p>
<p style="text-align: center;">공정위 판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심인과 거래를 하는 대리점들에게 피심인 이외에 거래처 선택을 제한하여 대리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큼 • 피심인은 국내 이륜차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최상위권을 차지하는 사업자로서 대리점을 통한 유통경로를 상당부분 점유하였으므로 국내 이륜차 시장의 주요 유통 경로인 대리점을 통한 유통수단이 제한될 우려가 큼 •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통지명령

아. 사업활동 방해

(1) 유형

-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채용하거나 거래처의 이전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기술의 부당이용,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거래처 이전방해 및 기타의 사업활동방해 행위가 이에 해당함
 - 기술의 부당이용이란, 다른 사업자의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상당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함
 - 인력의 부당유인·채용이란,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채용해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상당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함

- 거래처 이전방해행위란, 다른 사업자의 거래처 이전을 부당하게 방해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함

(2) 위법성 판단기준

-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사업활동방해의 수단, 당해 수단을 사용한 목적 및 의도, 당해 업계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관련 법령 등을 고려해야 하며, ‘심히’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단순히 매출액이 감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부도발생 우려, 매출액의 상당한 감소, 거래상대방의 감소 등으로 인해 현재 또는 미래의 사업활동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함

(3) 위반 행위 예시

가) 기술의 부당이용

- 다른 사업자의 기술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생산이나 판매활동에 심각한 곤란을 야기시키는 행위

나)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 다른 사업자의 핵심인력 상당수를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제의를 하여 스카우트함으로써 당해 사업자의 사업활동이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
-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 목적으로 핵심인력을 자기의 사업활동에는 필요하지도 않는 핵심인력을 대거 스카우트하여 당해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

다) 거래처 이전방해

- 거래처이전 의사를 밝힌 사업자에 대하여 기존에 구입한 물량을 일방적으로 반품처리하거나 담보해제를 해주지 않는 행위

라) 기타의 사업활동방해

- 사업영위에 필요한 특정시설을 타 사업자가 이용할 수 없도록 의도적으로 방해함으로써 당해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
- 경쟁사업자의 대리점 또는 소비자에게 경쟁사업자의 도산이 우려된다던지 정부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등의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경쟁사업자에게 대리점계약의 해지 및 판매량감소 등을 야기하는 행위

(4) 제재 사례

(주)디에스이엔 및 (주)미스터피자의 사업활동방해행위에 대한 건 (공정위 2023. 8. 30. 의결 제2023-126호)	
행위 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스터피자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주)디에스이엔이 경쟁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원·부자재 공급을 중단시키거나, 경쟁사업자를 허위로 형사고소하거나, 경쟁사업자의 매장 근처에 보복출점하는 것과 동일·유사한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음
공정위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스터피자는 피자 가맹시장에서 매출액 2위 사업자였던 반면, 피자연합은 신생 사업자로 매출액뿐 아니라 임직원 수, 매장 수 등의 측면에서 열위에 있었음에도 미스터피자는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 또는 의도로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활용함 • 이로 인해 피자연합은 조리법(레시피) 개발, 식자재 거래선 확보, 매장 운영을 방해받았을 뿐 아니라 가맹점주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사업활동이 심히 곤란해졌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과징금 4억원 부과
--	--

하이트진로음료(주)의 사업활동방해행위에 대한 건 (공정위 2013. 7. 11. 의결 제2013-142호)	
행위 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이트진로음료는 먹는샘물 리카보네이트(PC) 제품 시장에서 경쟁사업자와 거래 중인 대리점에 대하여 법률비용 지원, 제품의 공급단가 할인, 제품의 무상제공, 무이자 현금대여 등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당해 대리점으로 하여금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자신과 거래하도록 하는 것과 같이 부당하게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음
공정위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이트진로음료의 사업활동 방해행위로 마메든 샘물은 매출의 약 80%가 급감하고 1개의 대리점만 남게 되어 사업을 거의 영위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됨 •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주)세라젬의료기의 사업활동방해행위에 대한 건 (공정위 2001. 3. 14. 의결 제2001-040호)	
행위 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라젬의료기는 경쟁사업자의 대리점 및 일반 소비자들에 대하여 경쟁사업자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자신을 무너뜨리고 시장을 독점하려고 한다는 등 객관적인 입증이 곤란한 내용을 유포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음
공정위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심인이 행위사실 인정하고 심사관의 시정조치 의견 수락하여, 공정거래법상 사업활동방해행위로 판단 •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3. 위반 시 제재

- 시정조치: 공정위는 해당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음(법 제49조)
- 과징금: 공정위는 불공정거래행위자의 평균매출액의 4% 이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법 제50조)
- 형사고발: 공정위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사업자를 형사고발할 수 있고, 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법 제125조 제4호, 제129조)

4. 자주 묻는 질의응답(FAQ)

Q1. 공정거래법상 거래거절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p>공정거래법상 거래거절이란 어떤 사업자에 대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p> <p>경쟁자에 의한 염매를 방지하고 가격 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사업자가 공동으로 행하는 경우 등과 같은 ‘공동의 거래거절’과 ‘기타의 거래거절’로 구분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의 거래거절: 공동으로 행해졌기 때문에 특정의 사업자가 거래의 기회를 빼앗겨 시장으로부터 배제될 우려가 많고 거래 거절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도 상호 거래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위법이 됨 • 기타의 거래거절: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거래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자가 특정 사업자에 대해 거래를 거절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시장 유력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거래 거절을 함으로써 거래 거절당한 상대방이 다른 거래처를 찾기가 쉽지 않고 시장 배제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성이 인정됨

Q2. 차별적 취급이란 무엇이며, 대량구입과 소량구입에 따라 가격을 달리 받는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나요?

차별적 취급이란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로서 가격차별, 거래조건차별,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취급, 집단적차별 취급 등 4개의 유형이 있습니다.

질 의와 같이, 대량구입과 소량구입에 따라 공급하는 가격의 차이가 있더라도 대량구매에 따른 공급자의 비용절감효과 등을 반영한 적절한 수준의 가격차별이라면 차별적 취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Q3. 카드조회단말기의 무상임대행위가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요?

카드조회단말기 임대사업자(이하 “VAN업체”) 사이에 지원조건과 지원액에서 차이가 있을 뿐 지원행위 자체는 거래관행상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카드가맹점은 카드 조회와 관련하여 VAN업체에 조회단말기의 무상지원, 기타 추가적인 자금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VAN업체들은 업계생존차원에서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인 점, 신용카드사용의 확산을 위해 정부(국세청)에서 VAN업체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카드단말기의 “무상대여 또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을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카드조회단말기의 무상임대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한국정보통신(주) 및 케이에스넷의 카드조회단말기 무상임대행위에 대하여 무혐의 처리한 바 있습니다.

Q4. 회사가 일방적으로 대리점 판매품목을 정하고 상품을 강매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구입강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요?

공정거래법에서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거래상지위남용행위(구입강제)로 규정하고 있는바, 제조회사가 대리점과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대리점 판매품목을 정하고 판매목표가 설정된 상품을 강매하면서, 대리점이 이에 불응할 경우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거래상지위남용행위(구입강제)에 해당될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V. 재판매가격유지행위

1. 주요 개념 및 판단기준

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주요 개념

-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할 때 거래 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 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하도록 그 밖의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
-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i) 거래 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 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지정하였다는 사실과 (ii)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가 있어야 함(강제성)
- 직접적인 강제 행위가 없더라도 재판매가격 유지를 위해 (i) 희망 가격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계약 해지 조항을 규정한 경우, (ii) 제시된 가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항을 규정한 경우 등은 강제성이 있는 것으로 봄

나. 위법성 판단기준

- 유통단계에서의 가격 경쟁을 제한하고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판단함
- 다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인하여 소비자 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보다 큰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함
 - 정당한 이유 유무를 판단할 때는 관련 시장에서 브랜드 간 경쟁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여부, 그 행위로 인하여 유통업자들의 서비스 경쟁이 촉진되는지 여부, 소비자의 상품 선택이 다양화되는지 여부, 신규 사업자로 하여금 유통망을 원활히 확보함으로써 관련 상품시장에 쉽게 진

입할 수 있도록 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다만, 이때 정당한 이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함

2. 위반 행위 예시

- 시장에서 유력한 지위를 가진 제조업자가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판매가격을 지정하여 판매하도록 하는 경우
- 유통업자가 경쟁 유통업자의 가격할인을 억제하기 위해 제조업자에게 유통가격을 지정하도록 요청하여 최저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실시된 경우
- 시장에서 유력한 지위를 가진 제조업체가 유통업체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최고가격을 설정하였고 그 결과 유통업체들이 동조적으로 가격을 인상하여 설정된 최고가격 수준으로 수렴한 경우

3. 제재 사례

푸르밀(주)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공정위 2025. 11. 24.자 보도자료)	
행위 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푸르밀은 컵커피 2종의 온라인 최저 판매가를 설정하고, 자신과 거래관계에 있는 온라인 대리점에 이를 준수하도록함 • 푸르밀은 온라인 대리점의 판매가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감시체계를갖추고, 미준수 시 불이익(공급가 인상, 공급 중단 등)이 부과될 수 있음을 통보함
공정위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대리점들은 푸르밀과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로서 관련시장에서의 독자적인 영업 전략과 능력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제품의 판매가격을 결정하여 판매할 수 있어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푸르밀의 행위는 온라인 대리점의 자율적인 가격 결정 권한을 통제하여 유통단계에서의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 시정명령
--	---

에이치디씨영창(주)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공정위 2024. 3. 15. 의결 제2024-074호)	
행위 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창은 디지털피아노, 신디사이저 등 자신의 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에게 자사물 및 인터넷 오픈마켓 등 온라인에서 자신이 지정한 판매가격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대리점에게 출고정지 등의 불이익을 주면서 재판매가격을 유지하는 행위를 하였음
공정위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창은 국내 디지털피아노 시장의 1위 사업자로 전체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고, 실제로 공정위 조사 이후 대리점 간 경쟁이 활성화되어 온라인상의 영창 디지털피아노 판매가격이 저렴해지고 다양해진 사실이 확인됨 •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과징금 1.66억원 부과

(주)아이센스 및 (주)대한의료기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공정위 2025. 4. 22. 의결 제2025-072호)	
행위 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센스는 자사 자가혈당측정기를 온라인 상에서 판매하는 업체들에게 최저 재판매가격(권장 판매가격)을 정하고, 그보다 저가로 판매할 경우 온라인판매가 수정 요구, 공급가 인상, 공급수량 및 신규 영업활동 제한 등 조치를 함. • 아이센스는 온라인대리점인 대한의료기를 온라인총판으로 선정하고 온라인판매가격을 유지, 보고토록 지시함. 대한의료기는 아이센스와 지

	<p>속적으로 소통하며 온라인판매가격을 점검하고, 이를 자주 위반하는 업체를 ‘블랙리스트’로 관리함.</p>
<p style="text-align: center;">공정위 판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의료기는 지속적으로 온라인 판매 기준가를 준수하지 않는 업체들에 대한 요주의 명단(블랙리스트)을 작성하였고, 아이센스는 자신의 대리점 및 대리점과 거래하는 업체들이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일부 업체들에게 제품을 공급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공급한 대리점을 추적하여 공급물량을 제한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함 •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과징금 납부명령(2억 5,600만원)

4. 위반 시 제재

- 시정조치: 공정위는 해당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음(법 제49조)
- 과징금: 공정위는 불공정거래행위자의 평균매출액의 4% 이하 범위 내에서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10억 원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법 제50조)

VI. 업무상 유의사항(Do & Don'ts)

1. 부당지원행위

[D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거래를 개시할 때는 거래의 목적 및 필요성, 회사에 이익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야 함 • 합리적인 수의계약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가급적 경쟁입찰 방식으로 거래상대방을 선정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쟁입찰을 진행하는 경우, 입찰 관련 정보 제공, 입찰조건 및 절차 진행에서 계열회사와 다른 사업자 간 차별없이 동등하게 대우하여야 함 •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열회사를 거래상대방으로 선정하여 거래하는 경우, 거래조건은 비계열회사와 거래한다는 가정 하에 결정하여야 하고, 거래조건 결정시 객관적인 시장가격을 직접 확인하여야 함 •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열회사를 거래상대방으로 선정하여 거래하는 경우, 시장가격 확인이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면 그와 같은 사정을 내부 검토문서에 기재하고, 제안가격의 산정근거를 요구하거나 단가 인하를 요구하는 등 최대한 회사에 유리한 거래조건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함 • 계열회사와의 내부거래는 계약기간을 자동 갱신해서는 안 되고, 갱신의 합리성에 대한 검토를 하여야 함 • 내부거래를 할 때는 주요 의사결정의 근거자료 및 협상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를 보관하여야 함
[Do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상대방인 계열회사가 제안한 거래 내용 및 그 근거자료를 그대로 사실로 판단하는 등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서는 안 됨(독자적인 검증 절차 필요) • 계열회사가 아니었다면 제공하지 않았거나 제공받기 어려웠을 경제적 이익이나 거래상대방·거래조건 결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편의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 안 됨 • 계열회사가 아니었다면 하지 않았을 거래를 계열회사와 해서는 안 됨 • 거래구조상 계열회사의 실질적 역할이 불분명한 거래를 해서는 안 됨 • 검토 대상인 내부거래를 비계열회사와 하면 회사에 더 유리할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그와 같은 내부거래는 해서는 안 됨 • 객관적인 시장가격이 존재하거나 회사가 비계열회사와 동종·유사한 거래를 하고 있는 경우, 계열회사와의 새로운 내부거래에 적용되는 거래조건이 그와 달라져서는 안 됨 • 계열회사에 무상으로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 안 됨

2. 부당한 공동행위

가. 경쟁사 접촉 시 임직원 행동 가이드라인

- 경쟁사 임직원과의 공식·비공식 모임은 참석 사실만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로 추정될 수 있는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그러한 모임을 제안하거나 참석하지 않도록 함
- “업계 담당자 간 모임” 등 가격이나 거래조건이 논의될 수 있는 경쟁사 임직원과의 모임은 반드시 피해야 함
- 경쟁사가 참석하는 어떠한 형태의 모임에 참석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회의 안건을 확인하여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참석하도록 하며,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애매할 경우에는 법무부서와 협의하여야 함
- 부당한 공동행위는 합의 사항을 실제로 행하지 않았어도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처벌되므로, 경쟁사 임직원을 만난 자리에서 가격, 판매량 등 거래조건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① 명확히 이의를 제기하고, ②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논의가 중단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동행위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드러낸 뒤 즉시 자리를 빠져나와서 거부 의사를 명확히 알려야 함
- 이의를 제기한 사실의 증거를 남기기 위하여, 공식적인 모임의 경우 이의를 제기하거나 자리를 떠난 사실을 회의록에 기록될 수 있도록 요청하여야 하고, 모임 이탈 후 모임 참석자들에게 우편, 이메일, SNS 메시지 등으로 공동행위에 함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다시 표시한 후 해당 자료를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하며, 위와 같은 사실을 즉시 법무부서에 보고하여야 함
- 업계 모임에서 실제로 협의가 없었던 사항이나, 일부 참석자가 단순히 의견을 말하거나 밝힌 정도에 불과한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 정보보고, 활동보고 등의 형식으로 마치 협의가 있었던 것처럼 작성할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사실에 근거하여 기록하고, 허위보고를 하지 않아야 함

나. 경쟁사 정보교환 가이드라인

- 가격, 판매량 등 거래조건이나 이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주요 정보와 자료를 경쟁사에게 요구, 제공, 또는 교환하지 않아야 함

- 경쟁사로부터 가격, 거래조건 등의 정보에 대한 문의 또는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정보의 제공이 불가능하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그러한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법무부서에 보고해야 하며, 해당 사실을 회사 내부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함
- 경쟁사 관련 정보를 공시자료, 언론기사 등 공개된 자료 등을 통하여 적법하게 입수한 경우에는 그 입수경위와 출처를 명확히 기록해 두어야 함. 특히, 문서 작성시 경쟁사 정보를 인용하는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출처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 경쟁사 관련 정보를 적법한 경로를 통하여 파악한 경우에도 시장상황, 고객 수요, 비용 등 여러 경쟁적 요소와 상황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해야 함. 이 경우, 회사가 독자적으로 여러 요소들을 고려한 사업적인 판단 하에 상품 관련 조건을 결정하였다는 의사결정에 대한 판단 근거가 내부 문서에 명확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함. 특히, 경쟁사가 유사한 시기에, 유사한 내용으로 상품내용을 결정 또는 변경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음
- 경쟁사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신분을 속이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거래상대방 또는 경쟁사의 전직 임직원에게 경쟁사의 정보를 요구하여서는 안 됨. 외부 조사기관이나 컨설팅업체 등을 통해 비공개 정보의 수집을 의뢰하여서도 안 됨
- 임직원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 경쟁사와의 정보교환과 관련하여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무부서와 사전에 상의하고, 교환된 정보의 내용을 사후에 보고하도록 함

3. 불공정거래행위

가. 거래거절

[Do]

- 원칙적으로 경쟁사와 함께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거절/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령이나 내용을 제한하는 행위는 반드시 법

무 조직과 논의하고, 의사결정 과정과 의사결정의 근거를 문서화하는 것이 필요함

- 상대방과의 거래를 거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 상대방이 대체거래선을 찾거나 기타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가급적 장기의 대비기간을 주고, 상대방과 최대한 성실히 진행하며, 거래를 할 수 없는 이유를 명확히 전달해야 함

[Don't]

- 사유/근거에 관한 충분한 내부 논의 및 협의 없이 거래를 거절하거나 중단해서는 안 됨
- 협의 과정에서 일방적/단정적인 통보 또는 협상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태도나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됨
- 다음과 같은 사유로 거래를 거절하거나 중단해서는 안 됨
 - 자기와 거래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의 물품·용역을 구입할 것을 의무화하고 그에 응하지 않음을 이유로 거래를 거절하는 경우
 - 자기 또는 계열회사 등 자기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업자와 독점적으로 거래하는 사업자와는 거래하면서 경쟁사업자와도 거래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합리적 이유없이 거래를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나. 차별적 취급

[Do]

- 거래상대방에 따라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다르게 설정하는 경우 그 합리적인 사유를 내부적으로 기록하고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어야 함
- 일반적인 기준에서 벗어나는 등 통상적인 경우와는 차이가 있는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결정하고자 할 때, 그 결정에 이르게 된 의사결정 근거, 의사결정 과정과 상대방과 협의 내용을 보존해 두어야 함

[Don't]

- 계열회사와 비계열회사의 서비스 간에 품질이나 거래조건에 있어서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계열회사의 서비스를 비계열회사의 서비스보다 고가로 구매해서는 안 됨

다. 경쟁사업자 배제

[D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 등을 기존 거래조건 대비 상당히 낮은 가격 등으로 공급하거나 높은 대가로 구입하는 경우 별도로 현저한 효율성 증대효과가 발생하는지,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데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함
[Do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목적으로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공급해서는 안 됨

라. 부당한 고객유인

[D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해 더 큰 이익을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그 이익의 근거를 마련해 두어야 하고, 그 결정에 이르게 된 내부 의사결정 근거/과정을 보존해 두어야 함
[Do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고객사에게 근거없이 이익, 혜택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됨 •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이나 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경쟁사업자 관련 허위 사실을 언급하거나 근거 없이 비방하는 등 고객을 오인시켜서는 안 됨

마. 거래강제

[D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로 다른 별개의 상품 또는 용역을 함께 구입하도록 판매상품을 설정할 때에는 법무조직의 검토를 먼저 받는 것이 안전함
[Do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해서는 안 됨 •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됨

바. 거래상지위남용

[Do]

-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는 경우, 불이익이 주어지는 거래 상대방의 범위 및 규모를 규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그 근거를 마련해야 함
-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경우, 가능한 장기의 대비기간을 주고 상대방과 최대한 성실히 협의를 진행해야 함

[Don't]

-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일방적으로 요구해서는 안 됨
- 합리적 이유 없이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대리점 등에게 주문하지도 않은 상품을 임의로 공급하고 반품을 허용하지 않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상대방의 협의 요청을 무시하거나 일방적으로 거절해서는 안 됨

사. 배타조건부거래

[Do]

- 대리점에 대해 영업구역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이를 강요하여 지키지 않는 대리점에 불이익을 가해서는 안 되고,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담당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준수 여부를 각 대리점 자율에 맡기는 편이 안전함

[Don't]

- 경쟁사업자가 대체거래선을 찾기 곤란한 상태에서, 대량구매 등 수요측면에서 영향력을 가진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에게는 공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해서는 안 됨
- 거래상대방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상품 또는 원재료에 대하여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거래해서는 안 됨

아. 사업활동방해

[Do]

- 경쟁사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경쟁사의 영업비밀이 유입되어 회사의 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준수해야 함
- 경쟁사업자와의 정당한 경쟁의 수준을 벗어나는 과도한 경쟁행위를 할 때에는 부당한 행위로 비추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리 법무 조직의 검토를 받는 것이 필요함

[Don't]

- 거래처 이전 의사를 밝힌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처 이전을 방해하거나 거래 지속을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됨

4. 재판매가격유지행위

[Do]

- 거래상대방의 최저가격을 지정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최고가격을 지정하는 행위에도 적용되는 규정임을 주의해야 함

[Don't]

- 지정한 가격 범위를 지키지 않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 또는 공급 중단 등 직접적인 제재를 가해서는 안 됨
- 지정한 가격 범위를 지키지 않는 상대방에게 기존에 지급하고 있던 지원금을 중단하는 소극적 불이익 제공이나 가격 미준수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됨

PART 3 하도급법 해설

I. 하도급법 개관

1. 적용 대상 거래

- 하도급법은 기업(원사업자)이 자신의 생산활동 일부를 다른 기업에 위탁하고, 이를 위탁받은 기업(수급사업자)이 위탁받은 부분은 제조·생산하여 위탁한 기업에 납품하는 거래(하도급거래)를 적용대상으로 함

2. 주요 개념

가. 원사업자

-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자 중 수급업자보다 연간 매출액 등이 더 많고, 하도급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연간 매출액 이하가 아닌 기업

나. 수급사업자

- 원사업자로부터 제조 등을 위탁받은 중소기업자 등을 의미하며,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상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의미
- 중견기업의 경우 하도급대금의 지급·보복행위 금지 규정 등 하도급법의 일부 규정의 경우에만 수급사업자에 해당

다. 하도급거래

하도급거래의 종류	
제조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물품(그 반제품, 부품, 부속품, 원재료 및 이러한 제조에 사용되는 금형을 포함)의 규격, 품질, 성능, 형상, 디자인, 브랜드 등을 지정하여 제조(가공 포함)를 의뢰하는 경우 • 단, 다음의 경우에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가 소비용의 단순한 일반 사무 용품의 구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의 생산을 위한 기계·설비 등을 단순히 제조위탁하는 경우 - 위탁받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제조위탁하지 않고 단순 구매하여 납품하는 경우
수리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가 주문을 받아 물품을 수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거나 자기가 사용하는 물품을 수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 그 수리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건설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업자가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경미한 공사 포함) -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경미한 공사 포함)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주택법」 제4조에 따른 등록사업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5조에 따른 등록업자, 「하수도법」 제51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등록업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등록업자,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에 따른 시공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5조에 따른 시공자)
용역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 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용역업자)가 그 업에 따른 용역 수행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함

II. 행위 유형별 유의사항

1. 계약 체결 관련 유의사항

가. 계약서 작성 및 교부(하도급법 제3조 제1항, 제2항)

(1) 원칙

-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이전’에 법정기재사항이 포함된 계약서에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완료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함(기존 계약조건을 변경할 경우에도 동일)

법정기재사항
① 위탁일과 위탁목적물의 내용 ② 목적물 납품·인도시기 및 장소 ③ 목적물 검사방법 및 시기 ④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등 포함)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⑤ 원사업자가 원재료 등을 제공하는 경우 그 원재료 등의 품명·수량·제공 일·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⑥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요건·방법·절차 ⑦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목적물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연동 산식, 기준·비교 시점

(2) 자주 묻는 질의응답(FAQ)

Q1. 만약 긴급한 사정이 있어 계약체결 당시에 법정기재사항을 확정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p>모든 서면은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 작업 개시 ‘전에’ 작성·교부되어야 합니다.</p> <p>다만, 예외적으로 재해·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해야 하는 경우 등 위탁 내용을 확정하기 전에 작업을 개시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우선 작업을 개시하고, 그 직후 신속하게 거래조건을 확정하여 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합니다.</p>

단, 실무상 공정위가 이러한 예외사유를 인정한 사례가 매우 드물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긴급한 사정’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2. 수급사업자와 다수의 계약을 체결할 때, 전체 거래금액 대비 그 비중이 매우 미미한 사소한 거래의 경우에도 모두 하도급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거래금액의 대소를 불문하고, 모든 하도급거래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위탁 전 서면으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사자가 서명·날인한 뒤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

Q3.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동일한 내용으로 종전 계약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계약서를 교부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하도급계약서상 최초 기간이 종료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종전 계약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연장된 계약기간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사전에 교부하여야 합니다.

(3) 제재 사례

SK에코플랜트의 하도급계약 서면 미발급 행위 (공정위 의결 제2023-086호)	
행위 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SK에코플랜트는 2019. 9. ~ 2020. 4.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 A사에게 선박 전기장치 및 기계장치 작업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 대금 등 주요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해당 작업 시작 이후 최소 1일 ~ 최대 102일이 지난 후에 발급하거나 해당 작업 종료일까지 발급하지 않음
공정위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도급계약의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

	고 있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므로, 서면 미발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

삼성중공업(주)의 하도급계약 서면 미발급 행위 (공정위 2023. 6. 1. 의결 제2023-086호)	
행위 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성중공업은 2019. 9. ~ 2020. 4.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 A사에게 선박 전기장치 및 기계장치 작업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 대금 등 주요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해당 작업 시작 이후 최소 1일 ~ 최대 102일이 지난 후에 발급하거나 해당 작업 종료일까지 발급하지 않음
공정위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도급계약의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므로, 서면 미발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과징금 3,600만원 부과

나. 서면의 보존(하도급법 제3조 제12항)

(1) 원칙

- 하도급 거래가 완료된 경우, 원사업자는 급부 내용, 하도급대금 등 거래에 관한 기록을 서류로 작성하여 3년간 의무적으로 보존하여야 함(단, 기술자료 관련 거래 자료는 7년)
- 보존해야 할 서면은 당해 서면이 발급, 품의 기타 용도에 따라 사용된 시점의 원본 상태로 보존되어야 함(전자 문서도 동일)

순번	보존 대상 서면	보존기간
1	하도급계약서(추가·변경계약서 포함)	3년
2	목적물 수령증명서	3년

3	목적물 검사결과 통지서(검사결과 및 검사종료일)	3년
4	하도급대금의 지급일, 지급금액 및 지급수단이 기재된 서류(어음결제 시 어음교부일, 금액, 만기일 포함)	3년
5	선급금, 어음할인료,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관세 등 환급액 및 그 지연이자 지급 시 그 지급일과 지급 금액이 기재된 서류	3년
6	수급사업자에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경우 그 원재료 등의 내용, 공제 일, 공제금액 및 공제사유가 기재된 서류	3년
7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경우 관련 서면	3년
8	기술자료제공요구서	<u>7년</u>
9	기술자료 제공 관련 비밀유지계약서	<u>7년</u>
10	설계변경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 금액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3년
11	목적물의 공급원가 변동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 신청내용 및 협의내용,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를 기재한 서류	3년
12	하도급대금 산정기준 및 내역과 관련된 서류, 입찰명세서, 낙찰자결정 품의서, 견적서, 현장설명서, 설계설명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	3년

(2) 제재 사례

(주)동희의 하도급계약서 미보존 행위 (공정위 2015. 6. 1. 의결(약) 제2015-087호)	
행위 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을 하면서 기본계약서를 작성·발급하였으나, 거래를 종료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계약서를 보존하지 않음(담당자가 개별적으로 보관하던 증 유실)
공정위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 기본계약서 등과 같이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는 하도급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

	<p>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별 담당자의 귀책사유로 이를 보존하지 않은 것은 서류 미보존 행위로서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	---

다. 거래조건 협의 및 결정(하도급법 제3조의4)

(1) 원칙

- 부당특약이란 하도급계약조건 중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의미
- “계약조건”은 “하도급계약서”라고 명기된 서면에 기재된 문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서면의 명칭, 형태 불문)
- 부당특약은 실행 여부와 무관하게 그러한 약정의 체결만으로도 처벌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함

하도급법령에 의해 부당특약으로 간주되는 약정
<p>하도급법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사업자가 (하도급법) 제3조제1항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2.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3.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4.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의2(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 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에서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가.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인·허가, 환경관리 또는 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나. 원사업자(발주자를 포함한다)가 설계나 작업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다. 원사업자의 지시(요구, 요청 등 명칭과 관계없이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에 대한 원사업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

라. 관련 법령,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

2. 천재지변, 매장문화재의 발견, 해킹·컴퓨터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인한 작업기간 연장 등 위탁시점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

3. 해당 하도급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간접비(하도급대금 중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인정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 다만,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에서 정한 간접비의 인정범위와 동일하게 정한 약정은 제외한다.

4.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법 제16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약정으로서 법에 따라 인정되거나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권리·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박탈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약정

부당특약 고시

II. 부당특약의 유형

1. 법에 규정된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 가. 수급사업자가 법 제3조 제5항에 따라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 나. 수급사업자가 법 제13조의2 제9항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아니 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 다. 수급사업자가 법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제한하는 약정
- 라. 기성금, 준공금에 대한 지급유예 약정등수급사업자가 법 제6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 등을 받을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2.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등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 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를 준비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자료, 물건 등의 소유, 사용 등의 권리를 원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약정. 다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취득 과정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의 상당한 부분을 부담하거나,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해 동일 또는 근접한 시기에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하도급거래를 준비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상대방의 정보, 자료 등에 대한 비밀준수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만 부담시키는 약정. 다만, 수급사업자만 정보, 자료 등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수급사업자의 의무를 법이 정한 기준보다 높게 설정하는 경우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3조의2에 규정된 계약이행 보증 금액의 비율을 높이거나,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기관 선택을 제한하는 약정
- 나. 수급사업자가 법 제13조의2 규정에 준하여 계약이행을 보증하였음에도 수급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계약책임, 불법행위책임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는 약정
4. 원사업자의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
- 가. 법 제9조 제2항의 목적물등의 검사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나. 법 제9조 제2항의 목적물등의 검사 결과 통지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이의제기를 제한하는 약정
- 다.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안전조치, 보건조치 등 산업재해예방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5. 수급사업자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경우

가. 계약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함이 없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내용을 원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정하도록 하는 약정

나.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계약 조건이 제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계약에 적용하기로 하는 약정

다. 원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관계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하자담보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하여 정한 약정

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한 자재, 장비, 시설 등(이하 “자재등”이라 한다)이 수급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멸실, 훼손된 경우에도 수급사업자에게 자재등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

마. 계약 해제·해지의 사유를 원사업자의 경우 관계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넓게 정하거나, 수급사업자의 경우 과도하게 좁게 정하는 약정

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한 자재등의 인도지연, 수량부족, 성능미달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해 추가로 발생한 비용, 지체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최신 법령 개정] (2025. 1.)

원사업자가 하자이행보증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보하는 “유보금 설정 약정”이 부당특약의 예시로 명시됨(고시 II. 1. 라.)

(2) 자주 묻는 질의응답(FAQ)

Q1.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위법한가요?

그렇습니다. 해당 조항의 효력이나 그로 인한 비용 전가 가능성과 관계없이, 그리고 해당 조항을 실제 적용한 사례가 있는지 관계없이, 그러한 특약을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2. 전염병 등으로 인한 물류 지연으로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나요?

전염병 등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사유로 거래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특약으로 금지됩니다. 따라서 예상하기 어려운 사정변경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경우, 양사간 충분히 협의하여 그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제재 사례

파인건설(주)의 하도급대금 부당특약 설정행위 (공정위 2023. 1. 17. 의결(약) 제2023-006호)	
행위 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인건설은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와 별도로 현장설명서 및 공제 협약서에 ① 환경관리 비용(폐기물처리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과 ②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을 설정하였음
공정위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정위는 특약 ①의 경우 품질관리 또는 환경관리와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 특약 ②의 경우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권을 제한하는 조항으로서 각각 부당 특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주)뉴런엠앤디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공정위 2025. 1. 6. 의결(약) 제2025-002호)	
행위 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뉴런엠앤디는 수급사업자에게 분양 업무와 관련된 용역 위탁약정서를 교부하면서 그 약정서에 “을(수급사업자)은 갑(뉴런엠앤디)의 업무지시에 따라야 하며 업무지시에 반하여 과격한 행동을 하거나 분쟁을 조장하는 경우 즉시 퇴사(계약해지) 조치시키기로 하며, 미지급된 약정금(하도급대금)은 지급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계약조건을 설정(하도급법 제3조의4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런엠앤디는 2022. 3. 1.부터 분양 완료시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 ‘루카831 오피스텔’의 분양 업무를 위탁하면서, 법정 기재사항인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2022. 5. 7.에 이르러서야 목적물의 내용 등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도급법 제3조 제1항 위반) • 뉴런엠앤디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분양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수급사업자 직원의 비위 행위 등으로 인해 수급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한 것을 이유로 당시까지 계약이 완료된 32개 호실의 계약 물량에 대한 하도급대금 399,205,400원을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위반)
<p style="text-align: center;">공정위 판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역위탁약정서상 ‘과격행동’이나 ‘분쟁조장’은 경우에 따라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추상적인 요건으로서 계약 당사자간 요건 해당 여부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크고,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는 것이 아님에도 이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최고 없이 일방적으로 즉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계약 해제·해지 사유를 표준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넓게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라. 하도급대금 연동제(하도급법 제3조 제2항 제3호)

(1) 원칙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하여 수급사업자에 발급하고 그 내용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여야 함

하도급대금 연동 사항
①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 ②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주요 원재료
- ③ 하도급대금 연동의 조정요건
- ④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 ⑤ 하도급대금 연동의 산식
- ⑥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 시점 및 비교 시점
- ⑦ 하도급대금 연동의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

• 다만, 아래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의 연동이 배제됨

하도급대금 연동이 배제되는 예외적인 경우

- ① 원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② 하도급거래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 ③ 하도급대금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 ④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2) 자주 묻는 질의응답(FAQ)

Q1. 단발성 거래도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인가요?

그렇습니다. 계속적 계약에만 연동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단발성 거래라도 단기계약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연동제가 적용됩니다.

Q2. MRO 업체로부터 물품 등을 납품받는 거래가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인가요?

MRO 업체로부터 소모성 자재를 조달하여 납품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단순 구매행위에 해당하므로 하도급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거래의 구체적인 위탁내용에 따라 하도급거래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인건비도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이 되는지?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것으로 인건비는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도급대금의 공급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으로 구성되며, 원재료는 재료비, 인건비는 노무비에 각 해당됩니다.

2. 하도급대금 관련 유의사항

가. 단가 협의 및 결정(하도급법 제4조)

(1) 원칙

- 원사업자는 부당하게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 또는 하도급을 받도록 강요할 수 없음
- ‘부당하게’는 가격결정에 필요한 자료 등을 성실히 제공하고 충분히 협의하였는지 여부, 거래 관행에 어긋나거나 사회 통념상 옳바르지 못한 수단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거래상 지위로 인해 수급사업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약했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함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유형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②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③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④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 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제시하는 등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⑤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⑥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법령에서 정하는 직접 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⑦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⑧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원사업자의 경영 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2) 자주 묻는 질의응답(FAQ)

Q1. 위탁 시점에 물량 등이 확정되지 않아서 단가를 사후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언제나 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단가를 사후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지양해야 합니다. 다만, 위탁 시점에 물량 등이 확정되지 않아 사후적으로 단가를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상물량을 바탕으로 단가를 결정한 후 물량확정이 가능한 시점에 신속하게 하도급대금을 확정하여야 하고, 예상물량과 실제 위탁물량 간 차이를 고려하여 하도급대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합니다.

Q2. 최저입찰가가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재입찰 실시나 단가 재협상이 금지되나요?

원칙적으로는 최저가 경쟁입찰에서 추가적인 단가협상을 시도하는 행위는 지양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최저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이 결정된 경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이라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공정위 의결 제2009-081호).

단, 최저입찰가가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입찰이 가능합니다.

- ① 예정가격 초과 시 재입찰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서면 고지할 것
- ② 예정가격이 객관적,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다는 근거자료를 기록, 보관할 것

③ 낙찰자 선정에 대한 이의, 분쟁 발생에 대비하여 사후적으로 원사업자 예정가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예정가격 및 그 산정 근거를 수정이 불가능한 형태로 보관할 것

(3) 제재 사례

기아자동차(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공정위 2007. 12. 31. 의결 제2007-556호)	
행위 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4개 수급사업자에게 쏘렌토 등 다른 차종에서 납품단가를 인상해주겠다고 약속 후 리오 등 차종의 부품 단가를 인하(0.9%~29.9%)하였으나, 실제로는 단가인상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음
공정위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위는 위 사안에서 원사업자는 납품단가 인상을 통한 손실보전 등 사후조치에 관한 아무런 내부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인하된 납품대금 전액을 보전해줄 의사도 없었음에도 이를 보전해줄 것처럼 수급사업자들을 기만하였다고 보고,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시정조치(재발방지명령, 미정산액 지급명령, 수명사실 통지명령)

(주)포스텍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공정위 2014. 12. 9. 의결 제2014-274호)	
행위 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자의 단가인하 요구, 제조원가 상승 등을 이유로 선박블록을 제조하는 A사를 포함한 5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각 수급사업자가 수행하는 공정에 대한 고려 없이 기존 단가 대비 10%에 해당하는 일률적인 비율로 하도급대금 단가를 인하하여 계약을 체결함

(주)포스텍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공정위 2014. 12. 9. 의결 제2014-274호)	
공정위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위는 각 수급사업자들이 수행하는 블록조립, 의장, 도장 등과 같은 공정의 차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면서,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인하를 할 인건비 하락 등 객관적인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지연이자 지급명령), 과징금 3,900만원 부과

(주)비엔에이치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공정위 2024. 3. 4. 의결 제2024-046호)	
행위 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사업자와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 체결하면서 발주자와 체결한 도급계약서상 직접공사비를 합한 금액(18억 9천 5백만원)보다 낮은 금액(9억 1천만원)으로 하도급대금 결정(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6호 위반) • 경쟁입찰을 통해 수급사업자를 공사업체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가 제출한 입찰 최저가 금액(83억 3천 9백만원)보다 낮은 금액(80억 6천 8백만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 위반) •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하면서 공사에 착수하기 전까지 하도급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지연하여 발급(하도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위반) • 공사 하도급계약서에 ① 인원보강을 요구하거나 돌관공사 요청시 즉시 응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정산을 요구할 수 없다는 약정, ② 공사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음을 이유로 직접비 외 간접비 등에 대해서는 별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정, ③

	<p>피심인에게만 특별한 즉시 해제·해지 사유를 부여하는 계약조건 설정(하도급법 제3조의4 위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사업자에게 특정 자재공급업체를 소개하는 방법으로 자재 구매를 요구하여,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기존 거래하던 업체보다 높은 단가로 특정 자재공급업체로부터 총 432만원 상당의 PE 자재를 구매하도록 함(하도급법 제5조 위반) •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음에도 ‘상당한 손해를 끼치거나 끼칠 염려가 있는 경우’ 등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계약해지 사유 및 자신에게만 부여한 즉시 계약해지권을 통해 수급사업자와 충분하고 실질적인 협의 없이 계약기간 중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여 사실상 잔여공사에 대한 하도급위탁을 취소(하도급법 제8조 제1항 제1호 위반) • 자신의 부담 부분인 가스대금 및 장비 임차료 총 6천 3백만원 상당을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대신 지불하도록 함(하도급법 제12조의2 위반) • 공사계약 체결 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않음(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 위반) • 하도급계약 체결 후 공사원가 변경 등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91억원 상당의 도급대금을 증액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미증액하고 증액 사유와 내용을 미통지(하도급법 제16조 제2항 위반)
<p style="text-align: center;">공정위 판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심인이 계약해지 전일인 2020. 12. 1. 신고인에게 사전 통보하고 다음날 신고인이 협의절차를 진행하고자 피심인 현장소장에 먼저 연락을 하여 면담을 요구하였음에도 피심인이 구체적 대응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한 점을 고려

	<p>할 때, 당사자간에 계약해지와 관련한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심인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하고 이후에 도급대금 조정이 있었다고 하여 신고인이 기수행한 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조정 및 관련 통지의무가 소멸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과징금 17.73억원 부과
--	---

나. 원·부자재 구매 강제(하도급법 제5조)

(1) 원칙

- 수급사업자에게 원사업자에 납품하는 물품의 제조와 관련하여 원사업자가 지정하는 물품·장비 또는 서비스를 구입 또는 사용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 거래조건은 양사간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설정되어야 함

특정 원·부자재 구입을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① 발주자나 고객이 목적물의 제조 또는 시공 의뢰 시 특정 물품 및 장비 등을 사용하도록 요구한 경우
② 목적물의 품질 유지 및 개선에 특정 물품이나 장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 예시

- 구매·외주 담당자 등 하도급 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하도급계약 체결 과정에서 구입을 요청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에게 목표량을 할당하여 구입을 요청하거나 불응 시 불이익한 취급을 받게 됨을 시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수급사업자가 구입 의사가 없음에도 재차 구입을 요구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영업 행위와 관련이 없는 물품의 구매를 요청하는 경우

다. 선급금의 지급(하도급법 제6조)

(1) 원칙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 발주자가 선급금의 사용 용도, 지급 대상 품목 등 선급금의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원사업자에게 지급한 경우, 원사업자는 그 내역별로 상기 방식과 같이 하도급율을 감안한 선급금을 산정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됨
- 선급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어음 만기일이 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할 때는 초과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또는 수수료(금융기관과 사전에 약정한 수수료율)를 지급하여야 함

(2) 법 위반 예시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 15일이 지난 이후에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 선급금은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것이므로 기성 비율에 맞추어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나, 일시에 전액을 공제하거나 기성율보다 높게 선급금을 조기 공제하는 경우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40% 수령하였으나 하도급업체에는 25%만 지급한 경우

라. 하도급대금 감액(하도급법 제11조)

(1) 원칙

- 원사업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때에만 감액할 수 있음
- 이때 감액의 정당한 사유는 당사자들 간의 충분한 협의와 진정한 합의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
-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금액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초과 기간에 대하여 공정위가 정하는 지연이자(연 15.5.%)를 지급하여야 함

하도급대금의 감액이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
① 하도급계약 체결 후에 수급사업자가 제출한 하도급대금 산정자료에 중대하고 명백한 착오를 발견하여 이를 정당하게 수정하고 그 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② 수급사업자가 위탁내용과 다른 목적물 또는 불량품을 납품하거나 정해진 납기일을 초과하여 납품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된 목적물을 반품하고, 반품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경우
③ 수급사업자가 수리가 가능한 불량품을 납품하였으나 반품을 하여 수리를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어 원사업자가 스스로 수리하여 사용하고 적정하게 산정된 수리비용을 감액하는 경우
④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수급사업자의 장비관리 소홀로 인해 장비가 훼손되어 해당 장비에 대한 적정수리비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2) 자주 묻는 질의응답(FAQ)

Q1. 수급사업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도 부당한 감액에 해당할 수 있나요?
경우에 따라 부당한 감액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공정위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면 수급사업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열악한 거래상지위에 따른 형식적인 동의에 불과하다고 평가하여 부당한 감액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사업자가 명시적으로 감액에 동의한 경우에도 감액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하여야 하고, 감액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Q2. 계약서에 명시된 감액 사유를 기초로 감액하는 것도 부당한 감액에 해당될 수 있나요?

계약서에 기재된 감액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거나, 그러한 계약조건 자체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당한 감액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표준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감액 사유를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급사업자와 충분히 협의하고 CP 부서 또는 법무 부서의 검토를 받으실 필요가 있으며, 계약서에 명시된 사유로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감액의 정당한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하고, 감액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3) 제재 사례

엘지전자(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공정위 2018. 7. 2. 의결 제2018-225호)	
행위 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24개 수급사업자에게 휴대폰 부품 등을 제조위탁한 후, 동 수급사업자들과 개별적으로 납품 단가를 인하하기로 합의하면서 회의록, 가격 인하 협의록 등에 인화된 단가의 적용일자를 합의일보다 최소 1일에서 최대 29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명시하고, 실제로 합의일 이전에 납품되어 입고된 총 1,318개 품목에 대하여 인화된 단가를 적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감액함

<p>공정위 판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를 하고 합의일 이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인하된 단가를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는 부당한 감액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과징금 33.24억원 부과
----------------------	--

마. 경제적 이익 부당 요구(하도급법 제12조의2)

(1) 원칙

-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함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내세워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도 포함하며, ‘경제적 이익’에는 원사업자가 부담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의 행위도 포함

(2) 법 위반 예시

- 원사업자 수익 또는 경영여건 악화 등 불합리한 이유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재물 및 경제적 가치 있는 이익을 포함. 이하 같음)을 요구하는 경우
- 거래 개시, 다량 거래 등을 조건으로 협찬·장려·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경우
- 기타 수급사업자가 부담할 법률상 의무가 없음에도 협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경우

바. 하도급대금 지급(하도급법 제13조)

(1) 원칙

-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 시 하도급대금의 지급 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을 수령한 날이 지급기일이 되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날을 지급기일로 정한 경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이 지급기일이 됨
- 단, 발주자로부터 도급 대금을 받은 경우 그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시기 중 더 빠른 일자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2) 자주 묻는 질의응답(FAQ)

Q1.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를 수급사업자에 대한 채권(예: 지체상금, 하자보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나요?
수급사업자와의 합의가 없는 한 임의로 상계하여서는 안 됩니다. 특히, 수급사업자에게 가지는 채권의 금액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급사업자가 파산 직전 상태에 있어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뒤 사후적으로 지체상금을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은 기한 내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제재 사례

대륙토건(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공정위 1992. 10. 22. 의결 제1992-128호)	
행위 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사업자가 공사 중 일부를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한 후, 목적물을 인수하였으면서도 공사 도중 수급사업자의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민원보상비 및 지체상금을 부담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공정위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사업자가 시공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불합격통지를 하지 않아 하도급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였으므로, 지급기일을 경과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를 불문하고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판단함 • 시정명령(서면교부명령, 지급명령)
---------------	--

신태양건설사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공정위 의결 2025.4.2. 제2025-60호)	
행위 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건설사는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에 따른 어음할인료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음
공정위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발방지 및 시정명령 부과

사. 하도급대금 조정(하도급법 제16조, 제16조의2)

(1) 원칙

(가) 발주자의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 시 하도급대금 증액의무

- 아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수급사업자에게 증액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고(단,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는 제외), 30일 이내 하도급대금을 동일한 비율로 증액(변경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추가 계약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증액분을 지급하여야 함

① 설계변경, 목적물 납품시기 변동, 경제상황 변동 등을 이유로 발주자가 계약금액을 증액

② 위 사유로 목적물 완성, 완료에 추가비용이 소요

(나) 발주자의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감액 시 하도급대금 감액권

- 만약 설계변경, 목적물 납품시기 변동, 경제상황 변동 등을 이유로 발주자의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 원사업자는 그로부터 15일 이내 수급사업자에게 감액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고, 30일 이내 하도급대금을 동일한 비율로 감액(변경계약 체결)할 수 있음
- 단, 증액과 달리 감액은 의무사항이 아님

(다) 공급원가 인상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및 협의

-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한 경우,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일부터 10일 이내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여서는 안 됨
 - ① 목적물의 공급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제조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가 변동된 경우
 - ②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목적물 납품시기가 지연되어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된 경우
- 조정을 위한 협의에 응하고, 협의과정 및 내용은 기록,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단가조정을 위한 시장조사, 원가산정 등과 같은 객관적 근거 없이 수급사업자가 수용할 수 없는 가격만을 반복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성실하게 조정 협의에 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음

아. 대물변제(하도급법 제17조)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 불가

-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는 수급사업자가 원하지 않았지만 원사업자의 의사에 의하여 할 수 없이 합의하거나 동의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당초부터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자유로운 협의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의사에 반하는 대물변제로 보기 어려움

3. 계약이행 관련 유의사항

가. 발주 취소/반품/수령거부(하도급법 제8조, 제10조)

(1) 원칙

-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 ① 이미 발주된 PO를 임의로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② 목적물의 수령·인수를 거부하거나, ③ 목적물 수령 후 이를 반품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
① 정당한 사유가 있어 사전에 지정, 협의한 원자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② 발주한 내용과 다른 물품을 납품한 경우
③ 납기를 어겨 납품하는 등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④ 수급사업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목적물의 제조 착수를 거부하여 납기에 완성, 완공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수급사업자가 제조 또는 운송 과정에서 목적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오염되거나 훼손된 목적물을 납품한 경우
⑥ 양사가 사전에 서면으로 협의한 검사기준에 객관적으로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⑦ 원사업자의 승인 없는 영업양도 결의 등 계약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⑧ 수급사업자의 파산·회생 신청,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 감독관청의 영업취소·정지처분 등 더 이상 계약의 이행을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2) 자주 묻는 질의응답(FAQ)

Q1. 발주착오가 있었거나 판매과정에서 소비자 반품이 있어 발주한 만큼의 수량이 필요 없는 경우 반품할 수 있나요?

이는 원사업자의 내부사정으로 인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위탁을 취소하거나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소비자 반품의 경우, 수급사업자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반품이 가능하지만, 원사업자가 제품 수령 시 사전에 정한 검사기준에 따라 목적물을 검사하고 합격통보를 하였음에도 이후 고객 변심 등으로 반품된 경우라면 반품이 금지됩니다.

Q2. 수급사업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도 부당한 위탁취소·반품에 해당할 수 있나요?

그렇게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규제기관의 시각에서는, 수급사업자가 동의하는 경우라도 당사자 간의 관계(즉, 거래의존도)나 동의 내용 및 과정 등에 비추어 그 동의가 원사업자의 일방적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급사업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라도, 그 과정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초래되는 비용을 합리적 수준에서 보전하거나(적어도 보전 방법에 관하여 논의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함), 해당 협의가 대등한 지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마련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제재 사례

인탑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공정위 2009. 9. 1. 의결 제2009-178호)

행위 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사업자가 사출물을 두 차례 납품 받은 후 납품 일로부터 2~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발주하였다는 이유로 반품함
공정위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정위는 사출물 납품 직후 불합격사실을 통보한 적도 없음을 근거로, 위 반품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 측에 책임을 돌릴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 반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지연이자 지급명령)

코나엠(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공정위 2017. 11. 15. 의결(약) 제2017-120호)	
행위 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납품받은 제품에 정품이 아닌 중국산 부품이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제품을 반품하였으나, 원사업자가 위탁할 당시 발주서상에는 중국산 부품 사용이 금지된다는 요구사항이 명시되지 않았음
공정위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급사업자가 발주서의 내용대로 납품하였다면 수급사업자 측 귀책사유는 없다고 보고 부당한 위탁취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지연이자 지급명령)

(주)에스디케스텍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공정위 2016. 2. 2. 의결(약) 제2016-014호)	
행위 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급사업자로부터 정상적으로 유압기 부품을 수령한 뒤, 이후 발주자가 해당 부품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불량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위 부품을 반품함
공정위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가공과정에서 발생시킨 불량(가공불량)을 이유로 반품한 행위 및 이러한 반품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p>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감액행위로 인정되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	--

삼성전자(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공정위 2008. 4. 3. 의결 제2008-113호)	
행위 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사업자들에게 휴대폰 부품제조를 위탁한 후, 자신의 생산계획이나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이미 생산 완료한 부품의 수령을 2~8개월 지연함
공정위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심인이 제조위탁하여 수급사업자가 생산완료한 부품의 납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수령을 지연함에 따라 수급사업자들의 재고 부담이 장기화되어 금융비용 손실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피심인 스스로 진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급사업자의 책임을 주장하고 있지 못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목적물 지연수령에 대해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만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인정됨 •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지연이자 지급명령), 과징금 115.77억원 부과

나. 납품, 품질검사 및 불합격통지(하도급법 제8조 제2항, 제9조)

(1) 원칙

(가) 목적물 수령증명서 발급

- 목적물을 수령한 즉시, 품질검사 전이라도 수급사업자에게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함

(나) 목적물 검사 의무

- 위탁 목적물에 대한 검사의 기준과 방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하게 정하여야 함. 검사 방법에는 전수검사, 발

채검사, 제3자에 대한 검사 의뢰, 수급사업자에게 검사 위임, 무검사 합격 등이 존재

(다) 검사 결과 통지 의무

-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기간 내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봄
- 따라서 원사업자는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후 수급사업자에게 귀책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제품을 반품하거나 대금을 감액할 수 없음
- 검사 결과 통지 기간의 예외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일일 평균 검사 물량의 과다, 발주처에의 납기 준수 등 통상적인 사유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거대한 건설공사(담·교량 공사, 대단위 플랜트 공사 등), 시스템 통합 용역 등 복잡·다양한 기술적 검사가 필요하여 장기간의 검사가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 가능

(2) 제재 사례

(주)대진전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공정위 2013. 1. 21. 의결(약) 제2013-019호)	
행위 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사업자로부터 온도조절기 등 위탁한 물품을 수령하였으나, 수령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하도록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음
공정위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반품·하도급대금 감액 등 수급사업자에게 실제로 어떠한 불이익을 주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검사결과 서면통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교육명령)

다.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출·사용(하도급법 제12조의3)

(1) 원칙

(가) 기술자료 요구 금지

-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행위 또는 기술자료를 유출·유용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됨.
- 다만 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②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③ 사전협의 및 관련 서면을 발급한 경우 예외적으로 기술자료 요구가 허용됨

기술자료의 범위
<p>기술자료란 수급사업자에 의하여 합리적 노력으로 비밀로 유지하고 있는 것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을 의미</p> <p>①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자료</p> <p>②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 재산권과 관련된 기술 정보·자료로서 수급사업자의 기술 개발(R&D)·생산·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p> <p>③ 위에 포함되지 않는 포함되지 않는 기타 사업자의 정보·자료로서 수급사업자의 기술 개발(R&D)·생산·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p>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예시
<p>① 기술이전계약이나 개발계약 체결 후 약정된 비용·개발비를 지급하고 자료제공을 요구하는 경우</p> <p>② 공동 특허 개발 과정에서 특허출원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p> <p>③ 제품 하자 발생원인 규명을 위해 하자과 직접 관련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p> <p>④ 위탁목적물의 사양을 확정하기 위하여 승인도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p>

- ⑤ 제3자의 지식재산권 침해 주장에 따라 침해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목적에서 직접 관련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⑥ 안전·환경이나 FTA 원산지 증명 등 법령상 규제사항 충족 여부 검토를 위하여 직접 관련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⑦ 해외 수출 시 관할 행정청의 허가 목적으로 필요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나) 기술자료 비밀유지계약 체결의무

- 원사업자는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다음 법정 기재 사항이 반영된 비밀유지계약서를 수급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함. 참고로 공정위는 ‘표준 비밀유지계약서’를 제정하여 배포하고 있음

기술자료 비밀유지계약서 법정기재사항
①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②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③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④ 기술자료의 비밀유지 의무
⑤ 기술자료의 목적 외 사용 금지
⑥ 위 제4호 또는 제5호의 위반에 따른 배상
⑦ 기술자료의 반환·폐기 방법 및 일자

(다)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의무

-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법정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하고, 이 경우 계약서 등 명칭을 불문하고 양 당사자의 서명이 필요함. 일방 당사자의 서명·날인만 있는 경우에는 적법한 서면이 발급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음

기술자료요구서 법정기재사항
① 기술자료 요구목적
② 기술자료의 권리귀속 관계

- ③ 기술자료의 대가, 대가의 지급 방법
- ④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 ⑤ 요구일/제공일 및 제공 방법
- ⑥ 그 외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2) 자주 묻는 질의응답(FAQ)

Q1. 수급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도 기술자료요구서를 제공해야 하나요?

수급사업자가 자발적으로 기술자료를 제출하였다면 기술자료요구서를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공정위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거래상지위 차이 등을 고려하여 묵시적으로나마 자료제공 요구가 있었을 것으로 전제하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자료요구서를 발급하지는 않더라도, 수급사업자의 자발적인 자료 제공 경위를 사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이를 기록해 두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이메일 등 수집 가능한 근거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2. 기술자료요구서는 모든 업체에 다 발급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규정은 섹타나인과 거래하는 하도급업체가 하도급법상의 수급사업자(중소기업)일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행 하도급법에 따르면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 기술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별도의 기술자료요구서 발급 없이 기술자료를 요청해도 무방합니다.

(3) 제재 사례

엘에스엠트론(주) 및 쿠파스탠다드오토모티브앤인더스트리얼(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공정위 2022. 3. 28. 의결 제2022-083호)

<p style="text-align: center;">행위 사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 수급사업자로부터 금형 제조 방법에 관한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후,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본인 단독명의로 제조 방법에 대한 특허를 출원·등록하는 방식으로 기술자료를 유용함 •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금형 설계도면을 2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하여 제공받았으며, 요구 시 필요한 부분을 특정하지 않고 전체 도면의 제공을 요구하였음 • 기술자료요구서 미교부: 공동 특허출원을 목적으로 수급사업자에 금형 제조 방법에 대한 연구 노트를 요구하면서, 법정 요구 서면도 수급사업자에 교부하지 않음
<p style="text-align: center;">공정위 판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 문제가 있었는지 입증되지 않았고 해당 금형 설계도면이 특허에 사용된 점, 설령 품질검증 목적을 인정하더라도 필요 부분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전체 도면을 요구한 것은 요구목적 달성에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 요구행위에 해당함 • 공동으로 특허 출원할 목적은 기술자료 요구의 정당한 사유로는 인정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법정 사항에 대해 사전 협의하여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점에서 위법성이 인정됨 •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 과징금 13.86억원 부과

(주)귀뚜라미 및 (주)귀뚜라미홀딩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공정위 2024. 11. 27. 의결 제2024-357호)	
<p style="text-align: center;">행위 사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뚜라미 및 귀뚜라미홀딩스는 센서와 전동기의 구매 단가를 절감하기 위해 A·B사의 경쟁업체들과 접촉하였음 • 귀뚜라미홀딩스는 중국에 소재한 A사의 경쟁업체에게 A사의 기술자료(승인원) 32건을 송부하였고, 그 결과 해당

	<p>경쟁업체는 센서 3종의 개발에 성공하고 이 중 1종을 2021년부터 귀뚜라미에 납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뚜라미는 B사의 경쟁업체에게 B사의 기술자료 2건을 송부하였고, 그 결과 해당 경쟁업체는 전동기 2종의 개발에 성공하였으나 센서와는 달리 실제 생산에 이르지 못한 함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4항 제2호 위반) • 귀뚜라미 및 귀뚜라미홀딩스는 2012. 7. ~ 2022. 4. 기간 동안 A사에게 센서 관련 기술자료 40건, B사에게 전동기 관련 기술자료 6건을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을 협의하지도 않았고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지도 않음(하도급법 제12조의3 제2항 위반)
<p>공정위 판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심인들이 승인원을 제3자에게 제공한 목적은 센서와 전동기 부품 공급처를 이원화하여 부품을 보다 낮은 단가로 납품받는 데 있음. 일반적으로 거래처가 이원화될 경우, 원사업자는 원가 절감 등의 이익을 얻게 되고, 교섭력도 높아지는 반면, 기존 수급사업자는 납품 물량이 감소하고 향후 납품단가가 인하되는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손해가 발생할 것이 명백함 •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과징금 9억 5,400만원 부과(귀뚜라미) 및 2개 법인 검찰 고발

라. 경영간섭(하도급법 제18조)

(1) 원칙

- 원사업자는 하도급 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 불가

부당한 경영간섭 예시
<p>①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가 기술 자료를 해외에 수출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기술 자료의 수출을 이유로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p>

-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구속하는 행위
-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원가자료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경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①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의 납품을 위해 투입한 재료비, 노무비 등 원가에 관한 정보(원가계산서, 원가내역서, 원가명세서, 원가산출내역서, 재료비, 노무비 등의 세부지급 내역 등)
②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의 매출 관련 정보(매출계산서, 거래처별 매출명세서 등)
③ 수급사업자의 경영전략 관련 정보(제품 개발·생산 계획, 판매 계획, 신규투자 계획 등에 관한 정보 등)
④ 수급사업자의 영업 관련 정보(거래처 명부,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의 납품조건에 관한 정보 등)
⑤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사용하는 전자적 정보 교환 전산망의 고유식별명칭, 비밀번호 등 해당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

(2) 제재 사례

(주)만도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공정위 2021. 2. 17. 의결 제2021-040호)	
행위 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단가인상 요청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① 원사업자가 추천하는 자를 대표이사로 선임할 것, ② 특정 제품에 대한 생산을 중단할 것, ③ 자금집행계획 및 내역을 보고할 것 등을 요구함
공정위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의 대표이사 선임에 관여하고 일부 생산품목의 거래를 중단하게 한 행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경고

4. 기타 유의사항

가. 보복조치(하도급법 제19조)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주 기회 제한, 거래 정지, 그 밖에 불이익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보복조치가 금지되는 행위
① 원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였음을 관계 기관 등에 신고한 행위
② 하도급법에 따른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조정신청 또는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에 대한 조정을 신청한 행위
③ 관계 기관의 조사에 협조한 행위
④ 하도급 거래서면 실태조사를 위하여 공정위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한 행위

나. 탈법행위(하도급법 제20조)

- 원사업자는 하도급 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이 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III. 위반 시 제재

1. 시정조치 및 시정권고

- 공정위는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법 위반행위 중지, 특약 삭제나 수정, 향후 재발 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 및 시정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를 명령 가능
- 또한,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대해 시정 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음

2. 공공입찰 참가 제한

-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원사업자에 그 위반 및 피해 정도를 고려해 벌점을 부과
- 과거 3년간의 누산 벌점이 법상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공공입찰 참가 제한(5점)·건설법상 영업정지(10점) 요청 가능

3. 상습법 위반사업자 명단공표

- 과거 3년간 하도급법 위반을 이유로 공정위 경고, 시정조치 또는 시정권고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 누산 벌점 4점 초과한 자는 상습적 법 위반 사업자로써 공정위가 그 명단을 의무적 공표

4. 과징금

- 발주자·원사업자에 대해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 위탁한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가능

5. 형사처벌

- 위탁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 아래 벌금 대상 규정 위반 외 원사업자 의무사항 위반 시
- 3억 원 이하의 벌금
 - 보복 조치 행위 금지 규정 위반 시
-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부당 경영간섭·탈법행위 금지 규정 위반 및 공정위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자

6. 손해배상

- 하도급법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원사업자는 발생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부담함.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제외

실제 발생한 손해의 3배 미만에서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② 부당위탁취소, 수령 지연·거부, 부당반품 및 부당감액 ③ 기술 자료의 유용·유출 ④ 보복 조치 |
|--|

IV. 업무상 유의사항(Do & Don'ts)

1. 계약서 작성 및 교부

[D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서 서명·기명날인 전 위탁물량, 목적물 사양 등이 정확하게 기재·확정되어 있는지 점검할 것 • 수급사업자 업무 착수 전까지 법정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된 서면을 작성하고, 양사 서명·기명날인 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할 것 • 기존 합의된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항을 서면으로 합의할 것 •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묵시적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이 승인되었더라도, 연장된 계약기간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할 것
[Do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양식 또는 과거 사용한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실제와 다른 거래조건이 발주서 또는 계약서 등에 남아있지 않도록 할 것 • 당사자 서명·기명날인이 누락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을 것 • 계약조건을 구두로만 변경하지 않을 것

2. 서면의 보존

[D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존의무가 있는 서류목록을 숙지하고 누락·분실된 서류가 없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 • 중복되는 서류가 존재할 경우, 최종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할 것

[Don't]

- 보존의무가 있는 서류를 각 부서별 담당자가 개별적으로 보관하지 않을 것

3. 거래조건 협의 및 결정
[Do]

- 표준계약서와 다른 계약조건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와 충분히 협의하고 증빙을 구비할 것
- 비용·책임 분담에 관한 특약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두고 자율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것
- 비용·책임 분담은 어느 일방에 부당하게 불리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설정할 것
- 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 등으로 계약조건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양사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서면으로 합의할 것

[Don't]

- 표준계약서의 계약조건을 임의로 수급사업자에 불리하게 변경하지 않을 것
- 양사 간 비용·책임 분담을 정함에 있어 합리적 사유 없이 원사업자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을 설정하지 않을 것
- 비용·책임 분담에 관하여 수급사업자가 사유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이를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을 설정하지 않을 것
-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기존에 합의되지 않은 사정으로 발생한 비용을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지 않을 것

4. 단가 협의 및 결정
[Do]

- 단가 협상·결정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와 협의한 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할 것
- 최종 합의된 단가에 대해서는 그 산정 근거가 된 자료들을 보관할 것
- 단가 협의시 계약기간 동안 예상되는 거래물량을 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견적을 제시하도록 요청할 것

- 수급사업자가 단가와 관련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수용 여부를 검토할 것
- 단가는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가 과업을 개시하기 전에 확정할 것
- 단가인하 시, 원자재가격 하락 등 그러한 단가 인하가 합리적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구비할 것
- (최저가 경쟁입찰에서) 예정가격은 객관적,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그 산정 근거에 관한 서류를 기록, 보관할 것
- (최저가 경쟁입찰에서) 예정가격 초과 시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라면, 그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고 예가 산정 근거를 구비할 것

[Don't]

- 수급사업자에게 구두로 단가인하를 고지하거나 동의를 받지 않을 것
- 객관적으로 예상 거래물량을 확인하기 어려운 형태(예: “작년 물량에 준함”, “추후 확정”)로 제시하지 않을 것
- 구체적인 검토나 근거 없이 수급사업자의 단가 관련 요청을 거절하지 않을 것
- 단가인하에 불응할 경우 거래처 변경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의 언행을 하지 않을 것
- 수급사업자가 이미 과업을 상당 정도 진행하여 협상력이 낮아진 것을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단가를 결정하지 않을 것
- 내부 원가절감목표 달성 등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정을 이유로 단가를 인하시지 않을 것
- (최저가 경쟁입찰에서) 예정가격을 초과하지 않았음에도 최저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협상을 시도하거나 재입찰을 실시하지 않을 것
- (최저가 경쟁입찰에서) 사전 서면고지 없이 예정가격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재입찰이나 추가 협상을 시도하지 않을 것

5. 하도급대금 감액

[Do]

- 하도급대금 감액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그 사유를 수급사업자에 고지하고,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부여한 뒤 양사 협의를 거쳐 감액분을 확정할 것

- 하도급대금 감액의 정당한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할 것
- 하도급대금의 감액에 관하여 양사 합의가 성립한 경우, 감액 사유 등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할 것
-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감액과 관련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수용 여부를 검토할 것

[Don't]

-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감액 사유를 설명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감액하지 않을 것
- 수급사업자에게 구두로 하도급대금 감액을 고지하거나 동의를 받지 않을 것
- 하도급대금 감액에 불응할 경우 거래처 변경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의 언행을 하지 않을 것

6. 하도급대금 지급

[Do]

-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을 준수할 것
-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
- 수급사업자와 대금에 관한 분쟁이 있더라도 분쟁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기일을 준수할 것
- 수급사업자와 분쟁이 있어 수급사업자가 대금 수령을 거절할 경우 해당 금액의 공탁을 고려할 것

[Don't]

-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면제를 요구하지 않을 것
- 수급사업자와 대금에 관한 분쟁이 있다는 이유로 대금 전체에 대하여 지급을 거부·지연하지 않을 것

7. 발주 취소/반품/수령 거부

[D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발주를 취소하거나 반품하려는 경우, 해당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할 것 • 단순 Forecast와 발주물량은 명확히 구분되도록 할 것 •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발주를 취소하거나 반품하려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객관적 서류를 확보할 것 • 수급사업자와의 합의를 통해 취소·반품하려는 경우, 그 협의 과정을 철저히 기록할 것 •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취소·반품할 경우, 그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손실에 대하여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하게 보상하고, 서면으로 합의서를 작성할 것
[Do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두로 위탁을 취소하거나 반품을 요구하지 않을 것 • 달리 합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서면으로 합의되지 않은 조건을 이유로 취소·반품하지 않을 것 • 담보하기 어려운 물량의 발주를 약속하지 않을 것 • 계약이행과 무관한 사유를 들어 취소·반품하지 않을 것 • 수급사업자로부터 서면동의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임의로 발주를 취소하거나 반품하지 않을 것 • 구체적 조건에 관한 실질적인 협의 없이 반품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지 않을 것

8. 납품, 품질검사 및 불합격통지

[D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물 수령 즉시 수령증을 서면으로 교부할 것 • 계약체결단계에서 목적물에 대한 검사기준·방법을 협의하여 확정할 것 • 목적물 수령 즉시 목적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것 • 검사 결과 불합격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납득할 만한 객관적 불합격 사유를 서면으로 제공할 것
[Do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량 과다 등 내부 사정을 이유로 수령증 교부를 지연하지 않을 것

- 일방적으로 협의된 검사기준·방법과 다른 기준·방법으로 목적물을 검사하지 않을 것
- 구두로 불합격통지를 하면서 반품, 하도급대금 감액 등을 요구하지 않을 것

9. 경영간섭

[Do]

- 수급사업자의 경영상 의사결정에 관여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 및 관여 범위에 관하여 사전에 CP 부서 또는 법무 부서의 내부 검토를 거칠 것
- 수급사업자의 경영정보를 요구하려는 경우, 그렇게 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및 그 목적범위 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인지 검토할 것
- 수급사업자가 제공한 경영정보는 요구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사용 직후 폐기할 것

[Don't]

-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필요 이상의 과도한 경영정보를 요구하지 않을 것
- 수급사업자가 제공한 경영정보를 요구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
- 수급사업자가 경영정보 요구를 거절하거나 제공범위의 조정을 요청하였음에도 불이익을 시사하는 등으로 정보제출을 강요하지 않을 것

PART 4 대리점법 해설

I. 대리점법 개관

1. 대리점법의 목적

- 대리점법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개념

구분	내용
대리점거래	•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에 상품 또는 용역의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거래로서 일정 기간 지속되는 계약을 체결하여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거래
공급업자	• 생산 또는 구매한 상품 또는 용역을 대리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
대리점	• 공급업자로부터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받아 불특정다수의 소매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 하는 사업자
반품	• 대리점이 공급받은 상품을 되돌려주거나 대리점의 다른 상품과 바꾸는 등 형식에 상관없이 공급받은 상품을 공급업자에게 실질적으로 되돌려주는 모든 행위
판매장려금	• 명칭에 상관없이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

3. 대리점법의 적용 제외 사유

- 다음의 각 경우에 있어서 대리점법은 적용이 배제됨
 - 공급업자가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 대리점이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사업에 해당하는 거래
-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에 해당하는 거래
-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 사이의 거래

4. 공정거래법과의 적용 관계

- 대리점법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의 대리점 거래관계에 대한 특별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짐. 따라서 대리점법은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대리점거래에 관하여 공정거래법에 우선하여 적용됨
- 다만 대리점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우월한 지위가 인정된다면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
- 대리점법상 금지행위의 유형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서 정하는 행위유형과 유사하며, 그 부당성의 판단기준이 유사함

II. 행위 유형별 유의사항

1. 계약서 작성 및 보관의무(대리점법 제5조)

가. 원칙

- 공급업자는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 납품방법, 납품장소 및 일시, 상품대금의 지급수단 및 지급시기, 상품의 반품조건, 영업의 양도, 계약해지의 사유 및 계약해지 절차, 판매장려금 지급, 기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하 “**법정기재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대리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함

- 공급업자는 대리점거래 계약서를 대리점과의 대리점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함

나. 제재 사례

(주)주비스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및 대리점법 위반행위 등에 대한 건 (공정위 2023. 5. 17. 의결 제2023-083호)	
행위 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리점법 제5조의 계약서 미교부 행위 • 계약을 1년 단위로 갱신하면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대리점 계약 내용을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를 대리점에게 교부하지 아니함
공정위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 과태료 납부명령(1,250만 원)을 부과함

2. 구입강제 행위의 금지(대리점법 제6조)

가. 원칙

-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안 됨

구입강제 행위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리점에 대해 상품을 구입하도록 지속적으로 종용하고 구입하지 않는 대리점에 대해 불이익을 주거나 실적점검을 통해 구입 물량이 적은 대리점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등 대리점이 주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하여 상품을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 대리점의 주문량이 공급업자가 정한 할당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리점의 주문내역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미달된 할당량을 공급하는 행위 •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 비인기 제품, 재고품 등을 일방적으로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 대리점과 사전 협의 없이 대리점별 매출 계획을 수립하여 시달하고, 대리점이 시달된 매출 물량을 주문하지 아니하면 일방적으로 물량을 공급하거나 구매한 물량의 반품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제한하는 행위
- 대리점별로 이월상품에 대한 구입금액을 할당하고, 임의로 품목이나 수량을 정하여 공급하는 행위
- 신제품에 대한 대리점의 주문량이 생산량에 미달되는 경우 대리점별로 임의로 할당한 재고물량을 공급하는 행위
- 제품 및 품질의 유지 등과 무관하고 대리점이 원하지 않음에도 대리점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다른 사업자의 장비를 공급업자의 장비로 교체하기 위해 공급업자의 장비를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 대리점이 신상품이나 인기상품을 주문할 때 원하지 않는 재고상품이나 비인기상품을 함께 묶음으로만 공급하는 행위
- 공급업자가 지정한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으면 공급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음으로써 대리점으로 하여금 사실상 공급업자가 지정한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3.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행위의 금지(대리점법 제7조)

가. 원칙

-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물품·용역,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안 됨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행위 예시

- 판매촉진행사 계획을 대리점과 사전에 협의 없이 수립하고, 그에 따라 발생한 판매촉진비용을 대리점에게만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행위
- 상품이 판매되는 매장에서 근무하는 판촉사원의 투입기준을 마련하고 투입된 판촉사원을 관리하는 등 실질적으로 고용주로서의 역할을 하였음에도 대리점과의 사전 약정 또는 협의 없이 이들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리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 대리점이 공급업자의 판매촉진행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대리점에게 그 판매촉진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 공급업자의 창립기념일, 직원 체육대회, 야유회 등을 실시하면서 협찬금 명목으로 대리점에게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이나 물품 등의 무상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공급업자의 필요에 의하여 공급업자의 상품을 대리점 간에 이동시키면서 그 운송비용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대리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나. 제재 사례

한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공정위 2019. 11. 5. 의결 제2019-263호)	
행위 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리점법 제7조 경제상이익 제공강요 • 대리점들과 사전 협의 없이 부엌·욕실 전시 매장 관련 판촉행사를 실시하고 관련 비용을 대리점들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김
공정위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경제상이익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 과징금 납부명령(7억 300만원) (*2016. 12. 22.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어 과징금 4억 5,300만원 부과 → 총 11억 5,600만원의 과징금 부과됨)

4. 판매목표 강제행위의 금지(대리점법 제8조)

가. 원칙

-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대리점에게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안 됨

판매목표 강제행위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리점으로부터 판매계획서와 목표 미달성시 대리점 운영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제출받은 후, 대리점이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대리점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 대리점에게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반품조건부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반품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 대리점의 판매실적이 판매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대리점의 주문량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현저하게 축소된 물량을 공급하거나 물량을 지연하여 공급하는 행위 • 대리점이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합리적인 이유없이 다른 대리점에 비하여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가격을 인상하거나 공급가격의 할인율을 불리하게 적용하는 행위 • 대리점과 상품 또는 용역의 결제조건을 사전에 약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리점이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외상매출기간을 단축하거나 지연이자율 등을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 종전보다 결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

나. 제재 사례

(주)타임교육의 대리점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에 대한 건 (공정위 2023. 1. 30. 의결(약) 제2023-008호)	
행위 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리점법 제8조 판매 목표 강제 행위의 금지 • (주)타임교육은 자신과 거래하는 대리점에게 영업 목표점수라는 판매목표를 제시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대리점에게는 지급하여야 하는 판매수수료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판매목표를 달성하도록 강제함
공정위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부과

5. 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대리점법 제9조)

가. 원칙

-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제6조부터 제8조(구입강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안 됨

불이익 제공행위 유형
<small>(대리점법 시행령 제6조,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5조)</sma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서 내용에 관하여 공급업자와 대리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급업자의 해석에 따르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계약 기간 중에 대리점의 의사에 반하여 거래조건을 추가하여 변경하는 행위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더라도 대리점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이나 대리점과 약정한 영업지원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대리점거래 계약서 상의 판매장려금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판매장려금을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대리점에 임대한 장비나 비품이 대리점의 귀책사유로 손실, 훼손된 경우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아니한 가격으로 대리점이 변상하도록 하는 행위 공급업자의 귀책사유로 상품이 파손되거나 훼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품을 거부하는 행위 공급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반품임에도 불구하고 운송비 등 반품에 드는 비용을 대리점에 부담하게 하는 행위 대리점과 사전협의 또는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단, 사전협의 또는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함 계약기간 중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래를 중단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

- 판매장려금 지급기준, 판매수수료 등 당사자가 사전에 합의한 거래조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
- 합리적 이유 없이 반품이 가능한 대상 상품을 한정하거나 공급한 제품의 일정비율 이내에서만 반품을 허용하는 등 부당하게 반품을 제한하는 행위
- 합리적 이유 없이 공급업자의 귀책사유로 정상적인 재판매가 불가능한 상품의 반품을 거부하는 행위

불이익 제공행위 예시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IV.4. 다.)

- 분기별 매출실적이 전년도 동기 실적보다 감소하는 경우 대리점에 지급해오던 기존의 매출지원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는 조건을 일방적으로 추가하여 대리점계약을 변경하는 행위
- 계약기간 중에 사전에 합의한 수수료 지급기준이나 위탁판매수수료를 등을 일방적으로 대리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
- 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장비사용이 중단되거나 불가능해짐에 따라 대리점에게 발생한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계약서의 보상처리기준에서 정한 금액보다 삭감하여 지급하는 행위
- 대리점협의회에 참가하는 대리점에게 탈퇴 서약서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대리점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 거래처를 다른 대리점에게 양도하라는 요구를 거부한 대리점에 대해 계약상 의무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판촉 상품을 공급하지 않거나 해당 대리점의 거래처에 파견되어 대리점을 지원하던 공급업자의 순회사원을 철수시키는 행위
- 계약기간 중에 대리점의 신용도 등에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대리점의 외상매입에 대한 새로운 유형의 추가 담보를 요구하거나 기존 담보금액을 대폭 증액하는 행위
- 계약기간 중에 공급업자의 경영정책이 변경되었다는 사유로 대리점에게 충분한 사전고지 기간 없이 일방적으로 대리점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 대리점에게 시정기회 부여 및 소명기회 제공 등 대리점계약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대리점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 공급업자의 요구에 따른 설비투자 등을 했을 경우 대리점이 부담한 비용의 규모에 비하여 이를 회수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 대리점의 노력으로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판매가 현저히 증가하게 되는 것이 분명한 경우, 대리점의 이익을 자신에게 귀속시킬 목적으로 대리점을 일방적으로 직영화하면서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 반품조건부로 대리점에 공급한 상품이나 제조과정상 하자가 있는 상품의 반품을 제한하는 행위
- 상품의 하자 등 공급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소매업자 또는 소비자로부터 구매가 취소된 상품을 대리점이 반품해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반품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나. 제재 사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주) 대리점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공정위 2022. 5. 30. 의결 제2022-139호)	
행위 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리점법 제9조 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 자기 소유 타이어의 노후화에 따른 감가 손실액을 대리점에게 전가하여 대리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에서 삭감함
공정위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 과징금 납부명령(4억원)

휠라코리아(주)의 대리점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공정위 2022. 1. 18. 의결 제2022-007호)	
행위 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리점법 제9조 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 판매대행점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상품을 다른 대리점으로 운반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판매대행점으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함

공정위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 과징금 납부명령(1억 2천만원)
---------------	---

6. 경영활동 간섭 금지(대리점법 제10조)

가. 원칙

-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안 됨

경영활동 간섭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리점의 영업직원 채용에 관여하거나 영업직원의 총 정원을 제한하기 위해 대리점이 영업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영업에 필요한 판매코드의 발급을 지연·거부하거나 기존 영업직원의 판매코드를 삭제하는 조건으로 신규 판매코드를 발급받도록 하는 행위 • 대리점의 의사에 반하여 대리점의 영업직원을 공급업자의 직영점 또는 다른 대리점에서 근무하도록 지시하는 행위 • 다수의 공급업자와 거래하는 대리점에게 공급업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의 상품 공급가격, 공급물량, 결제조건 등의 거래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대리점에게 거래처 내역, 상품 판매가격, 금융거래 내역 등의 정보를 요구하거나 대리점의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정보 등에 접근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행위. 다만, 위탁판매의 경우 사후정산 등 목적에서 행하는 행위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대리점의 정상적인 운영과 상관이 없음에도 대리점에게 인테리어 시공업체, 보안경비업체 등을 일방적으로 지정하고 이들 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대리점으로 하여금 공급업자가 일방적으로 설정한 영업지역에서만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대리점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와 관련하여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으로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이나 장비의 교체 또는 인테리어 재시공을 강요하는 행위

나. 제재 사례

(주)현대자동차의 대리점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공정위 2025. 4. 6.(약식) 제2025-051호)	
행위 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리점법 제10조 경영활동 간섭 금지 • 대리점에 영업상 비밀인 ‘상품 판매 금액 정보’를 요구함. • 본사가 지정한 거래처를 통해서만 대리점이 소모품을 조달토록 제한하고, 다른 거래처로부터 소모품을 조달받기 원할 경우 사전승인을 받도록 함.
공정위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부과

(주)위니아에이드의 대리점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공정위 2023. 4. 26. 의결 제2023-073호)	
행위 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리점법 제10조 경영활동 간섭 금지 • (주)위니아에이드는 위니아전산시스템의 실판매정보 영역의 입력항목에 ‘판매금액’을 필수입력항목으로 설정하여 대리점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판매금액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함
공정위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부과

(주)서양네트웍스의 대리점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공정위 2021. 9. 15. 의결(약) 제2021-046호)	
행위 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리점법 제10조 경영활동 간섭 금지 • 대리점의 인테리어 리뉴얼을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리점과 6개월 미만의 단기계약을 체결하는 등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의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함
공정위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부과

7. 주문내역의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 금지(대리점법 제11조)

가. 원칙

-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이 청약 또는 구입의사를 표시한 제품, 수량 등 주문내역의 정당한 확인요청에 대하여 이를 거부 또는 회피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안 됨

주문내역의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리점의 주문내역을 임의로 수정하여 상품을 공급하고 대리점이 접속하는 주문시스템을 변경하여 대리점으로 하여금 공급업자가 주문한 품목의 내역 및 수량을 검색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 •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의 주문시스템 접속을 차단하여 주문내역 확인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 • 대리점의 주문내역 확인요청을 거부 또는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리점이 주문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영업일·영업시간을 현저히 제한하거나 주문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행위

III. 위반 시 제재

1. 시정조치 및 시정권고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법상 금지행위를 한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행위의 중지,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대리점법 제23조)
-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법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음(대리점법 제24조)

2. 과징금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법상 금지행위를 한 경우 법 위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 위반 금액의 최대 80%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과징금 부과할 수 있음(대리점법 제25조)

3. 형사처벌 / 양벌규정

- 대리점법상 금지행위를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대리점법 제30조)
-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도 그 대표자 등과 함께 처벌(대리점법 제31조)

4. 과태료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법상 계약서 작성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 계약서 보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대리점법 제32조)

5. 손해배상

- 공급업자가 대리점법을 위반하여 대리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대리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짐(대리점법 제34조 제1항)
-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대해 구입강제행위,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행위, 분쟁조정신청 또는 공정위에 대한 신고 및 조사협조에 대한 보복행위를 하여

대리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대리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짐(대리점법 제34조 제2항)

IV. 자주 묻는 질의응답(FAQ)

Q1. 대리점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거래해도 되나요?

대리점법의 적용대상인 대리점거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대리점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대리점법 제5조의 계약서 작성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대리점과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하여야 합니다.

대리점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한 즉시 다음의 법정 기재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대리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
- 납품방법, 납품장소 및 일시
- 상품대금의 지급수단 및 지급시기
- 상품의 반품조건
- 영업의 양도
- 계약해지의 사유 및 계약해지 절차
- 판매장려금 지급
- 위탁판매 거래의 경우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및 수행방법에 관한 사항
- 위탁판매 거래의 경우 수수료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지급하는 대가에 관한 사항

Q2. 계약기간 중 공급업자의 사정으로 대리점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대리점법 제9조).

특히, 계약기간 중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래를 중단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대리점 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리점협의회에 참가하는 대리점에게 탈퇴 서약서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대리점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 계약기간 중에 공급업자의 경영정책이 변경되었다는 사유로 대리점에게 충분한 사전고지 기간 없이 일방적으로 대리점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 대리점에게 시정기회 부여 및 소명기회 제공 등 대리점계약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대리점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 공급업자의 요구에 따른 설비투자 등을 했을 경우 대리점이 부담한 비용의 규모에 비하여 이를 회수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 대리점의 노력으로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판매가 현저히 증가하게 되는 것이 분명한 경우, 대리점의 이익을 자신에게 귀속시킬 목적으로 대리점을 일방적으로 직영화하면서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V. 업무상 유의사항(Do & Don'ts)

[Do]

-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법정기재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대리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함

- 대리점이 청약 또는 구입의사를 표시한 제품, 수량 등 주문내역의 정당한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Don't]

- 다음의 방법으로 대리점에게 구입 강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 ① 대리점에 대해 상품을 구입하도록 지속적으로 종용하고 구입하지 않는 대리점에 대해 불이익을 주거나 실적점검을 통해 구입 물량이 적은 대리점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등 대리점이 주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하여 상품을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 ② 대리점의 주문량이 공급업자가 정한 할당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리점의 주문내역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미달된 할당량을 공급하는 행위
 - ③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 비인기 제품, 재고품 등을 일방적으로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 ④ 대리점과 사전 협의 없이 대리점별 매출 계획을 수립하여 시달하고, 대리점이 시달된 매출 물량을 주문하지 아니하면 일방적으로 물량을 공급하거나 구매한 물량의 반품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제한하는 행위
 - ⑤ 대리점별로 이월상품에 대한 구입금액을 할당하고, 임의로 품목이나 수량을 정하여 공급하는 행위
 - ⑥ 신제품에 대한 대리점의 주문량이 생산량에 미달되는 경우 대리점별로 임의로 할당한 재고물량을 공급하는 행위
 - ⑦ 제품 및 품질의 유지 등과 무관하고 대리점이 원하지 않음에도 대리점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다른 사업자의 장비를 공급업자의 장비로 교체하기 위해 공급업자의 장비를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 ⑧ 대리점이 신상품이나 인기상품을 주문할 때 원하지 않는 재고상품이나 비인기상품을 함께 묶음으로만 공급하는 행위
 - ⑨ 공급업자가 지정한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으면 공급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음으로써 대리점으로 하여금 사실상 공급업자가 지정한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 다음의 방법으로 대리점에게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안 됨
 - ① 판매촉진행사 계획을 대리점과 사전에 협의 없이 수립하고, 그에 따라 발생한 판매촉진비용을 대리점에게만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행위

- ② 상품이 판매되는 매장에서 근무하는 판촉사원의 투입기준을 마련하고 투입된 판촉사원을 관리하는 등 실질적으로 고용주로서의 역할을 하였음에도 대리점과의 사전 약정 또는 협의 없이 이들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리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 ③ 대리점이 공급업자의 판매촉진행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대리점에게 그 판매촉진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 ④ 공급업자의 창립기념일, 직원 체육대회, 야유회 등을 실시하면서 협찬금 명목으로 대리점에게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이나 물품 등의 무상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⑤ 공급업자의 필요에 의하여 공급업자의 상품을 대리점 간에 이동시키면서 그 운송비용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대리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 다음의 방법으로 대리점에게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 ① 대리점으로부터 판매계획서와 목표 미달성시 대리점 운영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제출받은 후, 대리점이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대리점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 ② 대리점에게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반품조건부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반품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 ③ 대리점의 판매실적이 판매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대리점의 주문량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현저하게 축소된 물량을 공급하거나 물량을 지연하여 공급하는 행위
 - ④ 대리점이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합리적인 이유없이 다른 대리점에 비하여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가격을 인상하거나 공급가격의 할인율을 불리하게 적용하는 행위
 - ⑤ 대리점과 상품 또는 용역의 결제조건을 사전에 약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리점이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외상매출기간을 단축하거나 지연이자율 등을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 종전보다 결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
 - 다음의 방법으로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 ① 분기별 매출실적이 전년도 동기 실적보다 감소하는 경우 대리점에 지급해오던 기존의 매출지원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는 조건을 일방적으로 추가하여 대리점계약을 변경하는 행위
- ② 계약기간 중에 사전에 합의한 수수료 지급기준이나 위탁판매수수료율 등을 일방적으로 대리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
- ③ 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장비사용이 중단되거나 불가능해짐에 따라 대리점에게 발생한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계약서의 보상처리기준에서 정한 금액보다 삭감하여 지급하는 행위
- ④ 대리점협의회에 참가하는 대리점에게 탈퇴 서약서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대리점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 ⑤ 거래처를 다른 대리점에게 양도하라는 요구를 거부한 대리점에 대해 계약상 의무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판촉 상품을 공급하지 않거나 해당 대리점의 거래처에 파견되어 대리점을 지원하던 공급업자의 순회사원을 철수시키는 행위
- ⑥ 계약기간 중에 대리점의 신용도 등에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대리점의 외상매입에 대한 새로운 유형의 추가 담보를 요구하거나 기존 담보금액을 대폭 증액하는 행위
- ⑦ 계약기간 중에 공급업자의 경영정책이 변경되었다는 사유로 대리점에게 충분한 사전고지 기간 없이 일방적으로 대리점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 ⑧ 대리점에게 시정기회 부여 및 소명기회 제공 등 대리점계약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대리점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 ⑨ 공급업자의 요구에 따른 설비투자 등을 했을 경우 대리점이 부담한 비용의 규모에 비하여 이를 회수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 ⑩ 대리점의 노력으로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판매가 현저히 증가하게 되는 것이 분명한 경우, 대리점의 이익을 자신에게 귀속시킬 목적으로 대리점을 일방적으로 직영화하면서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 ⑪ 반품조건부로 대리점에 공급한 상품이나 제조과정상 하자가 있는 상품의 반품을 제한하는 행위

⑫ 상품의 하자 등 공급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소매업자 또는 소비자로부터 구매가 취소된 상품을 대리점이 반품해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반품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다음의 방법으로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 ① 대리점의 영업직원 채용에 관여하거나 영업직원의 총 정원을 제한하기 위해 대리점이 영업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영업에 필요한 판매코드의 발급을 지연·거부하거나 기존 영업직원의 판매코드를 삭제하는 조건으로 신규 판매코드를 발급받도록 하는 행위
 - ② 대리점의 의사에 반하여 대리점의 영업직원을 공급업자의 직영점 또는 다른 대리점에서 근무하도록 지시하는 행위
 - ③ 다수의 공급업자와 거래하는 대리점에게 공급업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의 상품 공급가격, 공급물량, 결제조건 등의 거래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④ 대리점에게 거래처 내역, 상품 판매가격, 금융거래 내역 등의 정보를 요구하거나 대리점의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정보 등에 접근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행위. 다만, 위탁판매의 경우 사후정산 등 목적에서 행하는 행위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⑤ 대리점의 정상적인 운영과 상관이 없음에도 대리점에게 인테리어 시공업체, 보안경비업체 등을 일방적으로 지정하고 이들 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⑥ 대리점으로 하여금 공급업자가 일방적으로 설정한 영업지역에서만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⑦ 대리점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관련하여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으로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이나 장비 교체 또는 인테리어 재시공을 강요하는 행위

PART 5 표시광고법 해설

I. 표시광고법 개관

1. 표시광고법의 목적

- 표시광고법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개념

구분	내용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에 관한 사항’,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의 내용, 거래 조건, 그 밖에 그 거래에 관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상품의 용기·포장, 사업장 등의 게시물 또는 상품권·회원권·분양권 등 상품등에 관한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에 쓰거나 붙인 문자·도형과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용기·포장
광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에 관한 사항’,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의 내용, 거래 조건, 그 밖에 그 거래에 관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아래 수단/매체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문·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 전단·팸플릿·견본 또는 입장권 - 인터넷, PC통신 - 포스터·간판·네온사인·애드벌룬 또는 전광판 - 비디오물·음반·서적·간행물·영화 또는 연극 - 기타 자기 상품 외의 다른 상품 - 위에 열거된 수단/매체와 유사한 수단 또는 매체

사업자	- 제조업, 서비스업 또는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
사업자단체	• 그 형태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
소비자	• 사업자등이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상품등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3. 공정거래법과의 적용 관계

- 표시광고법은 공정거래법 ‘불공정거래행위 중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등에 대한 특별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짐
- 표시광고법과 공정거래법의 규제 대상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표시광고법이 우선하여 적용됨

II. 행위 유형별 유의사항

1.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표시광고법 제3조)

가. 행위 유형

-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의미함

거짓·과장 표시·광고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체는 50%가 실크(Silk)이고 50%는 레이온(Rayon)인데도 불구하고 "100% 실크(Silk)" 또는 "실크(Silk)"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 전년도 재고분의 학습참고서를 표지만 바꾸어 "개정신판", "완전신판" 등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 **기만적인 표시·광고**

-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의미함

기만적인 표시·광고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휘발유 1ℓ로 ○○km주행”이라고만 하고 그것이 혼잡한 시내에서의 기준인지 또는 고속도로에서의 기준 등인지를 분명히 밝히지 않는 경우 • 공기청정 제품에 대해 극히 제한적인 실험조건에서 확인된 것에 불과한 “유해물질 99.9% 제거” 등의 실험결과만을 강조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도 그와 같은 성능을 발휘할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 키성장 제품의 특허 등록 사실만으로 해당 제품이 키성장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을 **(i)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또는 **(ii)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상품이나 용역**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의미함

부당 비교 표시·광고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V의 가격을 비교·광고함에 있어서 A사의 것은 14인치의 가격을 B사의 것은 20인치의 가격을 비교하여 자사의 제품가격이 저렴하다고 하면서 용량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소비자가 알아보기 어려운 방법으로 표현하는 경우 • 음료수에 대한 판매량을 비교하면서 자사의 제품이 많이 판매되어 인기가 있는 제품이라고 광고하면서 자사의 것은 성수기(2/4분기)가 포함된 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경쟁사의 것은 비수기(4/4분기)가 포함된 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 **비방적인 표시·광고**

- 다른 사업자등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하여 비방하는 행위를 의미함

비방적인 표시·광고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객관적 근거 없이 "××회사(경쟁관계사업자)의 ○○제품은 약효가 전혀 없고 치료가 안 된다"고 표시·광고하는 행위 • 알칼리성 비누와 중성비누가 피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는 알칼리성이 피부에 좋다는 입장과 중성이 피부에 좋다는 입장이 있으나 경쟁사의 알칼리성 비누가 피부를 손상한다고 광고하는 경우

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판단기준

- **반진실성(거짓·과장성 / 기만성 / 부당성 / 비방성)**

- 거짓·과장성 / 기만성 / 부당성 / 비방성의 판단기준은 위 “II. 1. 가. 행위 유형”에서 설명한 바와 같음

- **소비자 오인성**

- 표시·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을 의미함
- 소비자 오인성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자가 아닌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해당 표시·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함
- 소비자를 오인시킬 경향과 가능성만 있으면 충분하고, 실제로 기만당했다는 주장이나 입증은 요구되지 아니함

- **공정거래저해성**

- 광고 그 자체로 인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의미함
- 공정거래저해성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할 우려’를 기준으로 판단함
-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할 경향과 가능성만 있으면 충분하고, 실제로 구매 결정을 방해했다는 주장이나 입증은 요구되지 않음

2. 표시·광고에 관한 일반지침(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공정위고시 제2019-11호)

- 사업자 자신에 관한 표시·광고

일반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가 자신이나 구성사업자의 규모, 연혁, 생산시설, 수상경력, 사업계획, 사업실적, 기술제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표시·광고할 경우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과장하거나 모호하게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함
관련 부당한 표시·광고의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의 생산규모가 국내에서만 가장 큰 규모인데도 "세계최대의 규모"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 단순히 수험교재 판매사업자로서 학원업을 운영하지 않음에도 마치 학원인 것처럼 "학원개강" 등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 가격에 관한 표시·광고

일반지침
<p>다음의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등의 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는 행위

- 제조업자, 유통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소비자가 상품 등을 구입하는 데 단지 권장 또는 참고하게 할 목적으로 희망소매가격 등을 표시·광고하는 행위
- 제조업자 등이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등과 동일한 상품 등에 대하여 일정한 거래지역의 상당수 소매업자가 동 지역 내에서 계속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가격수준을 현저히 초과하여 자기의 희망소매가격 등을 표시·광고함으로써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등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 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비교 표시·광고하는 행위
-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등의 실제 판매하는 가격을 현저히 낮게 보이기 위하여 허위의 경쟁사업자가 가격을 자기의 판매가격과 비교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

관련 부당한 표시·광고의 예시

- 상품에 대하여 일정한 거래지역의 상당수 소매업자가 동 지역 내에서 계속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판매가격이 1,000원 임에도 불구하고 A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가 계속적으로 1,200원 또는 그 이상으로 희망소매가격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 A상품에 대한 자기의 종전거래가격이 1,000원, 자기가 판매하고자 하는 가격이 750원, 동 상품과 유사규격 상품의 종전거래가격이 1,500원일 때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자기의 A상품 판매가격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 원재료, 성분에 관한 표시·광고

일반지침

다음의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함

- 실제 사용되지 않는 원자재나 성분이 포함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 실제 사용된 양보다 많이 포함된 것처럼 과장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
- 실제로는 수입원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원재료를 사용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 사용된 원재료나 성분이 수입된 것을 완제품이 수입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된 원재료나 성분을 가지고 전체의 주된 성분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관련 부당한 표시·광고의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제는 50%가 실크(Silk)이고 50%는 레이온(Rayon)인데도 불구하고 "100% 실크(Silk)" 또는 "실크(Silk)"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 품질, 성능, 효능 등에 관한 표시·광고

일반지침
<p>다음의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 또는 성능이 일정한 수준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당해 수준에 해당한다고 하거나 당해 수준에 해당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 성능이 발휘될 수 있는 판단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일정 성능을 발휘한다고 표시·광고하는 행위 • 일부 또는 부분에 관련되는 품질 또는 성능을 전체에 관련되는 품질 또는 성능인 것처럼 과장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 • 표시·광고된 상품의 성능이나 효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발휘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 특허 등록 자체가 상품의 성능·효능이나 안전성을 인정하는 것은 아닌데도 특허 등록 사실 그 자체만으로 성능·효능의 우수성 또는 안전성 등을 광고하는 경우
관련 부당한 표시·광고의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상적인 작동 상태에서는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환경 기준을 충족하는 친환경 차량인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 키성장 제품의 특허 등록 사실만으로 해당 제품이 키성장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 기능성 신발을 착용하고 걷기만 해도 다이어트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객관적인 실증근거 없이 광고하는 경우

- 규격, 용량, 수량에 관한 표시·광고

일반지침
<p>다음의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격이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당해 규격에 해당한다고 하거나 해당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 실제 용량 또는 수량과 다르게 용량 또는 수량을 표시·광고하는 행위 • 용량을 실제보다 크게 나타내기 위하여 외형의 크기를 내형의 크기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관련 부당한 표시·광고의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S규격 또는 외국공인규격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KS규격" 또는 "외국기관 등에 의하여 공인된 규격"이라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 어떤 냉장고의 실내용적은 "250ℓ"인데도 불구하고 당해 냉장고의 용량을 표시·광고함에 있어서 외형적인 "300ℓ"를 기준으로 하여 "300ℓ형 신모델상품 개발"이라고만 표시·광고하여 마치 내용적 300ℓ형을 새롭게 개발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포장 용기상 표시용량은 "20kg(Net)"인데도 불구하고 실제 내용량은 "20kg 미만"인 경우 • -냉방기나 온방기의 경우 적정한 사용면적은 "15평"인데도 "24평형"이라고 과장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 제조일자, 유효기간 등에 관한 표시·광고

일반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의 제조일자, 포장일자, 유효기간 등을 표시·광고할 경우 사실과 다르게 또는 모호하게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함
관련 부당한 표시·광고의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일자로부터 "○○일간 유효"라고만 하고 제조일자는 표시·광고하지 아니하거나 제조일자 또는 유효기간을 소비자가 식별하기 곤란하게 표시

- 광고함으로써 최근에 제조되거나 사용 등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소모 또는 마모되는 것을 영구히 또는 사실보다 상당히 장기간 존속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제조방법에 관한 표시·광고

일반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의 제조방법에 관하여 표시·광고할 경우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또는 모호하게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함
관련 부당한 표시·광고의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동" 또는 반자동"의 생산설비로 제조된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자동화 생산설비" 또는 "최근컴퓨터생산시설"로 생산된 상품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기술제휴계약이나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단지 기술개발시 ○○국 A사에서 일정기간동안 기술연수한 사실을 "○○국 A사와 기술제휴"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 일반소비자가 손으로 만든 상품을 선호하고 있다는 점을 착안하여 기계로 만든 상품(공예품, 면)인데도 손으로 만든 상품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특징에 관한 표시·광고

일반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등의 특징을 표시·광고할 경우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표시·광고하거나 모호하게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함
관련 부당한 표시·광고의 예시

- 사용된 주원료가 천연의 식물성원료이기는 하지만 여타 부원료와 화학반응시켜 얻어진 상품을 "천연○○○"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 "반자동"을 가지고 "자동" 또는 "전자동"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 전년도 재고분의 학습참고서를 표지만 바꾸어 "개정신판", "완전신판" 등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 원산지, 제조자에 관한 표시·광고

일반지침

다음의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함

- 국내에서 제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수출 불합격품 또는 수출반품을 포함한다) 외국문자, 외국어 등으로만 표시·광고함으로써 그 표시·광고된 내용으로 보아서는 국산품인지 수입품인지를 식별하기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표시·광고하는 행위
- 외국에서 수입된 상품을 마치 국산품인 것처럼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또는 당해 상품의 원산지와 관계없는 국가의 문자, 국기 등을 사용하여 표시·광고하면서 실제 원산지를 표시·광고하지 아니하거나 소비자가 이를 식별하기 곤란하게 표시·광고하는 행위
- 외국회사와 기술제휴하여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상품인 경우에 외국상표나 외국제조회사의 명칭만 표시·광고하고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이라는 사실은 표시·광고하지 아니하거나 소비자의 식별이 곤란하게 표시·광고하는 행위
- 일부재료나 성분만 수입되고 실제로는 국내에서 제조, 조립 또는 가공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생산 또는 수입된 것처럼 표시·광고하고 제조업자를 표시·광고하지 아니한 행위
- 자기가 제조하는 상품에 타사업자의 상표나 상호를 표시·광고하여 타사업자가 제조한 것처럼 표시·광고하거나 소비자가 식별하기 곤란할 정도로 타사업자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표시·광고함으로써 일반소비자로 하여금 제조자를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
- 국내 특정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이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선호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당해 상품이 국내 유명산지에서 생산된

<p>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자 식별이 곤란한 제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구입·판매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사업자가 공급한 제품만을 판매하는 것처럼 그 사업자의 상표 또는 상호를 표시·광고하는 행위
--

관련 부당한 표시·광고의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에서 제조된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상품사용설명서, 포장용기 등에 영어로 표기함으로써 당해 상품이 마치 미국산 상품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외국의 유명상표·제조업체로고·제품디자인·포장용기 등이 적법하게 사용될 수 없는 국내제조상품에 대하여 동 상표 등을 이용하거나 이를 모사하여 표기함으로써 외국산 상품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저개발국에서 수입한 완구류에 대하여 원산지 또는 제조원을 표시·광고하지 아니하고 한글로 상품설명서를 작성하거나 태극기를 그려 넣어 마치 국산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거나 원산지 또는 제조원을 표시·광고하더라도 소비자가 이를 식별하기가 곤란하게 표시·광고하는 경우 • 한국에서 제조하였거나 외국회사와 기술제휴하여 국내에서 생산 또는 반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조립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Made in U.S.A"등 외국상품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 보증에 관한 표시·광고

일반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등에 관하여 보증·품질사후관리(A/S)에 관하여 표시·광고하고자 할 경우 그 내용, 범위, 방법, 기간, 장소, 책임자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함
--

관련 부당한 표시·광고의 예시

- 보증의 내용, 기간 등에 관하여 표시·광고함이 없이 막연히 "100% 품질 보증" 또는 "무조건 보증"이라고만 표기함으로써 사실과 다르게 완벽하게 보증이 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등 주요도시에 한정된 A/S조직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완벽한 A/S조직", "전국적인 A/S조직망"등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 추천, 권장에 관한 표시·광고

일반지침

다음의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함

- 전문가, 연구기관, 유명단체에 의한 추천, 권장, 수상 등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 사실이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 당해 상품 등을 실제로 구입·사용해 본 사실이 없는 소비자의 추천을 표시·광고하는 행위
- 당해 상품에 관하여 실제로 시험, 조사, 검사를 한 사실이 없는 당해 부문 전문가의 추천을 표시·광고하는 행위
- 참가상 또는 순번상을 품질이 우수함으로 인하여 수상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 부분적인 품질 또는 규격과 관련한 상을 전품질 또는 전규격의 상을 수상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 수상자가 현존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당해 수상자가 생산, 조립, 가공, 제작 등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 블로그·인터넷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해 광고하면서 소비자들이 쉽게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공개하지 않는 행위
- 구매링크 등 매출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거나 후기 작성 후 구매대금을 환급받는 등 경제적 대가를 미래·조건부로 받으면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는 행위

관련 부당한 표시·광고의 예시

- ○○신문사가 매년 실시하는 ○○인기상품 선정행사에서 대상이 아닌 10대 부문 히트상품으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으로 선정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단지 1년 중 하반기 히트상품으로 선정된 사실을 당해년도 전체의 히트상품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용도,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에 관한 표시·광고

일반지침

-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등에 대한 용도,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에 관하여 표시·광고할 경우 상품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표기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또는 현저히 멸실되기 쉬운 형태로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함

관련 부당한 표시·광고의 예시

- 사용상의 주의사항, 용도 등이 기재된 Label이 소비자가 선의의 주의를 기울였는데 불구하고 용기 등으로부터 쉽게 떨어지도록 부착하여 표시하는 경우
- 폭발적, 기타 위험 또는 위해한 상품의 용기나 포장지 등에 동 내용물이 폭발, 위험 또는 위해한 것이라는 내용을 표시·광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 소비자가 흡입하게 되는 제품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면서 흡입 시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정보나 흡입할 경우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 등을 은폐·누락하는 경우

- 경쟁사업자 및 경쟁관계상품에 관한 비교표시·광고

일반지침

- **(거짓의 표시·광고)** 경쟁사업자의 규모, 연혁 등 경쟁사업자 자신에 관한 사항이나 경쟁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의 가격, 품질 등 거래내용 또는 거래조건 등에 관하여는 사실대로 광고하여야 함
-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의 표시·광고)** 자기자신이나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나타내기 위하여 "최대", "최고", "최초", "제일", "유일"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의 용어를 사용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함. 단, 사업자가 명백히 입증하거나 또는 객관성이 있는 자료에 의해 절대적 표현이 사실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경쟁사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음
- **(경쟁사업자의 것과 비교 표시·광고)** 자기의 것과 경쟁사업자의 것을 비교하여 표시·광고함에 있어서는 사실대로 적정하게 광고하여야 함
- **(중상·비방하는 내용의 표시·광고)** 경쟁사업자의 것에 관하여 중상·비방을 하여서는 아니 됨

관련 부당한 표시·광고의 예시

- "최초"를 입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최초로 개발한 ○○제품"으로 표시하는 경우
- 서울~부산 간의 항공요금만을 비교하면서 마치 국내 전노선에 대한 요금 비교인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 침대 스프링 도금여부는 침대수명과 관련이 없음에도 '침대를 사신지 5년이 지났다면 십중팔구 귀하는 지난 밤 녹슨 스프링 위에서 주무셨습니다. 침대를 1~2년 쓰고 버리실 생각이라면 ... 굳이 녹슬지 않는 ○○침대를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표현함으로써 타사 침대는 문제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 누락, 은폐 등에 의한 기만적인 표시·광고

일반지침

- 사업자 자신이나 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에 대하여 표시·광고함에 있어서는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표기하여야 하

며 제품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나 내용을 누락하거나 은폐하여서는 아니됨

관련 부당한 표시·광고의 예시

- 유행상품을 모아 한 세트로 팔면서 상품구성에 있어서 구식모델을 일부 섞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밝히지 아니하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 광고하는 아파트가 실제 입주일 까지 상당기간이 걸릴 것이 예상됨에도 곧 입주가 가능한 느낌을 주는 표현을 하고 실제 입주일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

- 기타의 거래내용 및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의 표시·광고

일반지침

- 사업자가 경품류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표시·광고함에 있어서는 사실대로 명확하게 표시·광고하여야 함
- 반품, 교환, 대금지불방법, 상품우송료 등 부대비용, 금융이용 등 기타 거래내용 및 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표시·광고함에 있어서는 사실대로 광고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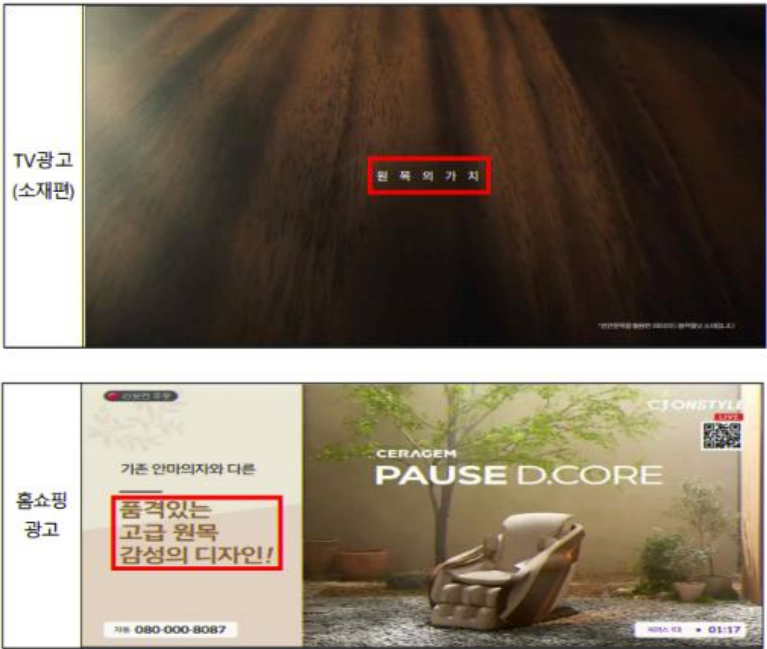
관련 부당한 표시·광고의 예시

- "무료증정"이라고 하였는데 불구하고 실제로는 특정상품을 일정액이상 구입해야 증정하는 경우
- "선착순 100명에 한함" 또는 "○월 ○일부터 ×월 ×일까지"등 경품제공수량 또는 기간에 관한 구체적 제한내용을 명시하지 아니한 채 특정 상품을 경품류로 제공한다고 표시·광고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매장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경품류제공을 거절하는 경우

3. 제재 사례

-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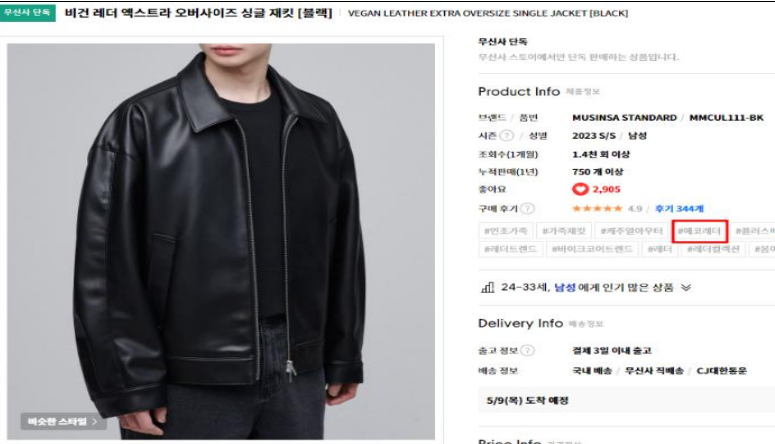
(주)세라젬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공정위 2024. 4. 3. 의결 제2024-110호)

<p>행위 사실</p>	<p>[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거짓·과장의 표시·광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라젬은 안마의자를 판매하면서 제품의 목재 부분 소재가 무늬목을 접합한 합판임에도 불구하고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광고함
<p>공정위 판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제품의 목재 부분 소재가 원목인지 여부를 직접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자가 제시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일부 광고에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제시된 단서문구만으로는 합판임을 알기 어려우므로 원목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음 •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과징금 1.28억원 부과
<p>관련 광고 이미지</p>	

<p>메가스터디교육(주) 및 (주)챔프스터디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공정위 2025. 1. 10. 의결 제2025-004호, 제2025-005호)</p>	
<p>행위 사실</p>	<p>[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거짓·과장의 표시·광</p>

	<p>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 업체는 특정 날짜 또는 시간에 한하여 상품의 가격·구성 등에 있어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광고하였으나, 해당 날짜 또는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마감날짜와 일부 광고문구만 변경한 동일한 가격·구성의 상품을 반복적으로 광고한 점에서 거짓·과장 광고행위를 하였음 <p>[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 기만적인 표시·광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챔프스터디는 마감기간별로 매번 기수를 부여하는 ‘기수제’를 운영하면서 해당 기수가 경과하여 다음 기수로 바뀌더라도 직전 광고와 동일한 조건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은폐·누락하였으며, 광고화면 하단에 고정적으로 디지털타이머를 함께 게시하여 소비자에게 ‘마감’ 전에 구매결정을 해야 할 것 같은 강한 인상을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등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결정을 방해한 기만적 광고행위를 하였음
<p>공정위 판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험준비생에게 동일 가격·구성 등으로 구매할 기회가 광고에 기재된 특정 날짜까지만 한정되는 것으로 왜곡된 인상을 전달함으로써 소비자의 심리적 압박감을 유발하는 등 상품 구매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음 •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2.5억원(메가스터디교육), 5.01억원(챔프스터디) 부과

							
<p>관련 광고 이미지</p>	<table border="1"> <tr> <td data-bbox="550 996 997 1075">72</td> <td data-bbox="997 996 1356 1075"> <p>토익인강 수강료 최대 300%+토익시험 응시료까지 0원 시즌 1,2,3,4,5</p> <p>93기(2019.03.26~현재)</p> </td> </tr> <tr> <td data-bbox="550 1075 997 1657"> <p>화면중앙</p> </td> <td data-bbox="997 1075 1356 1657">  </td> </tr> <tr> <td data-bbox="550 1657 997 1825"></td> <td data-bbox="997 1657 1356 1825"> <p>오늘마감 90기 토익인강 1위 해커스</p> <p>출석or성적 딱 1개만 해도!</p> <p>해커스 토익인강</p> <p>수강료 최대 300% 환급반</p> <p>수강료+응시료 0원으로 토익 끝내기</p> <p>오늘마감 90기까지 남은시간 00 day 07:45:51</p> <p>마감 종료 전 신청하기 ></p> <p>*기수별 특별혜택으로 수강료 최대 300% 환급을 특별 혜택으로 드립니다</p> </td> </tr> </table>	72	<p>토익인강 수강료 최대 300%+토익시험 응시료까지 0원 시즌 1,2,3,4,5</p> <p>93기(2019.03.26~현재)</p>	<p>화면중앙</p>			<p>오늘마감 90기 토익인강 1위 해커스</p> <p>출석or성적 딱 1개만 해도!</p> <p>해커스 토익인강</p> <p>수강료 최대 300% 환급반</p> <p>수강료+응시료 0원으로 토익 끝내기</p> <p>오늘마감 90기까지 남은시간 00 day 07:45:51</p> <p>마감 종료 전 신청하기 ></p> <p>*기수별 특별혜택으로 수강료 최대 300% 환급을 특별 혜택으로 드립니다</p>
72	<p>토익인강 수강료 최대 300%+토익시험 응시료까지 0원 시즌 1,2,3,4,5</p> <p>93기(2019.03.26~현재)</p>						
<p>화면중앙</p>							
	<p>오늘마감 90기 토익인강 1위 해커스</p> <p>출석or성적 딱 1개만 해도!</p> <p>해커스 토익인강</p> <p>수강료 최대 300% 환급반</p> <p>수강료+응시료 0원으로 토익 끝내기</p> <p>오늘마감 90기까지 남은시간 00 day 07:45:51</p> <p>마감 종료 전 신청하기 ></p> <p>*기수별 특별혜택으로 수강료 최대 300% 환급을 특별 혜택으로 드립니다</p>						

4개 패션 SPA 브랜드 사업자의 친환경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위 2025. 5. 15.자 보도자료)	
행위 사실	<p>[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거짓·과장의 표시·광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과 가치소비에 관심이 많은 젊은 층들을 목표로 한 비건 레더(Vegan Leather) 등 인조가죽을 포함한 가죽제품과 관련된 친환경 위장 표시·광고(이른바 ‘그린워싱’)를 하였음
공정위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들은 자체적으로 원단을 생산하지 않고 기계작된 원단을 해외에서 매입하여 제품을 생산하였고, 이에 대하여 특별히 친환경적인 공정을 주문하였다거나 거쳤다고 볼 수 없음 • 경고(4개 사업자 모두 혐의 인정 및 자진 시정)
관련 광고 이미지	

환경을 생각하는 비건 레더



VEGANLEATHER

- 천연 가죽과 유사한 외관 구현
- 자연스러운 광택과 매끄러운 질감이 고급스러운 소재
- 적당한 두께로 편안한 착용감



이

COLOR / FABRIC

동물 살생을 하지 않은 지속가능한
친환경 소재인 비건 레더로

내구성이 좋고 오염에 강하며,
부드러운 터치감의 자켓입니다.

컬러는 베이직한 블랙부터 은은하고
부드러운 느낌의 민트 컬러 두가지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p>에르 스웨이드 미니 원피스 □ ₩ 49,900</p>
--	--


<p style="text-align: center;">(주)에듀월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건 (공정위 2025. 3. 20. 의결 제2025-50호)</p>	
<p>행위 사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듀월 온라인 이벤트에서 고가 경품을 지급하는 것처럼 광고했으나, 실제로 해당 경품을 구매하거나 지급하지 않음
<p>공정위 판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 기만적인 표시·광고

<p style="text-align: center;">다이슨코리아(유)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공정위 2019. 12. 30. 의결 제2019-309호)</p>	
<p>행위 사실</p>	<p>[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 기만적인 표시·광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이슨코리아(유)는 소셜 인플루언서들에게 자신의 전자제품에 관한 광고를 인스타그램에 게시해 줄 것을 요청하고 그에 대한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 인스타그램의 게시물에 자신과의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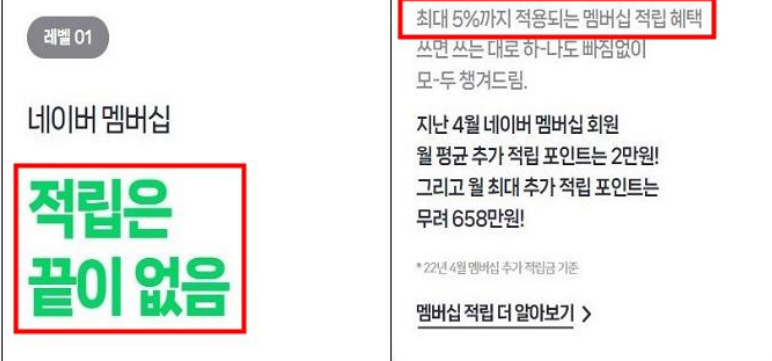
	<p>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고 마치 소셜 인플루언서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제품을 광고한 것처럼 광고함</p>
<p>공정위 판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가 지급 사실이 표시되지 않은 게시물을 접한 소비자는 해당 게시물이 경제적 관계를 기초로 작성된 상업적 광고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인플루언서가 개인의 의사에 따라 의견, 평가, 느낌 등의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으며, 이에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받을 우려가 있음 •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과징금 2,900만원 부과

<p>(주)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공정위 2025. 3. 11. 의결 제2025-043호)</p>	
<p>행위 사실</p>	<p>[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 기만적인 표시·광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이 소유·운영하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채널에 자신이 유통·홍보하는 음원·음반에 대한 게시물을 작성하면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채널의 계정정보, 게시물 등에 자신과의 관련성을 공개하지 아니하고 은폐 또는 누락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하였음 • 제3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이 유통·홍보하는 음원·음반에 대한 추천·소개글을 작성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의 게시물 등에 자신과의 관련성을 공개하지 아니하고 은폐 또는 누락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하였음 • 광고대행사 및 소셜 인플루언서들에게 자신이 유통·홍보하는 음원·음반에 대한 추천·홍보글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채널에 게시해 줄 것을 요청하고 그에 대한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p>각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채널의 게시물 등에 자신과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아니하고 은폐 또는 누락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하였음</p>
<p>공정위 판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게시물 작성자가 음원·음반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 혹은 일반소비자인지, 아니면 음원·음반을 유통·판매하는 광고주인지는 게시물의 신뢰도와 소비자의 음원·음반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카카오엔터가 이러한 사실을 은폐·누락한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행위라고 판단함 • 특히 카카오엔터가 자사 유통 음원·음반 광고에 활용해온 SNS 채널들의 팔로워 수는 총 411만 명에 달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의 가입자 수도 최대 150만 명에 이르러 음악 소비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과징금 3.9억원 부과
<p>관련 광고 이미지</p>	 <p>The image shows four screenshots of social media posts from the account '노래는 듣고 다니나' (I Listen to Music and Go). Each post has some text redacted with black boxes. The posts are dated as follows: 2021년 5월 22일, 2021년 7월 24일, 2021년 1월 6일, and 2021년 7월 12일. The redacted text appears to be promotional content for music, with some visible words like '목소리', '곡', '가수', and '노래'.</p>

	<p>음악 잔잔한 라이브 공연 좋아하는 분들께 추천해주고픈 영상</p> <p>tory https://www.dmitory.com/garden/198393309</p> <p>머칠 전에 보 영상인데 특유의 레트로한 노래 분위기와 중간중간 잔잔한 라이브 멘트들이 7080 라이브 카페 같아설ㅋㅋㅋㅋㅋ 이런 분위기 좋아하는 분들도 있을까 싶어 공유함!! 나름 라디오처럼 틀어놓으니까 좋더라..ㅎㅎ</p> 
	 <p>idolissue · 팔로우</p> <p>idolissue 벌써 노래 좋다는 반응 나오 고있음 세련된 청량같은 느낌! 유비도 진짜 잘했었다!!!!</p> <p>#idol #idolissue #아이돌이슈 25주</p> <p>xhaeny 이것이 진짜 25주 음악요 3개 댓글 달기</p> <p>mingqoo @noweyh.pp 노래 들어버 개좋다</p> <p>내가 좋아하는 이유 가사: 송하영 2020년 3월 24일 여기 발표한 신곡 라이브 음색문질에 감성 뛰어나고 나만 알고 있다면 아까운 곡인 듯!!!!</p> <p>l_music_u · 팔로우</p> <p>l_music_u [redacted] 신곡 #어쿠스틱 #듀엣 #틱톡 #음색강패 [redacted]</p> <p>오랜만에 나온 너드미의 대명사 의 신곡 [redacted] 저 기에 [redacted] 피쳐링이라니!</p> <p>음색강패 둘이 만나서 음향뿐만 아니 라 이렇게 라이브 영상이라니! 밤마 다 한번씩 듣기 딱 좋네요 ㅎㅎ 다음 내 일 출근을 위해 [redacted] 숙 면하세요</p> <p>Artist: [redacted] Music: [redacted]</p> <p>연대급 노래 동영상 노래 2018년 3월 7일 · 팔로우</p> <p>개요 댓글</p> <p>듣고 자면 꿈에서 작사랑 중인 이성과 연애 체험할 수 있 다는 노래 !! 대박 신기하다 ㄷㄷ 노래 제목: [redacted]</p>


<p>네이버(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공정위 2025. 1. 24. 의결 제2025-010호)</p>	
<p>행위 사실</p>	<p>[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 기만적인 표시·광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이버플러스멤버십의 적립 혜택에 대해 광고하면서 소비자들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고려사항인 제한사항을 주된 광고 또는 주된 광고와 가까우면서 소비자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위치에 기재하지 않는 것과 같이 기만적으로 광고함 • 네이버플러스멤버십 가입 시 제공되는 디지털콘텐츠 혜택의 개수에 대해 광고하면서 소비자들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고려사항인 제한사항을 주된 광고 또는

	<p>주된 광고와 가까우면서 소비자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위치에 기재하지 않는 것과 같이 기만적으로 광고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이버플러스멤버십 가입 시 제공되는 디지털콘텐츠의 이용 범위에 대해 광고하면서 소비자들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고려사항인 제한사항을 광고에 기재하지 않는 것과 같이 기만적으로 광고하는 행위함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 네이버플러스멤버십 가입 시 제공되는 디지털콘텐츠의 이용 범위에 대해 광고하면서 이용 범위에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제한’ 과 같이 이용 범위에 제한이 없는 것처럼 기재하는 등 거짓 또는 과장된 내용으로 광고함
<p>공정위 판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요한 제한사항임에도 이를 주된 광고내용과 근접하여 제시하지 않고, 여러 번 클릭해야만 볼 수 있도록 다른 광고페이지에 배치함으로써 사실상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광고하였음 •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p>관련 광고 이미지</p>	

	<div data-bbox="566 358 1332 694"> <p>독보적인 적립을 넘어 즐거움까지 책임지고 있지 이렇게 많은 디지털 콘텐츠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네이버 웹툰, 시리즈 쿠팡 49개 이용자는 월소설 323화 웹툰 164화 열람 시리즈물 최신 영화 1편 할인으로 13,647원 할인 시리즈물 영화 무제한 이용권으로 233시간 영화 시청 스포스 무제한 이용권으로 생중계 18경기 시청 다들 무슨 무제한 이용권으로 총 66편 26시간 시청 </div> <table border="1" data-bbox="550 705 1348 1444"> <thead> <tr> <th>추진 광고페이지</th> <th>두 번째 안내페이지</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550 705 949 1444"> <p>독보적인 적립을 넘어 즐거움까지 책임지고 있지 이렇게 많은 디지털 콘텐츠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네이버 웹툰, 시리즈 쿠팡 49개 이용자는 월소설 323화 웹툰 164화 열람 시리즈물 최신 영화 1편 할인으로 13,647원 할인 시리즈물 영화 무제한 이용권으로 233시간 영화 시청 스포스 무제한 이용권으로 생중계 18경기 시청 다들 무슨 무제한 이용권으로 총 66편 26시간 시청 </td> <td data-bbox="949 705 1348 1444"> <p>쇼핑 적립 디지털 콘텐츠 이용권</p> <p>쇼핑할 때마다 최대 5% 적립</p> <p>만 달 무료, 그 이후는 월 4,900원으로 즐겨보세요! 년 단위로 결제하면 더 저렴합니다. 가족, 친구를 무용으로 초대할 수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이버페이 포인트 최대 5% 적립 • 대형 디지털 콘텐츠 이용권 제공 다들 무슨 무제한, 시리즈물 영화 무제한, SPOTV 영화 스포츠 무제한, 웹툰 시리즈, 웹툰 계정권 등 9편 • 가족, 친구 9명까지 함께 멤버십 혜택 공유 <p>확실한 멤버보장! 재일 클라쓰는 디지털 콘텐츠 이용권 (최 1개 선택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들 무슨 무제한 다들 무슨 웹툰 WOO 무제한 시청 SPOTV NOW 스포츠 무제한 TV 채널 및 VOD 무제한 시청 네이버 웹툰 시리즈 쿠팡 49개 최신 웹툰이 포함된 모든 웹툰 및 영화 열람 네이버 시리즈물 영화 다들 무슨 영화 무제한 이용권 모든 영화 1편 할인 네이버 콘텐츠 체험팩 월별 시리즈물 쿠팡 20개, 시리즈물 영화 3,360개, VIBE 300개, MYBOX 1808 이용권, 오디오북 및 오디오북 대 외 3,000명 할인 </td> </tr> </tbody> </table>	추진 광고페이지	두 번째 안내페이지	<p>독보적인 적립을 넘어 즐거움까지 책임지고 있지 이렇게 많은 디지털 콘텐츠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네이버 웹툰, 시리즈 쿠팡 49개 이용자는 월소설 323화 웹툰 164화 열람 시리즈물 최신 영화 1편 할인으로 13,647원 할인 시리즈물 영화 무제한 이용권으로 233시간 영화 시청 스포스 무제한 이용권으로 생중계 18경기 시청 다들 무슨 무제한 이용권으로 총 66편 26시간 시청 	<p>쇼핑 적립 디지털 콘텐츠 이용권</p> <p>쇼핑할 때마다 최대 5% 적립</p> <p>만 달 무료, 그 이후는 월 4,900원으로 즐겨보세요! 년 단위로 결제하면 더 저렴합니다. 가족, 친구를 무용으로 초대할 수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이버페이 포인트 최대 5% 적립 • 대형 디지털 콘텐츠 이용권 제공 다들 무슨 무제한, 시리즈물 영화 무제한, SPOTV 영화 스포츠 무제한, 웹툰 시리즈, 웹툰 계정권 등 9편 • 가족, 친구 9명까지 함께 멤버십 혜택 공유 <p>확실한 멤버보장! 재일 클라쓰는 디지털 콘텐츠 이용권 (최 1개 선택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들 무슨 무제한 다들 무슨 웹툰 WOO 무제한 시청 SPOTV NOW 스포츠 무제한 TV 채널 및 VOD 무제한 시청 네이버 웹툰 시리즈 쿠팡 49개 최신 웹툰이 포함된 모든 웹툰 및 영화 열람 네이버 시리즈물 영화 다들 무슨 영화 무제한 이용권 모든 영화 1편 할인 네이버 콘텐츠 체험팩 월별 시리즈물 쿠팡 20개, 시리즈물 영화 3,360개, VIBE 300개, MYBOX 1808 이용권, 오디오북 및 오디오북 대 외 3,000명 할인
추진 광고페이지	두 번째 안내페이지				
<p>독보적인 적립을 넘어 즐거움까지 책임지고 있지 이렇게 많은 디지털 콘텐츠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네이버 웹툰, 시리즈 쿠팡 49개 이용자는 월소설 323화 웹툰 164화 열람 시리즈물 최신 영화 1편 할인으로 13,647원 할인 시리즈물 영화 무제한 이용권으로 233시간 영화 시청 스포스 무제한 이용권으로 생중계 18경기 시청 다들 무슨 무제한 이용권으로 총 66편 26시간 시청 	<p>쇼핑 적립 디지털 콘텐츠 이용권</p> <p>쇼핑할 때마다 최대 5% 적립</p> <p>만 달 무료, 그 이후는 월 4,900원으로 즐겨보세요! 년 단위로 결제하면 더 저렴합니다. 가족, 친구를 무용으로 초대할 수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이버페이 포인트 최대 5% 적립 • 대형 디지털 콘텐츠 이용권 제공 다들 무슨 무제한, 시리즈물 영화 무제한, SPOTV 영화 스포츠 무제한, 웹툰 시리즈, 웹툰 계정권 등 9편 • 가족, 친구 9명까지 함께 멤버십 혜택 공유 <p>확실한 멤버보장! 재일 클라쓰는 디지털 콘텐츠 이용권 (최 1개 선택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들 무슨 무제한 다들 무슨 웹툰 WOO 무제한 시청 SPOTV NOW 스포츠 무제한 TV 채널 및 VOD 무제한 시청 네이버 웹툰 시리즈 쿠팡 49개 최신 웹툰이 포함된 모든 웹툰 및 영화 열람 네이버 시리즈물 영화 다들 무슨 영화 무제한 이용권 모든 영화 1편 할인 네이버 콘텐츠 체험팩 월별 시리즈물 쿠팡 20개, 시리즈물 영화 3,360개, VIBE 300개, MYBOX 1808 이용권, 오디오북 및 오디오북 대 외 3,000명 할인 				

-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p>(주)에듀피디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건 (공정위 2023. 4. 7. 의결(약) 제2023-034호)</p>	
<p>행위 사실</p>	<p>[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3호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듀피디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해 9급 공무원 시험 관련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비교 대

	<p>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고 객관적 근거 없이 ‘가격할인 혜택 제공 여부’에 있어서 자기 상품이 타사 상품보다 우량하다고 광고함</p>
<p>공정위 판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가 직접 피심인의 상품과 다른 사업자의 상품을 비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심인의 광고를 접할 경우 가격할인 혜택을 제공받기 위해 구매결정을 서두르거나 구매하지 않을 상품을 구매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음. 따라서 이 사건 광고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9급 공무원 시험 관련 온라인 강의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공표명령
<p>관련 광고 이미지</p>	

- 비방적인 표시·광고

<p>(주)바이맘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공정위 2020. 9. 8. 의결(약) 제2020-053호)</p>	
<p>행위 사실</p>	<p>[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 기만적인 표시·광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맘은 소속 직원들을 통해 바이럴마케팅 방식으로 광고 하면서 광고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일반소비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경쟁사업자의 상품을 사용한 소비자가 호홉기 질 환 또는 피부질환을 앓은 것처럼 광고함 <p>[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4호 비방적인 표시·광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맘은 FRP 폴대에서 발생하는 분진으로 인하여 결막염, 피부염, 호흡기 질환 등이 유발되는 것처럼 경쟁사업자의 상품의 위험성을 과장하여 광고함 			
공정위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을 통해 공유되는 사용후기, 상품에 대한 평가 등은 소비자가 실제 상품을 사용하면서 얻은 경험 등을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인식되므로 인터넷 카페·블로그, 상품판매페이지 등에 게재된 이 사건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다른 소비자들이 FRP 소재로 제작된 폴대로 인해 실제로 질병을 앓거나, 위험에 노출되었다고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으므로, 소비자 오인성이 인정됨 •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관련 광고 이미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 style="padding: 5px;">광고 내용</td> </tr> <tr> <td style="padding: 5px;"> <p>홈페이지 상품후기란 ‘알인알6 너무 마음에 들어!! 난방비절약’ 게시글⁸⁾ 발췌</p> <p>보통 저가의 난방텐트는 유리섬유? 재질으로 폴대를 만들더라구요. 그게 만약 실수로 깨지면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유리 파편이 엄청나게 생긴데요;;</p> <p>남편이 유리파편 강박증같은 게 있어서 이 알루미늄 폴대때문이라도 구입기준에 딱 맞았다는~</p> </td> </tr> <tr> <td style="padding: 5px;"> <p>·난방텐트 구매전 check list</p> <p>일반 난방텐트에 쓰는 화이버글라스 폴대는 위험합니다!</p> <p>파손 시 절단면이 날카로워 노약자에게 상해의 위험 위험합니다!</p> <p>제조공정에 많은 미세분진 발생으로 유리가루가 폴대에 응겨붙고 사용중 마찰과 마모에 의해 지속적으로 발생.</p> </td> </tr> </table>	광고 내용	<p>홈페이지 상품후기란 ‘알인알6 너무 마음에 들어!! 난방비절약’ 게시글⁸⁾ 발췌</p> <p>보통 저가의 난방텐트는 유리섬유? 재질으로 폴대를 만들더라구요. 그게 만약 실수로 깨지면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유리 파편이 엄청나게 생긴데요;;</p> <p>남편이 유리파편 강박증같은 게 있어서 이 알루미늄 폴대때문이라도 구입기준에 딱 맞았다는~</p>	<p>·난방텐트 구매전 check list</p> <p>일반 난방텐트에 쓰는 화이버글라스 폴대는 위험합니다!</p> <p>파손 시 절단면이 날카로워 노약자에게 상해의 위험 위험합니다!</p> <p>제조공정에 많은 미세분진 발생으로 유리가루가 폴대에 응겨붙고 사용중 마찰과 마모에 의해 지속적으로 발생.</p>
광고 내용				
<p>홈페이지 상품후기란 ‘알인알6 너무 마음에 들어!! 난방비절약’ 게시글⁸⁾ 발췌</p> <p>보통 저가의 난방텐트는 유리섬유? 재질으로 폴대를 만들더라구요. 그게 만약 실수로 깨지면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유리 파편이 엄청나게 생긴데요;;</p> <p>남편이 유리파편 강박증같은 게 있어서 이 알루미늄 폴대때문이라도 구입기준에 딱 맞았다는~</p>				
<p>·난방텐트 구매전 check list</p> <p>일반 난방텐트에 쓰는 화이버글라스 폴대는 위험합니다!</p> <p>파손 시 절단면이 날카로워 노약자에게 상해의 위험 위험합니다!</p> <p>제조공정에 많은 미세분진 발생으로 유리가루가 폴대에 응겨붙고 사용중 마찰과 마모에 의해 지속적으로 발생.</p>				

4. 자주 묻는 질의응답(FAQ)

Q1. 자사 상품광고에 ‘1위’, ‘최대’, ‘최고’와 같은 표현을 사용해도 되나요?
<p>명백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p>

따라서, 명백하게 입증하거나 객관성 있는 자료에 의해 절대적 표현이 사실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2. 자사 상품 광고 시 타사 상품과 비교하면서 광고를 할 경우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자사 상품과 타사 상품을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시, (i) 경쟁사업자의 것에 관하여 허위의 내용을 인용하여 비교표시·광고하거나, (ii) 사실과 같다 하더라도 동일 조건하에서 비교하지 않고 표시·광고하거나, (ii) 사업자 또는 상품 등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하면서 마치 전체에 대한 비교인 것처럼 표시·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타사 상품에 관하여 객관적 근거 없는 허위의 내용으로 중상·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기하여 비방하는 표시·광고행위 역시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타사명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하더라도 어느 사업자를 지칭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타사 상품에 대한 비교표시·광고에 해당합니다.

III. 위반 시 제재

1. 시정조치

-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행위의 중지,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정정광고, 기타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표시광고법 제7조)

2. 과징금

-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는 경우 관련매출액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 위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할 수 있음(표시광고법 제9조)

3. 형사처벌 / 양벌규정

-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표시광고법 제17조)
-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도 그 대표자 등과 함께 처벌(표시광고법 제18조)

4. 손해배상

-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짐(표시광고법 제10조)

IV. 업무상 유의사항(Do & Don'ts)

[D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시·광고의 내용은 객관적인 사실이나 자료에 근거하여야 함 • 표시·광고 시 섹타나인에 불리한 정보라도 적절한 수준에서 고지
[Do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실과 다른 표시·광고 또는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표시·광고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 사실을 은폐·축소 또는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는 표시·광고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 비교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의 상품등을 다른 사업자의 그것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는 내용을 담은 표시·광고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 다른 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하여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PART 6 전자상거래법 해설

I. 전자상거래법 개관

1. 전자상거래법의 목적

-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
-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구입하는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음. 다만, 사업자가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조건으로 거래한다면 적용됨(ex. 외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온라인으로 냉장고를 구매하는 경우)

2. 주요 개념

가. 전자상거래

- 전자거래(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 등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거래)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함
- 주문, 결제, 이행 중 어느 단계에서라도 전자문서가 활용되면 전자상거래에 해당함

나. 통신판매 및 통신판매업자

- 통신판매란, 우편·전기통신 등 직접 소비자와 대면하지 않고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의미함. 온라인 광고를 보고 소비자가 매장에 와서 구매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음
- 통신판매업자란,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함

다. 통신판매중개

-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의미함
- 자신의 명의로 통신판매를 위한 광고수단을 제공하거나 그 광고수단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여 통신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나 청약의 접수 등 통신판매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도 포함함

라.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자

- 통신판매업자인지 통신판매중개자인지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① 사업자가 자신은 통신판매중개자에 불과하며 통신판매에 따른 법적 책임은 제3의 의뢰자에게 있음을 소비자들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약정하거나 고지하였는지 여부, ② 대금결제가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와의 거래임을 소비자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결제화면에서 표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③ 통신판매에 따른 매출이익이 직접 자신의 수익이 되는지 아니면 단순히 중개수수료 수익만을 얻는 것인지 등의 회계처리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자신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재화 등에 관한 상품 정보와 청약의 접수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함

II. 행위 유형별 유의사항

1. 통신판매업자의 주요 의무 및 책임

- 통신판매업 신고(제12조)
 - ①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포함), 주소, 전화번호, ②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③ 개인인 경우 사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하여 공정위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테무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위 2025. 6. 11.자 보도자료)	
행위 사실	<p>[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몰 운영자는 자신의 신원정보와 이용약관을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사이버몰 초기화면 또는 그 연결화면에 표시하여야 하나, T사는 사이버몰을 운영하면서 자신의 신원정보와 이용약관을 사이버몰 초기화면 등에 표시하지 않았음(제10조 제1항 위반) • 통신판매업자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통신판매업자로서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하여야 하나, 테무는 입점 판매자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인 재화 등의 판매 정보 제공과 청약 접수 업무 등을 수행하여 실질적으로 통신판매업자(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함에도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를 미이행(제12조 제1항 위반) • 통신판매중개자는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미리 알림으로써 소비자가 통신판매중개자를 판매자로 오인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T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해 통신판매를 중개하면서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음(제20조 제1항 위반)
공정위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위금지명령 • 과징금 100만원 부과(제10조 제1항 위반에 대하여만)

- 정보 제공 의무(제13조)

- **(표시·광고시)** ① 상호 및 대표자 성명, ②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③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와 그 신고를 받은 기관의 이름 등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계약체결 전)** 소비자가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해야 함

1. 공급자 및 판매자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등
2. 재화 등의 명칭·종류·내용 및 재화 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제품에 표시된 기재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의 기재를 갈음할 수 있음)
3. 재화 등의 가격(가격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격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4. 재화 등의 공급방법 및 공급시기
5.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청약철회등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서식 포함)
6. 교환·반품·보증과 그 대금 환불 및 환불의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의 조건·절차
7. 전자매체로 공급할 수 있는 재화의 경우, 전송·설치 등을 할 때 필요한 기술적 사항
8. 소비자피해보상의 처리, 재화등에 대한 불만 처리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9. 거래에 관한 약관(그 약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포함)
10. 구매안전서비스 관련 사항
11. 그 밖에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등

-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재화 등의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정위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 품목별로 규정되어 있음
- 미성년자와 계약시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성년자에게 고지해야 함

**(주)발란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공정위 2025. 1. 24.자 의결(약) 제2025-018호)**

<p style="text-align: center;">행위 사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사는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재화 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 중 소재, 색상 등 일부 정보만을 표시 및 제공하고, 제조자, 수입자 및 제조국 등에 관한 정보를 표시 및 제공하지 않음(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 위반) • 또한, 14세 이상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체결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별도로 고지하지 않음(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3항 위반) • B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초기화면 및 자신의 명의로 표시·광고하는 매체의 첫 번째 면 등에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미리 고지하지 않음(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1항 위반) • 또한,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상호만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 등을 확인하여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음(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2항 위반)
<p style="text-align: center;">공정위 판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명령 • 과태료 300만원 부과

• 주문 접수시(제14조)

- 소비자로부터 주문을 받은 경우, 청약 의사표시의 수신 확인 및 판매 가능 여부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함

- 계약체결 전에 소비자가 청약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정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갖추어야 함

- **제품 공급시(제15조)**

- 기본적으로 소비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등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Ex. 주문제작의 경우 주문제작을 의뢰하는 행위, 물품배송을 위해 배송업자에게 최소한의 소비자정보를 제공하고 배송을 지시하는 행위)를 해야 함
- 소비자가 재화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재화등의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는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조치를 해야 함
- 단, 재화 공급시기에 관하여 따로 약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

- **청약 철회 등(제17조)**

- 소비자는 아래 기간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재화 등 공급이 그보다 늦게 이루어졌다면 그 재화 등의 공급일로부터 7일) 2.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7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3. 청약철회 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 다만, 아래의 경우 소비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해 청약철회를 할 수 없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 또는 이와 유사한 재화등에 대하여 법 제13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청약철회등(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을 인정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

- 위 2호부터 5호의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재화 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 만약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음

• **청약철회의 효과 등(제18조)**

- 소비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 등을 반납해야 함(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의 경우는 제외)
- 통신판매업자는 아래 각 기준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해야 하고, 환급 지연시 연 15%의 이율을 곱하여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해야 함

1.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재화를 반환받은 날
2. 통신판매업자가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를 공급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한 날
3. 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등을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한 날

- 소비자가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으로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에게 재화등의 대금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함
- 통신판매업자가 결제업자로부터 해당 재화등의 대금을 이미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대금을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함. 이때 결제업자는 그 환급받은 금액을 지체 없이 소비자에게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통신판매업자가 환급을 지연하여 소비자가 대금을 결제하게 한 경우 그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 소비자가 단순변심으로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에는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나,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어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에는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해야 함
- 통신판매업자는 이미 재화등이 일부 사용되거나 일부 소비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의 일부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소비자가 얻은 이익 또는 그 재화등의 공급에 든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 다만, 소비자에게 단지 청약철회가 있다는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음
-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의 제한(제19조)**
 -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금액은 아래 금액에 대금미납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더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1. 공급한 재화 등이 반환된 경우에는 “반환된 재화등의 통상 사용료 또는 그 사용으로 통상 얻을 수 있는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반환된 재화 등의 판매가액에서 그 재화 등이 반환된 당시의 가액을 뺀 금액” 중 큰 금액
2. 공급한 재화등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의 판매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2. 통신판매중개자의 주요 의무 및 책임(전자상거래법 제20조 내지 제20조의3)

-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 고지 의무

- 통신판매중개자는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이버몰 초기 화면에 알리고, 추가적으로 아래 방법을 통해 미리 고지해야 함

1.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의 명의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표시·광고를 하는 매체의 첫 번째 면에 알릴 것
2. 통신판매중개자가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서면에 알릴 것
3. 통신판매중개자가 청약의 방법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약내용의 확인·정정·취소에 대한 절차에서 알릴 것

- 위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짐

- 통신판매의뢰자 신원 제공

- 통신판매의뢰자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성명(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을 확인하여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성명·전화번호 등을 확인하여 거래의 당사자들에게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함

- 위 정보 또는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달라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짐

- 불만 또는 분쟁해결을 위한 조치

- 통신판매중개자는 사이버몰 등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불만이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아래 조치를 시행하여야 함

1.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소비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이나 불만을 접수·처리하는 인력 및 설비를 갖출 것
2. 통신판매중개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의하여 발생한 불만이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을 사전에 마련하여 사이버몰에 고지할 것
3.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의 원인 등을 조사하여 3영업일 이내에 진행 경과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10영업일 이내에 조사 결과 또는 처리방안을 소비자에게 알릴 것

-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

-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는 통신판매업자와 동일하게 통신판매업 신고,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 청약 내용 확인 및 정정/취소 절차, 청약철회 등에 관한 의무를 부담함
- 다만, 통신판매업자의 의뢰를 받아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경우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약정하여 소비자에게 고지한 부분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음

3. 금지되는 행위 유형(전자상거래법 제21조)

- 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제1호)
- ‘거짓’은 객관적 사실과 다름을 의미하고, ‘과장’은 사실에 기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가 있더라도 지나치게 부풀린 것을 의미하며, ‘기만’은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은폐, 축소, 누락하는 것을 의미함

구체적인 예시

- 1) 휴대폰으로 광고문자메세지를 전송하면서 ①유료에 대한 표시를 하지 않거나, ②"연락했는데 연락이 없네요"등의 표현을 쓰거나, ③당첨상술을 쓰는 방법 등에 의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전화를 걸게 하는 경우
- 2) 휴대폰에 광고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사이버몰에 광고를 하면서 해당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취소, 거부하는 버튼을 누르는 경우 자신의 번호 또는 사이트로 연결되게 하는 등의 일반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번호나 사이트로 연결되도록 하는 경우
- 3) 인터넷상의 띠광고를 하루에 일정횟수 보면 그 만큼의 할부금을 소비자의 계좌로 입금해 주는 조건으로 고가의 PC를 매우 저렴한 가격에 마련할 수 있는 기회라고 광고하여 구입하였으나, 실제로는 1~2개월 후에는 입금이 중단되는 경우
- 4) 실제로는 판매수량에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표시하지 않고 시증가의 50%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주문만 하면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한 경우
- 5) 사이버몰에서 판매하는 재화등의 품질 및 배송 등과 관련하여 사업자에게 불리한 이용후기를 삭제하거나 사업자에게 고용된 자 또는 사이버몰이 후원하고 있는 소비자로 하여금 거짓으로 사업자에게 유리한 이용후기를 작성하도록 한 경우
- 6) 사업자가 광고비를 받았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베스트, 추천, 기대, 화제’ 등의 명칭을 붙여 재화등을 소개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재화등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가 토대가 되어 추천된 재화등으로 오인하게 한 경우
- 7) 사업자가 숙박, 식사, 레저활동 등을 결합한 여행 상품을 판매하면서 여행 관련 상품들의 주요 정보를 보여주는 자신의 사이버몰 내 화면에 결합상품 중 일부만 포함된 가격을 해당 결합상품의 가격인 것처럼 표시함으로써 해당 결합상품을 실제 가격보다 저렴한 상품인 것으로 오인하게 한 경우
- 8) 사업자에게 고용된 자가 대량으로 재화등을 구매한 후 취소하는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자수를 과장하여 표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인기있는 재화등으로 오인하게 한 경우
- 9) 연륙교 개통 등으로 배송사업자가 배송비에서 도선료 등 추가비용을 제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는 그 추가비용이 배송비에 포함된 것처럼 계속 표시 또는 고지하는 경우

• 제재 사례

(주)카카오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공정위 2024. 1. 10. 의결 제2024-016호)	
행위 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카카오는 멜론 정기결제형 음원서비스 이용권을 구입한 소비자가 멜론 정기결제를 해지할 때, ① 언제든지 중도 해지하고 잔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중도해지 기능과, ② 기간 만료시까지 서비스를 다 이용한 뒤 비로소 해지되는 일반해지 기능이 있음에

	<p>도, 멜론 앱에서 해지신청을 하면 일반해지에 대해서만 안내하고 중도해지에 관한 사항을 직접적으로 안내하지 않음</p>
공정위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카카오의 위 행위는 소비자에게 계약해지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누락하는 등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되며 이로 인해 소비자의 계약해지도 방해될 우려가 크다고 인정함 •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과징금 9,800만원 납부명령

(주)넥슨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공정위 2024. 1. 5. 의결 제2024-005호)

행위 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넥슨은 게임 “메이플스토리” 내에서 확률형 아이템 “큐브”를 판매하면서, 판매 초기와 달리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결과가 덜 나오도록 확률을 변경하였음에도 그에 대해 전혀 공지하지 않음
공정위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들로 하여금 큐브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옵션 재설정 확률 변경 사실에 대해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일부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결과까지도 발생시킨 것으로 인정됨 •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과징금 납부명령

(주)그라비티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공정위 2025. 3. 30. 자 의결 제2025-047호)

행위 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라비티는 세 가지 확률형 아이템(부스터 증폭기, 의상 인챈트 스톤 상자32, 봉인된 보스카드 똑딱상자)의 구성품 획득확률을 실제보다 높게 표시하거나, 확률 하락 사실을 은폐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거짓·기만적으로 정보를 제공함
공정위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허위·과장·은폐하여 오인·유인한 기만적 표시행위로,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판단 • 시정명령 • 과태료 납부명령

(주)위버스컴퍼니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공정위 2024. 6. 13. 의결 제2024-238호)	
행위 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버스컴퍼니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 ‘위버스샵’을 통해 아이돌 음반 및 굿즈 등을 판매하면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실 혹은 반송의 경우 출고일 기준 1달이 경과하면 보상이 어렵다고 표기하고 ‘상품 포장 개봉 시 반품접수 불가’, ‘포장지 훼손 시 교환·환불이 불가’로 표기함으로써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함 • 위버스컴퍼니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위버스샵’을 통하여 아이돌의 멤버십 구매자에 한하여 구매 가능한 ‘멤버십 키트(membership kit)’, ‘머치 박스(merch box)’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 공급시기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표시하거나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음

공정위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법상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불가능한 것처럼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주저하게 하거나 포기하게 하였으므로,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후단에 위반 • 위버스컴퍼니가 멤버십 키트 등의 공급시기를 ‘다음 분기 내 순차 배송’ 등으로만 표기하고,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공급시기에 대한 정보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위반 •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과징금 300만원 부과(제13조 제2항 제4호 위반에 대해 50만원)
---------------	--

(주)에듀월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공정위 2024. 7. 1. 의결(약) 제2024-079호)	
행위 사실	<p>[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후단 위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듀월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해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i) ‘2022. 3. 2.까지만’ 할인권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하였으나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도 반복적으로 동일한 상품에 대해 동일한 내용의 가격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광고하고 (ii) 설문조사 표본이 10명에 불과하고 실제로 해당 취업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소요된 기간이 얼마인지 알 수 없음에도 “10명 중 9명 3개월 내 단기합격”과 같이 광고함으로써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하였음
공정위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심인이 행위사실 인정하고 심사관의 시정조치 의견 수락함. •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과태료 500만원 부과

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도메인 이름 등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행위(2호)

다.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3호)

구체적인 예시	
1)	소비자가 불만사항에 대한 사업자의 이메일 또는 팩스 답변이 불충분하여 직접 전화통화를 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이메일 또는 팩스를 통해서만 불만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전화통화를 거부하는 경우
2)	상담원이 부족하여 소비자가 통상의 경우 상담원과 통화할 수 없거나 ARS 등을 통해 여러 단계를 거치게 하면서 결국 상담원과는 통화가 되지 않도록 기술적 장치를 해 놓은 경우
3)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전화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동 안내된 콜백 안내에 따라 자신의 전화번호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3영업일 이내에 전화를 하지 않는 경우. (다만, 소비자가 전화번호를 잘못 남겼거나 소비자의 부재 등으로 부득이하게 연락이 지연된 경우를 제외)
4)	사업자가 이메일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메일수신서버를 차단하여 소비자가 이메일을 보낼 수 없는 경우

• 제재 사례

티켓무비투어(주)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공정위 2009. 9. 18. 의결 제2009-193호)	
행위 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티켓무비투어(주)는 기존 상담인력들이 모두 퇴사하면서, 이용자들이 피심인의 인터넷 사이버몰 ‘1:1 문의하기’ 란을 통하여 제기한 다수의 문의 또는 불만에 대해 최소 1일에서 최고 28일이 경과하도록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고, 전화통화를 시도한 이용자들의 전화도 받지 않음
공정위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용자들의 전화에 불응한 행위는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한 행위에 해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과태료 500만원 부과
--	--

라. 소비자의 청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하거나 재화등의 공급 없이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4호)

구체적인 예시
<p>소비자가 사업자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상품안내를 받고 고객의 신용도를 조사한다는 명목 하에 신용카드번호를 알려주었으나 재화등의 구입 의사를 표시하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임의로 재화를 공급하고 소비자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는 경우</p>

마.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5호)

바.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6호)

•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에 해당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화 등의 배송과 같이 소비자와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재화 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 확인에 필요한 경우 4)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따라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사.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쉽고 명확하게 소비자에게 설명·고지하지 아니하고 컴퓨터프로그램 등이 설치되게 하는 행위(7호)

4.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있어서 금지되는 행위 ('다크패턴' 규제)

가. 금지되는 행위(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 일부 금액만 표시·광고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거래하는 행위 ('순차공개 가격책정')

- 사이버몰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가격을 알리는 표시·광고의 첫 화면에서 소비자가 그 재화등을 구매·이용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총금액 중 일부 금액만을 표시·광고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는 금지됨
- 다만, 총금액을 표시·광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린 경우는 제외
- 소비자의 다른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유인하는 행위(‘특정옵션의 사전선택’)
- 재화등의 구매·이용, 회원가입, 계약체결 등이 진행되는 중에 소비자에게 다른 재화등의 구매·이용, 회원가입, 계약체결 등에 관한 청약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묻는 선택항목을 제공하면서 소비자가 직접 청약의사 여부를 선택하기 전에 미리 청약의사가 있다는 표시를 하여 선택항목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의 다른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유인하는 행위는 금지됨
- 선택항목에 시각적으로 현저한 차이를 두어 표시하는 행위(‘잘못된 계층구조’)
-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구매·이용, 회원가입, 계약체결 또는 구매취소, 회원탈퇴, 계약해지에 관한 선택항목을 제시하는 경우 그 선택항목들 사이에 크기·모양·색깔 등 시각적으로 현저한 차이를 두어 표시하는 행위로서, ① 소비자가 특정 항목만을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 혹은 ② 소비자가 구매등을 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특정 항목을 반드시 선택하여야만 하는 것으로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금지됨
- 정당한 사유 없이 아래 방법을 통해 구매취소, 회원탈퇴, 계약해지 등을 방해하는 행위

- 재화 등의 구매, 회원가입, 계약체결 등의 절차보다 그 취소, 탈퇴, 해지 등의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는 방법
- 재화 등의 구매, 회원가입, 계약체결 등의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만 그 취소, 탈퇴, 해지 등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법
- 소비자 선택·변경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방법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 (‘반복간섭’)
 - 소비자가 이미 선택·결정한 내용에 관하여 그 선택·결정을 변경할 것을 팝업창 등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됨
 - 다만, 그 선택·결정의 변경을 요구할 때 소비자가 일정 기간 이상 동안 그러한 요구를 받지 아니하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한 경우는 제외
- 정기결제 대금 증액 또는 무료 서비스의 유료 전환 시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 행위 (‘숨은갱신’) *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6항
 - 재화등의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재화등이 무상으로 공급된 후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증액 또는 전환이 이루어지기 30일 전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증액 또는 전환을 취소하거나 해지하기 위한 조건·방법과 그 효과를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함

나. 온라인 인터페이스 관련 자율규약(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3)

- 사업자는 위 열거된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규약을 정할 수 있음

III. 위반 시 제재

1. 시정조치

- 시정명령

- 공정위는 사업자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하는 경우 다음의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음(전자상거래법 제32조)

- 1)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 2) 전자상거래법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
- 3)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 4)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
-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시정권고

- 공정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 시정조치를 부과하기 전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중지하거나 전자상거래법에 규정된 의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시정방안을 정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음(전자상거래법 제31조)
- 시정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권고의 수락 여부를 그 권고를 한 행정청에 알려야 하며, 권고를 수락하는 경우 시정조치를 명한 것으로 봄

2. 영업정지

- 공정위는 ① 시정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3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가 한 번 이상 반복되는 경우 또는 ② 시정조치 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음(전자상거래법 제32조 제4항)

3. 임시중지명령

- 공정위는 ①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가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②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고 다수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음(전자상거래법 제32조의2)

4.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

- 공정위는 제32조 제4항에 따른 영업정지가 소비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갈음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전자상거래법 제34조)

5. 형사처벌

-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전자상거래법 제40조)
- 통신판매업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대한 허위표시를 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전자상거래법 제42조)
- 통신판매업자가 사업자의 신원정보에 관하여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거래조건에 관하여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전자상거래법 제43조)

6. 과태료

- 임시중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전자상거래법 제45조 제1항)
- 전자상거래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 등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전자상거래법 제45조 제2항)

IV. 업무상 유의사항(Do & Don'ts)

[Do]

-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상품의 환불 정책을 전자상거래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변경시마다 사내 컴플라이언스 조직의 검토를 받아야 함
- 분쟁/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인력 및 설비를 충분하게 구비해두어야 함

[Don't]

- 정당한 사유 없이 청약철회가 가능한 상품에 대해 “환불불가” 등의 표시를 하여서는 안 됨
-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청약철회 기간(서면교부일로부터 7일 등)을 단축하여 표시하면 안 됨
- 불리한 이용후기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거짓으로 유리한 이용후기를 작성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 특정 조건 또는 기간에만 할인 가격으로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PART 7 약관법 해설

I. 약관법 개관

1. 약관법의 목적

-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하여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을 균형 있게 향상시키는 것
- 거래 주체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며, 강행법규임

2. 약관의 정의

- ‘약관’이란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의미함
- 약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① 일방당사자(사업자)에 의하여 마련된 것이어야 하고(일방성),
 - ② 다수의 상대방(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일반성),
 - ③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형식성)
 - ④ 미리 마련된 것이어야 함(사전성)

II.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제3조)

1.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함

-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고객이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함
-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함

2. 명시·설명 대상: ‘중요한 내용’

- “중요한 내용”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체결의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하고, 약관조항 중에서 무엇이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됨
- 명시·설명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그 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볼 수 없음

3. 명시·설명 상대방

- 원칙적으로 당사자인 고객에게 설명하여야 하나,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대리인에게 설명하는 것으로도 충분함

4. 명시·설명 의무 위반의 효과

- 사업자가 약관의 명시 및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 조항이 명시·설명 의무 위반으로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지 못하더라도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함.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일방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 해당 계약은 무효임

III. 약관해석의 원칙(제4조, 제5조)

1.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

-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개별 약정을 한 경우, 개별 약정이 약관에 우선함

2. 객관적·확일적 해석의 원칙

-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안 됨

3.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함

IV. 불공정 약관

1. 일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제6조)

가. 의의

-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임
- “공정을 잃은”이란, 사업자의 이익과 고객의 이익 사이에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을 말하며, 사업자의 이익과 고객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함

나. 불공정성의 추정

- 아래 3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됨

- 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 ②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 ③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 구체적인 예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의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차계약 종료후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명도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인이 명도소송 등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차인 소유의 물건을 다른 장소로 철거할 수 있도록 한 조항 • 학습자가 자신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할 경우 교습개시 이전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전액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선납한 수강료를 어떠한 사유로도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 •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할 경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보다 위약금을 과다하게 책정하는 조항 •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결정하여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사업자의 결정에 따르도록 한 조항 • 계약서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함에도 사업자의 해석에 따르도록 한 조항 • 계약의 해지는 해지절차에 따라 해지의 의사표시가 고객에게 도달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함에도 사업자가 고객에게 해지를 통지한 때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 조항 • 헌법상 집회·결사의 자유가 보장됨에도 사업자의 허락이나 동의없이 단체를 구성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집단행위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한 조항 •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이 원칙임에도 재판의 승·패소 여부나 패소 비율을 불문하고 고객에게 소송비용 일체 또는 사업자에게 유리한 비율로 부담하도록 한 조항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의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원환자가 개인사정으로 중간에 퇴원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미리 수납한 진료비(1개월분)를 환급하지 않는다는 조항

- 신용카드 조회 단말기 임대계약에 있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단말기 소유권을 자동적으로 임차인에게 이전시키고 그 반환을 불가능하게 하는 조항
- 상품의 매수인은 일정기간 무상으로 수리 기타 애프터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는 조항
- 고의·과실로 인한 의료사고에 대하여는 병원이 책임을 져야 함에도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수술, 검사 등으로 인한 모든 결과에 대하여 병원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
- 금전소비대차약정에서 보증인의 해지 의사표시는 금융기관에 도달한 때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여야 함에도 도달 후 일정기간(예: 45일)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조항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른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의 예시

- 강습을 받을 권리가 강습계약의 본질적인 권리임에도 그것을 교재제공 등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 조항
- 상가분양계약에서 상품 교환, 환불, 수리 등 판매·관리 일체는 상가 입주자의 고유한 결정사항임에도 판매·관리 일체를 사업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 조항

2. 면책조항의 금지(제7조)

- 면책조항이란, 현재 또는 장래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자가 법규상 손해배상책임을 발생 원인과 범위에 대하여 유리한 법적 취급을 받을 것을 정한 약관조항을 의미함
-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임
-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구체적인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법상 자신의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에도 귀책사유 및 책임의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입점 후 화재, 도난 기타 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조항 • 아파트 분양계약의 법적 성질은 매매계약이고 매매계약에 있어서 건축물 및 대지의 공급면적이 당초의 계약면적과 달리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담보책임으로 민법상 대금감액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계약해제권 등을 부여하고 있음에도登記면적에 다소 증감이 있는 경우에 이에 따른 매매대금을 정산하지 아니한다는 조항 • 매도인의 매매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계약당사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제품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에도 사업자가 대리점에 공급한 제품의 반품 또는 교환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후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을 인정하거나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반품 또는 교환을 인정하는 조항

3. 부당한 손해배상액 예정의 금지(제8조)

-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
-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란 채무불이행시 발생할 손해배상의 액수에 관하여 당사자들이 미리 정해 놓은 것을 말함. 지연손해의 배상·전보배상·위약벌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약관상 금전지급이 실질적으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 성질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포함됨

- ‘부당하게 과중한지’ 여부는 거래유형에 따라 계약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과 경제상태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구체적인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의 위약금은 거래대금의 10% 수준이 통상의 거래관행임에도 총 분양대금의 20~30%를 위약금으로 정한 조항 •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 계약금은 민법 제 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임에도 계약해제로 인하여 매도인 또는 임차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매수인 또는 임대인에게 배상책임을 다시 물을 수 있도록 한 조항 •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권자의 실제 손해액이 예정배상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액을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임에도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정하는 외에 별도로 연체료까지 청구하거나 기납부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

4. 계약의 해제·해지권 제한의 금지(약관법 제9조)

-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임
 -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 지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구체적인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최고 등의 절차를 거쳐 해제·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고객의 해제·해지 요구에 대하여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제·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 •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함에도 고객이 사업자에게 계약의 해제·해지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 • 계약서에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이외에 기타 관리상 필요에 의한 사업자의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도 최고 등의 절차 없이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 고객의 경미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사업자가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최고 등의 절차 없이도 일방적으로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으나 계약물건의 반환이 불가능하여 물건의 가격으로 반환할 경우 그 가액산정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하기로 하는 조항 • 계약의 해제·해지 시에 고객이 원상회복의무를 사업자보다 먼저 이행하도록 하는 조항 • 민사상 채무불이행 책임은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임에도 귀책사유 유무와 관계없이 계약금을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

5. 채무내용의 일방적 변경 금지(제10조)

-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임

-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거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하는 조항
- 급부에는 사업자 자신이 제공하여야 할 급부와 고객이 제공하여야 할 급부가 모두 포함되며, 급부의 변경에는 약속한 급부의 수량, 성질, 이행시기나 이행장소의 변경, 급부제공의 방법 등이 모두 포함됨
-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약관을 설정한 의도 및 목적, 당해 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관계법령, 거래대상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고객과의 협의가능성, 일방적인 변경가능성, 사업자의 영업상 필요 및 고객이 입을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구체적인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가임대차약관에서, “임대인이 상가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특별한 절차나 제한 없이 상가건물 내의 각 층별로 지정된 업종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임차인에게는 이러한 업종변경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 조항 • 택배회사의 위탁영업소계약에서 위탁수수료를 사정 변경에 따라 위탁자(택배회사)측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

6. 고객 권리의 부당한 박탈 금지(약관법 제11조)

-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임
 -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

-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 사업자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

구체적인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의 채무불이행시 사업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손해배상액의 과다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적조치를 취하는 것은 고객의 당연한 권리임에도 사업자의 민·형사상 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 •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행지체의 경우에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 기한의 이익을 박탈함이 타당함에도 채무의 일부라도 기한 내에 변제하지 아니하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박탈하는 조항

7. 의사표시의 의제 금지(제12조)

- 의사표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임
 -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
 - 고객의 의사표시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두는 조항
 -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
 -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 기한을 부당하게 길게 정하거나 불확정하게 정하는 조항

구체적인 예시

- 고객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손해액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음에도 합리적인 기준도 없이 고객이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유형·무형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조항
- 사업자의 의사표시에 관하여 발신만으로 효력을 발생하게 하거나 연착이나 도착하지 않은 경우에도 통상 도착하여야 하는 때에 고객에게 도착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

8. 대리인의 책임 가중 금지(제13조)

- 고객의 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고객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약관 조항은 무효임
 - 고객의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이 무효·취소로 되는 경우 대리인이 그에 대한 무과실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조항
 - 고객이 약관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리인이 그 이행 책임을 진다는 조항

9. 소송상 권리의 부당한 제한 금지(제14조)

-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임
 -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V. 표준약관(제19조의3)

- 공정위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표준이 되는 표준약관을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표준약관 사용을 권장하고 있음

- 공정위로부터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받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함
- 사업자가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정위의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할 수 있음. 다만,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고 이때 고객에게 더 불리한 약관의 내용은 무효임

VI. 위반 시 제재

1. 불공정약관의 무효

- 약관법에 위반되는 약관 조항은 무효임. 약관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 나머지 조항은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 원칙이나,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일방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계약 전체가 무효임 (약관법 제6조 제1항 및 제16조)

2. 사용금지

- 사업자는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여서는 안 됨(약관법 제17조)

3. 시정조치

- 시정권고
 - 공정위는 사업자가 불공정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음(약관법 제17조의2 제1항)

알리·테무의 불공정약관 시정
(공정위 2024. 11. 20.자 보도자료)

<p style="text-align: center;">행위 사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정위는 A사 및 T사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플랫폼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조항, 소비자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조항 등 총 13개 유형, 47개 불공정약관조항(A사 이용약관 16개, T사 이용약관 31개)을 시정 																						
<p style="text-align: center;">시정 대상인 불공정약관 내용</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세부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법률상 책임 배제 또는 손해배상범위 제한 (3개 조항)</td> <td>① 통신판매증개업자로서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td> </tr> <tr> <td>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td> </tr> <tr> <td>③ 약관 등 위반에 대해 플랫폼이 취하는 조치에 관한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td> </tr> <tr> <td>④ 플랫폼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는 조항</td> </tr>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및 이용자 콘텐츠의 부당한 수집·활용 (6개 조항)</td> <td>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과다하게 수집하는 조항</td> </tr> <tr> <td>⑥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하는 조항</td> </tr> <tr> <td>⑦ 플랫폼에게 영구적이고 철회불가능한 이용자 콘텐츠 사용 권한을 부여한 조항</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부당한 재판관할 합의 (3개 조항)</td> <td>⑧ 외국 법원을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정한 조항</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부당한 계정 해지 (2개 조항)</td> <td>⑨ 계정 해지 사유를 모호하게 규정하고 사전 통지 없이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약관 변경 동의 의제 (1개 조항)</td> <td>⑩ 웹 사이트 접속행위를 약관 변경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로 의제하는 조항</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부당한 서비스 변경중단 (1개 조항)</td> <td>⑪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td> </tr>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소송 제기 금지 및 중재 강제 (6개 조항)</td> <td>⑫ 이용자 정보 공개 과정에서 손해 발생 시 소송 제기를 금지하는 조항</td> </tr> <tr> <td>⑬ 재판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중재를 강제하는 조항</td> </tr> </tbody> </table>	구분	세부 내용	법률상 책임 배제 또는 손해배상범위 제한 (3개 조항)	① 통신판매증개업자로서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③ 약관 등 위반에 대해 플랫폼이 취하는 조치에 관한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④ 플랫폼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는 조항	개인정보 및 이용자 콘텐츠의 부당한 수집·활용 (6개 조항)	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과다하게 수집하는 조항	⑥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하는 조항	⑦ 플랫폼에게 영구적이고 철회불가능한 이용자 콘텐츠 사용 권한을 부여한 조항	부당한 재판관할 합의 (3개 조항)	⑧ 외국 법원을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정한 조항	부당한 계정 해지 (2개 조항)	⑨ 계정 해지 사유를 모호하게 규정하고 사전 통지 없이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약관 변경 동의 의제 (1개 조항)	⑩ 웹 사이트 접속행위를 약관 변경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로 의제하는 조항	부당한 서비스 변경중단 (1개 조항)	⑪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소송 제기 금지 및 중재 강제 (6개 조항)	⑫ 이용자 정보 공개 과정에서 손해 발생 시 소송 제기를 금지하는 조항	⑬ 재판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중재를 강제하는 조항
구분	세부 내용																						
법률상 책임 배제 또는 손해배상범위 제한 (3개 조항)	① 통신판매증개업자로서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③ 약관 등 위반에 대해 플랫폼이 취하는 조치에 관한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④ 플랫폼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는 조항																						
개인정보 및 이용자 콘텐츠의 부당한 수집·활용 (6개 조항)	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과다하게 수집하는 조항																						
	⑥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하는 조항																						
	⑦ 플랫폼에게 영구적이고 철회불가능한 이용자 콘텐츠 사용 권한을 부여한 조항																						
부당한 재판관할 합의 (3개 조항)	⑧ 외국 법원을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정한 조항																						
부당한 계정 해지 (2개 조항)	⑨ 계정 해지 사유를 모호하게 규정하고 사전 통지 없이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약관 변경 동의 의제 (1개 조항)	⑩ 웹 사이트 접속행위를 약관 변경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로 의제하는 조항																						
부당한 서비스 변경중단 (1개 조항)	⑪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소송 제기 금지 및 중재 강제 (6개 조항)	⑫ 이용자 정보 공개 과정에서 손해 발생 시 소송 제기를 금지하는 조항																						
	⑬ 재판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중재를 강제하는 조항																						

• **시정명령**

- 공정위는 제17조를 위반한 사업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수정,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약관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약관법 제17조의2 제2항)

<p>① 사업자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인 경우</p> <p>②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p> <p>③ 사업자가 일반 공중에게 물품·용역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계약 체결의 긴급성·신속성으로 인하여 고객이 계약을 체결할 때에 약관 조항의 내용을 변경하기 곤란한 경우</p>

- ④ 사업자의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가 현저하게 우월하거나 고객이 다른 사업자를 선택할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
- ⑤ 계약의 성질상 또는 목적상 계약의 취소·해제 또는 해지가 불가능하거나 계약을 취소·해제 또는 해지하면 고객에게 현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 ⑥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여 여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4. 시정명령 위반시 벌칙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약관법 제32조)

5. 과태료

-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면서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한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약관법 제34조 제1항)
- 약관의 내용을 밝히지 않거나 약관의 사본을 내주지 아니한 자, 약관 설명의무를 위반한 자,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약관법 제34조 제3항)

VII. 제재 사례

한국자산신탁(주)의 차입형 토지신탁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공정위 2021. 5. 6. 의결 제2021-020호)	
행위 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입형 토지신탁계약서에 아래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음 ① 처리와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시공사의 부도 및 파산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시공사를 재선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체의 이의제기를 금지하는 조항

	② 신탁등기의 유효성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거나,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공정위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제6조 제2항 제1호) 및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이의제기 금지조항(제14조 제1호)에 해당하고, ②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약관법 제7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함 • 시정명령(약관 사용금지명령)

아고다 컴퍼니 유한회사의 환불규정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공정위 2019. 2. 11. 의결 제2019-031호)	
행위 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고다는 고객이 아고다의 온라인 숙소 검색·예약 플랫폼을 통해 한 숙박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예약취소 시점 및 숙박예정일로부터 남은 기간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숙박대금 전액을 환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환불불가’ 조항을 웹페이지에 기재하고 있었음 • 공정위가 위 조항에 대해 2017. 11. 1. 시정권고를 하였음에도 아고다는 이에 따르지 않았음
공정위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불불가 조항은 다수의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므로 약관법상 약관에 해당함 • 남은 기간 상관없이 환불을 하지 않는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에 해당함 • 시정권고를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지 않아 여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함 • 시정명령(약관 삭제·수정 및 사용금지 명령)

VIII. 업무상 유의사항(Do & Don'ts)

[D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사용중인 약관과 공정위가 제공하는 ‘표준 약관’을 비교하여, 내용이 다른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내용이 달라진 합리적인 사유를 내부적으로 기록하고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어야 함
[Do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거나 그 책임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을 포함하여서는 안 됨 • 고객에게 정당한 해제·해지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과중한 위약금을 정하거나 사업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제·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는 등 해제·해지권 행사를 방해하는 조항을 포함하여서는 안 됨 • 고객의 경미한 계약상 의무 위반에 대하여 사업자가 최고 등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여서는 안 됨

PART 8 개인정보보호법 해설

I. 개인정보보호법 개관

1.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

-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것

2. 개인정보의 정의

-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또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고객의 ID, 결제상품정보: 이미 보유하고 있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음
 -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등록번호를 변환한 연계정보(CI): CI는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등록번호를 단방향 암호화한 정보로서 복원이 불가능하고 그 자체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으나 특정 개인에 고유하게 생성 및 귀속되어 유일성을 가지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온·오프라인 서비스 연계를 위해 활용되므로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어 개인정보에 해당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20-103-007호)
 - 직급별 전체 직원의 급여 총액: (1) 자연인이 아닌 법인에 관한 정보 또는 (2) 자연인이 특정되지 않는 통계정보로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 위 정보를 가명처리한 것으로서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가명정보)
-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것을 말함
-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는 경우 그 자체로 개인을 직접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인 성명,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은 원칙적으로 삭제하되, (1) 단일 항목으로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으나 다른 정보와 결합되었을 때 개인을 알아볼 가능성이 높은 정보, (2) 가명처리된 정보만으로도 개인을 알아볼 가능성이 높은 정보(특이정보) 여부(예: 희귀성씨, 특정지역 국회의원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이 식별될 위험도를 낮추어야만 안전한 가명정보로 볼 수 있음(개인정보보호법해석사례집 30쪽)

II. 개인정보 보호원칙

- (일반)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개인정보 수집)
 - 개인정보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함
 -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수집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함이 원칙

- (개인정보 처리)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
 -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
 -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 금지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 보장
 -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변경·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 (보호조치 등)
 -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
 -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한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 등 마련

III. 자주 묻는 질의 응답(Q&A)

Q1. 고객에게 포인트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을 이용할 수 있나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

의를 받아야 하며, 서면, 전화, 인터넷,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다만, 동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하므로 동의 의사를 확인했다는 점에 대한 증빙을 마련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합니다.

Q2. 회원탈퇴시 다른 개인정보를 모두 파기하되, 회원번호만 남겨둘 수 있을까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등을 말하므로(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회원 관련 정보가 모두 파기되고 남아있는 회원번호만으로는 더 이상 누구의 정보인지 알아볼 수 없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도 누구의 정보인지 알아볼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보호법상 개인정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파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3. 정보주체가 자기 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청하면 반드시 열람해줘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정보주체로부터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요구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10일 이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다만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기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법 제35조 제4항).

열람 요구 사항 중 일부만에 열람 제한·거절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만 열람을 제한·거절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열람을 연기하거나 거절하려는 경우 열람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기 또는 거절의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을 해당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법 시행령 제41조 제5항,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 제4항, 별지 제9호 서식 참조)

Q4. 회사의 SNS 이벤트를 이벤트 대행사를 통해 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요?

네. SNS를 운영하는 기관이 이벤트 대행사에게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위탁하려면,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한 문서에 의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이 경우 수탁자 교육, 감독 등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고(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4항),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위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합니다(시행령 제28조 제2항).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공개하는 것도 가능하나, 위탁내용 변경 및 수탁자 변경 사항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반영하여야 합니다(시행령 제31조 제2항).

Q5.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가 그 업무를 다른 사업자에게 재위탁할 수도 있나요?

네. 다만, 위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6항). 재위탁이 반복되는 경우 개인정보 관리가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업무의 특성상 재위탁 내용의 변경이 자주 발생하거나 사전 예측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탁계약 문서에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동의를 받는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예: 위탁 계약 문서에 재위탁 허용 범위에 관한 사항과 간소화된 동의절차(위탁자에게 사후승인, 주기적 통지 등)를 정한 후 위탁계약 내용에 따라 재위탁 하는 방법 등)을 포함하여 약정하고 이에 따라 재위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6. 회원가입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해도 되나요?

네. 회원가입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회원가입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보주체로부터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

다만 이 경우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회원가입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여야 합니다(제16조 제1항).

Q7. 동의를 받은 기간을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보관해도 되나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등으로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제1항 본문).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6개월),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5년), 대금결제 및 재화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5년),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3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관기간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는 해당 법령에 따라 보관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나머지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하여야 합니다(제21조 제1항 단서, 제3항).

IV. 제재사례

S통신사 개인정보 유출사고 제재처분 의결
 (개인정보위원회 2025. 8. 27. 의결 제2025-018-243호)

<p>행위 사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심인의 이용자(알뜰폰 이용자 포함) 23,244,649명의 휴대전화번호, 국제모바일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인증키, 기타 이용자 통신 관련 정보 등 총 25종의 개인정보가 유출됨 • 접근통제를 위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인 IP를 사용하는 서버에 대한 외부접속은 피심인이 직접 운영하여 IP를 할당·관리하는 국내 중계기에서만 가능토록 제한하여야 함에도 모든 IP(해외 IP 포함)에서 접속할 수 있도록 방화벽 정책을 허용한 행위 등 - 관리망에서 발생한 이상행위 등을 탐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함 - '22. 2.에 이미 관리망 서버에 이상현상이 발생하여 악성프로그램 감염사실 및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을 인지했음에도 당시 인지된 취약성 및 악성프로그램을 점검하는 것을 넘어 해커의 공격도구, 외부와의 비정상 통신, 별도 방화벽 설정의 적절성, 추가 악성프로그램 감염 여부 등을 점검하지 않음 • 개인정보취급자의 접근 권한을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심인의 서버에 접속하기 위한 계정정보(ID/PW)가 평문으로 기록된 파일을, 협력사 직원 등이 서버작업 등 업무를 수행할 때의 편의를 위해 암호설정조차 없이 그대로 관리함 • 운영체제보안 업데이트 미실시 및 백신 등 보안 프로그램 미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안취약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가 존재하는 운영체제를 다수 서버에 설치하면서 보안취약점에 대해 별도의 검토, 점검 조치 하지 않았고, 보안 업데이트도 실시하지 않음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심 인증키(Ki) 암호화 조치 없이 DB 내 평문 저장 · 관리한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8.부터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개통한 이용자의 유심 인증키를 HSS DB 등에 암호화 조치 없이 평문으로 저장·관리함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을 소홀히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SS 시스템 등 코어망 및 관리망 영역의 보안 및 보호법 관련 컴플라이언스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과 책임이 미흡한 체계로 구성함 •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지연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 4. 18. 13:40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25. 5. 9.에 이르러서야 전체 이용자 유출 “가능성”만 통지하였고, '25. 7. 28.부터 유출된 이용자 개별 유출 “확정” 통지를 실시함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위 판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심인은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3호, 제4호, 제6호를 위반함 • 피심인은 사실상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했다고 볼 수 없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1항을 위반하였고, 개인정보 보호 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처리 실행을 파악하지 않았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검토·보완하지 않았으므로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함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안 때로부터 ‘지체 없이 72시간 내’에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 제1항을 위반함 • 시정조치, 과태료 960만원 및 과징금 1,347억 9,100만원 부과

M사 행태정보 제공 강요 제재처분 의결 (개인정보위원회 2023. 2. 8. 의결 제2023-002-003호)	
행위 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NS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사업자인 피심인이, 이용자가 맞춤형 광고 게재를 위한 타사 행태정보 제공을 거부할 경우 자사 SNS 서비스를 가입하고 이용할 수 없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사 행태정보는 이용자가 피심인의 행태정보 수집 도구가 설치된 사업자의 웹·앱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피심인에게 수집되거나 사업자의 웹사이트 및 앱의 소스코드에 포함되어 있을 뿐이라 수집도구의 설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움
개인정보위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여야 함(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1항).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됨(법 제39조의3 제3항) • 광범위한 행태정보 등 개인정보 수집 및 개인식별에 기반한 ‘맞춤형’ 광고가 SNS 플랫폼의 본질적 기능이라고 보기도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내용이 서비스 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방대한 내용을 이용자가 읽고 명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동의할 것을 기대할 수 없음 • 타사 행태정보는 다른 사업자의 웹사이트 및 앱을 방문·사용한 온라인 활동기록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을 크게 넘어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는 타사 행태정보가 피심인에게 자동 수집되는 것을 인지하기 어렵고, SNS에 타사 행태 정보가 꼭 필요한 요소라고 예측하기 어려움 • 타사 행태정보 광범위한 수집은 이용자의 온라인 활동을 감시하여 인터넷 활동의 익명성을 상실시키고,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음 • 따라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9조의3 제3항을 위반함 • 시정조치, 공표명령, 과태료 660만원 부과
--	--

A사 개인정보 파기의무 위반 제재처분 의결 (개인정보위원회 2023. 2. 8. 의결 제2023-002-004호)	
행위 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한 근로자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고 시스템에 지속 보관하였고, 동명이인의 급여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퇴직자의 개인정보를 잘못 기입하여 국세청(홈택스)에 신고함
개인정보위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는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함(제85조의3 제1항) • 퇴직한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세법에 따른 보관기간(5년)이 지나서도 시스템에 계속 보관한 것은,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제1항에 위반됨 • 과태료 300만원 부과

오픈마켓 서비스 사업자들에 대한 제재처분 의결 (개인정보위원회 2021. 5. 26. 의결 제2021-009-082~088호)	
행위 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사, N사 등 오픈마켓 서비스를 운영하는 9개가 개인 정보취급자인 판매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판매자 계정과 비밀번호만으로 접속하도록 함
개인정보위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픈마켓 판매자시스템은 판매자와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판매관리 등을 지원하는 응용프로그램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함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 • 판매자는 피심인에게 직접 고용되어 있지 않으나 판매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개인정보처리와 관련하여 피심인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이용자인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함 •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필요한 경우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함. 이때, 단순히 ID와 비밀번호만을 이용할 경우 유출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이와 더불어 인증서, 보안토큰, 휴대전화 인증, 일회용비밀번호(OTP), 바이오정보 등 추가적인 인증수단의 적용이 필요함(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 제2항). 이를 적용하지 않은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제48조의2, 고시 제4조 제4항에 위반됨 • 시정조치 및 과태료 360만원 부과

PART 9 CHECK LIST

공정거래 관련 법령 적용 소지가 있는 업무를 할 때 본 CHECK LIST를 활용하여 스스로 법위반 리스크를 점검합니다.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나 스스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사전 업무협의제도 등을 활용해 반드시 법무/컴플라이언스와 사전에 상의합니다.

1. 공정거래법

	점검사항	점검결과 (○/△/×)
1	경쟁사 임직원과의 접촉(대면만남, 전화, 이메일, 메신저 등 방식을 불문하며 공적 모임뿐 아니라 사적 친분에 의한 모임도 포함합니다)시, 다음 주제에 대한 논의가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법무팀과 상의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격 변동 시기, 가격 변동 수준 등 가격 정보 - 생산량, 재고량, 가동률 등 산출량 정보 - 판매량, 판매 목표, 판매 계획 등 판매 정보 - 할인일수, 할인율 등 마케팅 계획 정보 - 가격 할인 외에 거래처에 제공하는 우대 조건 정보 - 신제품 출시 계획 등 기타 미래 사업 정보 	△/×인 경우 법무, 컴플과 상의
2	경쟁사 임직원과의 접촉 시 담합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반대 의사표시를 명확히 표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의가 중단되지 않을 경우 즉시 퇴장하고 이를 법무팀에 보고합니다.	
3	사업자단체, 유관행정기관, 경쟁사업자 등이 섹타나인의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응답하기 전에 법무팀과 상의합니다. 경쟁사의 위 정보가 포함된 이메일이나 자료 등을 일방적으로 전달받은 경우에도 이를 법무팀에 반드시 보고합니다.	
4	공개된 정보·정당하게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섹타나인의 독자적인 분석과 이에 기초한 경영판단을 통해 가격, 거래조건 등을 결정합니다. 그러한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서 경쟁사 정보를 활용한 경우 그 출처를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언론기사, 통계자료 등)	

5	문서 작성 시(개인 업무용 수첩이나 메신저도 포함합니다), 불필요하게 "협력·협조", "공동으로 대응", "공감대 형성", "업계 동향" 등 오해 소지있는 문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6	제3자와 거래시 대금, 대금지급방법, 거래내용, 지급기일, 계약해지사유 등 주요 내용을 기재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7	합리적 사유 없이 특정 사업자의 거래요청을 거절하거나 상품·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지 않습니다.	
8	기존 업체와 별도 협의 없이 공급하던 제품 또는 서비스의 상당량을 줄이거나 새로운 거래처를 찾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9	특정 업체에 대해 별다른 합리적 이유없이 다른 업체들에 비해 상품의 가격 또는 수량·품질 등 거래조건을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설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을 별다른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습니다.	
10	거래상대방에게 재고품이나 인기 없는 상품 구입을 조건으로만 신제품이나 인기상품을 공급하겠다는 뜻을 표하지 않습니다.	
11	합리적 이유없이 거래상대방에게 경제적 이익 제공을 요구하거나, 거래상대방에게 불리하게 거래조건을 설정하거나 이를 계약기간 도중에 불리하게 변경하지 않습니다.	
12	경쟁사와 거래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가격할인, 판촉지원금(리베이트) 등 혜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13	계열회사와 거래할 때 비계열회사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지 않습니다 [지식재산권(상표권 등)·부동산(임대 포함) 등 자산거래, 원재료·상품·용역 구입·판매, 인력지원·파견 등 일체의 거래]. 계열회사와의 거래와 비계열회사와의 거래 가격이 다른 경우, 품질 등 차이나 섹타나인이 얻는 이익에 비해 그 가격차이가 더 크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14	계열회사와 거래시, 거래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거래규모가 상당한 경우 ① 비계열사와의 거래가 곤란하거나 품질·비용 면에서 계열회사와의 거래가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지, ② 거래조건은 거래규모를 고려하여 결정했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합니다.	
15	섹타나인이 직접 원재료 등을 구입하거나 섹타나인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더욱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계열회사를 중간 유통사로 하여 간접 구매·판매하는 경우 ① 직접 거래와 비교하여 중간 거래 단계 추가의 필요성이 충분한지, ② 계열회사가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는지, ③ 거래조건이 중간 거래단계의	

	역할에 비추어 적정한지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합니다.	
--	------------------------------	--

2. 하도급법

	점검사항	점검결과 (O/△/X)
1	하도급 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고, 반드시 작업 시작 전에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서를 교부합니다.	△/X인 경우 법무, 컴플과 상의
2	하도급 계약 체결 전에, 계약서에 법령이 정하는 사항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3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조건('부당특약')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예시는 「부당특약 심사지침」 참조)	
4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로부터 경제적 이익(할인·리베이트·기부금)을 제공받거나 주어야 할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지 않습니다.	
5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 대한 위탁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6	하도급대금은 목적물등의 수령일 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7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경우에, 그 증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거나, 그 증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증액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8	목적물등의 공급원가 변동, 납품 시기 지연으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 계약기간 경과로 인한 비용 변화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위 신청일로부터 10일 안에 협의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9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구속하지 않습니다.	

10	수급사업자에게 원가, 매출, 경영전략, 영업, 제3자와의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 제3자와 거래에서 사용하는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 등 경영상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11	정당한 사유가 있어 불가피하게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경우에도 ① 요구목적, 권리귀속, 대가 등을 정한 서면을 교부해야 하며, ② 비밀유지계약을 반드시 체결합니다.	
12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명시적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3	어떠한 방식으로든 섹타나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지나치게 낮게 정하지 않습니다. *예: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 인하 또는 일정 금액을 제하고 하도급대금을 결정, 섹타나인의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섹타나인의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등 행위 유형 불문	
14	경제상황의 변동 등 섹타나인의 사정을 이유로 하여, 또는 섹타나인의 귀책사유(예: 감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한 경우)를 이유로 납품받은 상품을 부당하게 수급사업자에게 반품하지 않습니다.	
15	수급사업자가 관계 기관 신고, 관계 기관의 조사에 대한 협조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3. 대리점법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1	대리점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 교부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합니다.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 납품방법, 납품장소 및 일시, 대금 지급수단 및 지급시기, 반품조건, 영업양도 관련 사항, 계약해지 사유 및 계약해지 절차에 관한 사항, 판매장려금 관련 사항, 위탁판매 거래의 경우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및 수행방법, 수수료등 지급대가에 관한 사항	△/X인 경우 법무, 컴플라이언스와의 상의
2	대리점계약서는 대리점 거래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합니다.	
3	대리점별 매출 계획, 할당량을 정하거나 대리점이 구매할 물량의 반품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거래하기 전에 반드시 법무팀과 상의합니다.	
4	섹타나인 필요에 따라 실시하는 판매촉진행사에 드는 비용·인력을 명확한 사전 협의없이 대리점이 부담하게 하지 않습니다.	

5	우리 회사가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임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그 인건비를 대리점이 부담하게 하지 않습니다.	
6	섹타나인의 필요에 의해 상품을 대리점 간에 이동시키는 경우, 그 운송비용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이 부담하게 하지 않습니다.	
7	대리점에게 판매목표(판매량, 가입자·회원확보 목표 등)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실제로 불이익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 대리점과 합의 하에 자발적으로 설정한 판매목표, 과다하지 않은 수준의 판매목표, 구두협정도 포함	
8	대리점과의 거래조건(상품 등 공급량, 판매수수료율, 판매장려금 지급 조건, 반품조건, 영업지원 관련 사항 등)을 계약 기간 중 대리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지 않습니다.	
9	공급업자의 귀책사유나 제품의 하자로 인한 반품임에도 불구하고 운송비 등 반품에 드는 비용을 대리점에 부담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10	합리적 이유 없이 반품이 가능한 대상 상품을 한정하거나 공급한 제품의 일정비율 이내에서만 반품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반품 사유가 섹타나인에게 있는 경우(상품 하자 등) 운송비 등 반품에 드는 비용은 섹타나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11	대리점협의회 등의 모임을 방해하거나, 이에 참가함을 이유로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12	대리점에게 계약상 해지사유가 없음에도 계약기간 도중 대리점계약을 해지하거나 거래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장기간(3년 이상) 거래한 대리점과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사전에 법무팀과 상의합니다.	
13	대리점에게 고객 명단, 거래내역, 상품 판매가격, 매출액 등 거래 관련 정보를 요구하거나, 관련 전산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14	대리점 운영에 필수적인 경우가 아닌 한, 대리점에게 인테리어 재시공 등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하지 않으며, 인테리어 시공업체나 보안경비업체 등을 일방적으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15	대리점의 영업지역, 영업시간을 설정하고, 그 준수를 강제하지 않습니다.	

4. 표시광고법

	점검사항	점검결과 (○/△/X)
1	제조일자, 포장일자, 소비기한, 제조방식(e.g.수제, handmade) 등을 사실과 다르게 또는 모호하게 표시하지 않도록 합니다.	△/X인 경우 법무, 컴플과 상의
2	제품의 원산지, 영양성분, 원재료 함량, 배합비율 등의 표시가 객관적 사실에 기반했는지 확인합니다.	
3	상품의 특성에 대한 제한사항이 눈에 띄기 쉽도록 문구의 색상, 크기, 위치 등을 정합니다.	
4	할인판매를 하면서 할인율을 사실과 다르게 하거나, 비교대상인 기존가격을 거짓·과장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5	상품의 품질, 성능, 효능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표시·광고에 기재합니다. 특히 통계, 조사결과, 기관인증, 전문가 의견 등을 인용한 경우, 실존하고 검증된 자료/의견인지 확인합니다.	
6	섹타나인의 다른 제품과 비교하거나, 타사와 비교하여 1위, 1등, 국내 최초, 세계 최고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객관적이고 증명 가능한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고, 비교기준(기준시점, 비교조건, 환경 등)을 공정하게 설정합니다.(*예: 당류 타사대비 0% Down, 기존 제품 대비 0% 개선, 판매 1위 등)	
7	경쟁사 또는 경쟁사 제품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하거나, 간접적, 우회적으로라도 비방하는 표시·광고 하지 않습니다.	
8	광고, 홍보, 이벤트 시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할 비용이 있는 경우, '무료', '공짜'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9	SNS, Youtube, 블로그 기타 인플루언서 마케팅 등 진행하는 경우 경제적 대가 수수 여부를 명확히 공개합니다.	
10	<p>명확한 근거 없이 '친환경', '유기농' 등 포괄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p> <p>*예: 지속가능, 친환경, 웰빙, 환경오염이 없는, 착한, 클린, better for earth, '無~'(무함유, 무검출, 무공해 등), Free, 에코, 그린 지구를 위한, 에코프렌들리, 자연친화적, 제품의 특성과 무관한 환경 관련 이미지(녹색, 자연 이미지) 등</p>	

5. 전자상거래법

	점검사항	점검결과 (○/△/X)
1	사이버몰에서 '인기도순', '판매순', '랭킹순' 정렬을 할 경우 실제로는 이와 다른 기준에 따라 상품을 정렬, 노출하지 않습니다.	△/X인 경우 법무, 컴플과 상의
2	고객센터 및 반품 정책 안내 페이지 등에 청약철회 조건, 절차, 기한 등을 고지하며, 청약철회 불가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상세페이지에 명확히 표시합니다.	
3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요청했을 때, 이를 거절할 근거가 있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배송 기록, 포장 훼손 여부 등)를 확보합니다.	
4	웹 상이나 앱 내에서 소비자가 어떤 상품 등을 구매·이용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총금액 중 일부만을 표시·광고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지 않습니다.	
5	웹 상이나 앱 내에서 상품 등의 구매·이용, 회원가입, 계약체결 또는 구매 취소, 회원탈퇴, 계약해지에 관한 선택항목을 제시하는 경우 그 선택항목들 사이에 크기·모양·색깔 등 시각적으로 현저한 차이를 두어 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특정 항목만을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또는 구매등을 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특정 항목을 반드시 선택하여야만 하는 것으로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6	멤버십 탈퇴나 정기결제 해지 등 메뉴를 숨겨두거나 접근을 지나치게 어렵게 만들어 두지 않습니다.	
7	웹 상이나 앱 내에서 특정 행위를 반복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 광고성 마케팅 수신 동의 요구, 회원탈퇴 대신 일시중지 요구, 상품 구매 요구 등)	
8	웹 상이나 앱 내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특정 옵션이 사전선택되도록 설정하지 않습니다 (예: 상품 구매 창에서 추가 옵션 사전선택, 마케팅 활용 동의, 홍보성 메시지 수신 동의 등)	

6. 약관법

	점검사항	점검결과 (○/△/X)
1	소비자, 거래처등 거래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약관법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X인 경우 법무, 컴

		플과 상의
2	거래상대방에게 거래약관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시하고, 약관 내용 중 당연히 예상하기 어려운 것이 있다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3	① 섹타나인에게 귀책이 있음에도 섹타나인을 무조건 면책하는 조항, ② 섹타나인의 귀책으로인한 계약의 해제·해지가 불가하다는 조항, ③ 거래상대방 귀책 사유로 계약·해제할 때 섹타나인의 귀책에 의할 때보다 위약금을 더 무겁게 책정하는 조항 등을 두지 않습니다.	
4	섹타나인 사정에 따라 거래상대방 의사와 관계없이도 당사자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두지 않습니다.	
5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거래상대방이 정당하게 환불받을 수 있는 금액만큼도 환불해주지 않는 내용의 조항을 두지 않습니다.	
6	소비자가 계약 해제·해지, 교환·환불을 할 수 있는 기한은 최소한 관련 법령(민법, 상법 등)이 정한 기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식품, 전자콘텐츠 등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해제·해지, 교환·환불이 제한되는 경우는 제외)	
7	충분한 고지, 설명 없이 거래상대방가 자신에게 불리한 의사표시(예: 이의 제기의 포기, 정기결제 동의, 과금 등)를 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반대로 유리한 의사표시(예: 계약 해제·해지, 환불 요청 등)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두지 않습니다.	
8	거래상대방의 잘못으로 섹타나인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 무조건 일정액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등 손해발생 여부 및 손해액에 대해 다툼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조항을 두지 않습니다.	
9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와 무관하게, 거래상대방이 섹타나인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두지 않습니다.	
10	약관과 관련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원을, 섹타나인의 편의만을 위하여 섹타나인 소재지 법원으로 정하거나, 섹타나인이 일방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하는 조항을 두지 않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

	점검사항	점검결과 (○/△/X)
1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의 정보만 수집하고, 이를 수집시 고지한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X인 경우 법무, 컴플과 상의
2	정보주체의 동의를 있거나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동의 여부 및 동의 일시에 관한 기록을 보관합니다.	
3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등의 요구를 받은 경우 법령에 따라 이를 처리하고, 처리 결과를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4	보유기간 경과시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5	개인정보 이전시 정보주체에게 반드시 그 이전사실과 이전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 취할 수 있는 방법, 절차 등을 통지합니다.	
6	공개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주기적으로 현행화합니다.	
7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인증수단 사용, 보안프로그램, 주기적 점검 등 법령이 정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이행합니다.	
8	관련 업무를 하는 경우,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절차를 숙지하고 이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합니다.	

PART 8 [부록] 자율준수편람 제·개정 연혁

번호	일자	제/개정사항
1	2025.1.	자율준수 편람 제정
2	2025.6	자율준수 편람 개정(1차)
3	2025.8.	자율준수 편람 개정(2차)
4	2025.12.	자율준수 편람 개정(3차)